##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확대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심층 분석

최현수 윤필경 박경희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09.11.20)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심층 분석」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10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제1장 서론3
제2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주요내용 17
제3장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
수급기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제1절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분석 33
제2절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45
제4장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63
제1절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63
제2절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80
제3절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93
제5장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심층분석 … 113
제1절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113
제2절 보육료 지원수준 세부 변동유형별 요인 분석160
제6장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과제227

## 표 목 차

$\langle \pm 3-1  angle$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전체 영유아 규모 및 구성비 33
〈표 3-2〉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및 구성비
(2009.12)
〈표 3-3〉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9.12) ······· 34
〈표 3-4〉 개편 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2008.12) 37
〈표 3-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변화41
그림목차
[그림 3-1]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9.12)35
[그림 3-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38
[그림 3-3]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율 변화 · 38
[그림 3-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대비 보육료 지원율 변화 39
[그림 3-5]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이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비중 40
[그림 3-6]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변화45
[그림 3-7]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46
[그림 3-8]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47
[그림 3-9]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48
[그림 3-10]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49
[그림 3-11]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49
$[$ 그림 $3-12$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 인이상 가구 $\cdots$ 50
[그림 3-13]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전체 52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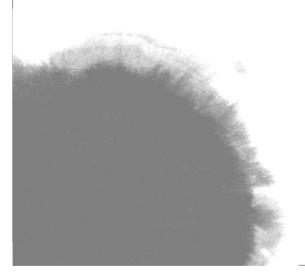
[그림 3-14]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2인 가구 54
[그림 $3-15$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3$ 인 가구 $\cdots 55$
[그림 $3-16$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4$ 인 가구 $57$
[그림 $3-17$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5$ 인 가구 $58$
[그림 $3-18$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6$ 인 가구 $\cdots 59$
[그림 $4-1]$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평균 가구원수 변화 $64$
$[$ 그림 $4-2]$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cdot \cdot \cdot$ 65
[그림 $4-3]$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 인 가구 $66$
[그림 $4-4]$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 인 가구 $67$
[그림 $4-5]$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 인 가구 $67$
[그림 $4-6]$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 인 가구 $68$
[그림 $4-7$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cdot$ 69
$[$ 그림 $4-8]$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전체 $\cdots \sim 71$
$[$ 그림 $4-9]$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2$ 인 가구 $\cdot$ $74$
[그림 $4-10$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3$ 인 가구 $75$
[그림 $4-11]$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4$ 인 가구 $76$
[그림 $4-12)$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변화 : $5$ 인 가구 $78$
[그림 $4-13)$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6$ 인이상 가구 $79$
[그림 $4-14$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평균 가구원수80
[그림 $4-15$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cdots 81$
[그림 $4-16$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 인 가구 $82$
[그림 $4-17$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83$
[그림 $4-18)$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 인 가구 $83$
[그림 $4-19)$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 인 가구 $84$
[그림 $4-20$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 인이상 가구 $\cdot$ $84$
[그림 $4-21$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전체 $86$
[그림 4-22]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88

[그림 4-23]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89
[그림 4-24]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기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90
[그림 4-25]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5인 가구 91
[그림 4-26]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기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6인이상 가구 … 92
[그림 4-27]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기구의 개편 전 평균 가구원수
$[$ 그림 $4-28]$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기구의 개편 전 기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cdots$ 95
[그림 4-29]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96
[그림 $4-30]$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 인 가구 $96$
[그림 $4-31]$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 인 가구 $97$
[그림 4-32]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98
$[$ 그림 $4-33]$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 인이상 가구 $\cdot$ $98$
[그림 4-34]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전체100
[그림 4-35]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2인 가구 102
[그림 4-36]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기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3인 가구 103
[그림 4-37]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기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4인 기구 104
[그림 4-38]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기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5인 가구 106
$[$ 그림 $4-39]$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6$ 인이상 가구 $\cdot$ $107$
[
[그림 5-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기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116
[그림 5-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기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119
[그림 $5-4]$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 인 가구 $121$
[그림 $5-5]$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 인 가구 $123$
$[$ 그림 $5-6]$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기구 및 영유아 분포 : $5$ 인 가구 $\cdots 125$
$[$ 그림 $5-7]$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 인이상 가구 $\cdots$ $126$
[그림 5-8]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전체 130
[그림 5-9]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2인 가구 132
[그림 5-10]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3인 가구 134

## Contents

[그림 5-1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4인 가구 136
[그림 5-1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5인 가구 138
[그림 5-1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6인이상 가구 140
[그림 5-14]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증기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cdot$ $142$
[그림 5-15]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cdot 144$
[그림 5-16]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cdot$ $147$
[그림 5-17]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소득인정액 149
[그림 5-18]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림 5-19]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전체소득 150
[그림 5-20]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상시) 151
[그림 5-2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임시) 152
[그림 5-2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일용) 152
[그림 5-2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시업소득 153
[그림 5-24]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기타소득 154
[그림 5-25]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추정소득 154
[그림 5-26]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일반재산키액 $\cdot$ $155$
[그림 5-27]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건축물 156
[그림 5-28]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자동차 156
[그림 5-29]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증권거래 등)157
[그림 5-30]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
	(3년 미만 예ㆍ적금)158
[그림 5-3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
	(3년 이상 예ㆍ적금)158
[그림 5-3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
	(보험상품)

[그림	5-3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부채 $\cdot\cdot$ $160$	)
[그림	5-34]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6	3
[그림	5-35]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6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6	8
[그림	5-36]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8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7	3
[그림	5-37]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78	
[그림	5-38]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10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8	4
[그림	5-39]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6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89	
[그림	5-40]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30%—8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94	
[그림	5-41]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19	9
[그림	5-42]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0	3
[그림	5-43]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8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07	
[그림	5-44]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11	
[그림	5-45]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60%—8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215	
[그림	5-46]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 220	)
[그림	5-47]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 222	)
[그림	5-48]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 223	}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무상 보육(정부 보육료 단가 전액지원) 대상 가구가 개편 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1층) 및 차상위계층(2층) 이하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인 가구로 대폭 확대되었음
  - 또한, 개편 전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중 부분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역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3층, 80% 지원),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4층, 60% 지원),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5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전체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60%(2층, 60% 지원), 소득인정액 하위 60~70%(3층, 30% 지원)에 해당하는 가구로 변경됨
  - 2009년 7월 시행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방안의 핵심은, 전액
     및 부분지원 대상의 확대, 보육료 지원 계층구분 단순화(5층 → 3층), 보육료
     지원수준의 확대, 보육료 선정방식의 합리화 및 간소화로 요약할 수 있음
- □ 이러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라,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 및 지원수준 변동 유형별 영유아 가구 규모 및 소득인정액 수준과 구성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개편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사항 중 어떠한 요인들이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및 지원수준의 변동을 가져왔는지 분석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의 형평성 및 적절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른 신규 신청 및 수급가구,수급 중단가구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한편, 심충분석 결과 및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FGI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제도의 형평성 및 수용성 측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 및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자산조사 등 선정방식과 관련된 업무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 개편 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자산조사 업무 부담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 많은 부분 감소되었으나, 제도 변화에 따른 민원유발 요인과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 반영해야 함
-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확대 개편에 따른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변동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행정자료(e 보육 및 복지DB)를 중심으로 분석 DB를 구축하여,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비율,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변동 유형(계속 수급가구 / 신규 수급가구 / 수급 중단가구)별 영유아 가구의 규모 및 소득인정액 변화,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유형(증가 / 유지 / 감소)별 영유아 가구 규모 및 소득 인정액 변화,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및 지원수준 변동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 2. 연구내용

#### □ 연구내용 구성

제2장에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등 선정체계 확대 개편의주요내용을 요약 제시함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비교 및 주요 개편사항 정리
- 제3장에서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분석함
  - 제1절에서는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층 /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비율을 비교 분석함
  - 제2절에서는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별로 영유아 기구의 소득인정액을 분석함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변동 유형을 '계속 수급가구(제1절) / 신규 신청 및 수급가구(제2절) / 수급 중단가구(제3절)'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의 변화를 분석함
-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변동 유형 중 '계속 수급가구'를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에 따라 3가지 유형(증가 / 유지 / 감소)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제1절에서는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기구 및 영유아 분포,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별 변화에 대하여 심층 분석함
  - 제2절에서는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을 12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요인을 분석함
  - 특히, 12가지 세부 유형별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을 모의 분석함으로써 선정체계 개편을 통한 보육료지원 확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 제6장에서 제3장~제5장의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및 지원수준 변동 유형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의 성과를 평가함

• 이와 함께,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선정방식 개선 시고려사항,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추가 확대,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조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 3.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정책평가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보육료 지원제도 개편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관련 운영사례 및 평가결과 검토
- □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및 지원수준 변동 유형 및
     민원 사례 분석,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관련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 □ 심층 통계분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유형별 분석 틀 구성
  -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계층 구분 및 지원수준 변화 분석
  - 소득인정액 및 소득/재산 항목별 구성, 보장단위 등 선정방식 관련 분석
- 보육료지원 수급기구 변동 유형별 심층 분석 DB 구축을 위한 layout 작성
   및 DB 구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전(2009년 5월) 및 개편 후(2009년 8월)를 기준 시점으로 e보육 및 복지DB에서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전수를 분석대상으로 추출
  - 분석대상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 선정체계 개편 전후 일반사항 정보 소득 및 재산항목 정보, 공제항목 정보, 영유아 보장유형 정보를 추출하여 최초 분석 DB를 구축
  - 개인 단위로 추출된 최초 분석 DB를 가구 단위로 변환하고, 데이터 오류 체크 및 보정을 통해 최종 분석 DB 확정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의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변동 유형별로 영유아 가구 규모 및 가구원수 변화, 소득인정액 수준 및 세부 소득/재산항목 변화, 보육료 지원수준의 변동 및 그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수급변동 유형별 소득인정액 등 각종 기초통계 생산 및 비교 분석
  -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지원 수급여부에 따른 변동 유형, 보육료 지원수준에 따른 계속 수급기구의 변동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확대,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의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표준화, 영유아 및 부모 중심의 보장단위 개편 등 다양한 선정방식 개편이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지원 수급 변동 및 지원수준 변동 유형의 변화를 가져온 효과 분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도 불구한 수급 중단 및 가구유형별 형평성 문제, 선정과정에서 민원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대안 도출
- 4. 분석 DB : 보육료지원 수급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원자료

### □ 보육료 지원 영유아 가구 분석 DB 구축을 위한 추출자료

구분	개편전	개편후	기준시점	e보육	공통건수		
A	О	О	2009.5	522,525	438,775		
A	О	О	2009.8				
В	О	X	2009.5		73,151		
С	X	О	2009.8		5,989		
D	복지DB만		D 복지 <b>DB</b> 만 2009.8		2009.8	-	392,709
		522,525	910,624				

구	개편	개편	기준	HLWER001	HLWER013	HLWER016	HLWER018	HLWER033
분	전	후	시점	일반사항	소득	재산	공제	보장구분
A	О	О	2009.5	1,577,061	2,368,328	1,679,377	799,680	670,313
A	О	О	2009.8	1,549,880	1,812,969	2,900,621	782,662	655,674
В	О	X	2009.5	273,309	423,381	304,244	140,098	106,058
С	X	О	2009.8	20,867	26,155	26,632	10,403	21,581
D	복지I	OB만	2009.8	1,321,971	1,473,109	2,449,582	700,547	701,718
계				4,743,088	6,103,942	7,360,456	2,433,390	2,155,344

## □ 분석대상 가구 및 원자료 유형

- A : e보육 자료 중 복지DB(영유아보장)에 2009년 5월과 8월 모두 존재하는영유아 가구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
- B : e보육 자료 중 복지DB(영유아보장)에 2009년 5월은 존재하나 8월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 ⇒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
- C : e보육 자료 중 복지DB(영유아보장)에 2009년 8월은 존재하지만 5월은 존재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 ⇒> 분석 제외(DB 오류 추정)
- D : e보육 자료가 아닌 복지DB(영유아보장)에만 2009년 8월 현재 존재하는 영유아 가구 => 보육료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가구
- 원자료를 가구 단위로 변환한 결과, 각 유형별 분석대상 가구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3~5장에서 각각 분석 DB로 활용됨

				분석 DB 활용	
구분	기준시점	가구수	3장	4장	5장
	2009.5	404,747	2절		1~2절
A			(개편 전)	1절	(지원수준
(계속 수급가구)	2009.8	399,734	2절	(계속 수급)	변동유형별
			(개편 후)		분석)
В	2009.5	70,753	2절	3절	-
(수급 중단가구)			(개편 전)	(수급 중단)	
С	2009.8	5,606	-	-	-
(분석 제외)					
D	2009.8	340,865	2절	2절	-
(신규 수급가구)			(개편 후)	(신규 수급)	

## □ 복지DB 원자료의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일반사항 및 소득인정액 변수 Layout — 수급가구의 일반사항

ID	HLWER001				
NM	일반사항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비고
1	YYYYMM	년월		6	
2	GBN	구분(A,B,C,D)		1	
3	BOK_CGG_CODE	시군구코드	С	7	PK
4	HOUSE_ID	세대ID(Key)	VC	20	PK
5	SUPPTR_SID	부양자(가구원)주민등록번호	VC	13	PK
6	SUPPTR_SID_SNO	부양자주민일련번호	VC	3	PK
7	AGE	나이	N	9	
8	FAM_CMPNT_CODE	가구구성코드	VC	1	
9	FAMCO_CNT	가구원수	VC	2	
10	HOUSE_SE_CODE	세대구분코드	VC	1	
11	HSHD_REL_CODE	세대주와의관계코드	VC	2	
12	INCM_RECOG_AM	소득인정액	N	12	
13	INDI_WORK_ABL_EN	개인근로능력여부	C	1	
14	LITOG_YN	동거여부	C	1	
15	MEANS_INCM_EX_AM	재산의소득환산액	N	12	
16	MM_AVG_INCM_AM	월평균소득금액	N	9	
17	RSDC_KD_CODE	주거유형코드	VC	3	
18	SEX_CD	성별	С	1	
19	SIDO_CODE	시도코드	С	7	
20	SKJ_SE_CODE	수급자구분코드	VC	2	
21	TRGT_SID	대상자(세대주)주민등록번호	VC	13	
22	TRGT_SID_SNO	대상자주민일련번호	VC	3	
23	UPR_LAYER_YN	차상위계층유무	C	1	
24	WORK_CAPP_YN	근로능력자유무	С	1	
25	BABY_YN	영유아보장여부	С	1	

## - 수급가구의 소득 항목

ID	HLWER013				
NM	소득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비고
1	YYYYMM	년월		6	
2	GBN	구분(A,B,C,D)		1	
3	BOK_CGG_CODE	시군구코드	C	7	PK
4	HOUSE_ID	세대ID(Key)	VC	20	PK
5	SUPPTR_SID	부양자(가구원)주민등록번호	VC	13	PK
6	SUPPTR_SID_SNO	부양자주민일련번호	VC	3	PK
7	INCM_SE_CODE	소득구분코드	VC	5	PK
8	AGE	나이	N	9	
9	INCM_AM	소득금액	N	12	
10	INCM_CN	소득내용	VC	100	
11	INCM_LV	소득등급	C	3	
12	INDI_WORK_ABL_EN	개인근로능력여부			·
13	TRGT_SID	대상자(세대주)주민등록번호	VC	13	·
14	TRGT_SID_SNO	대상자주민일련번호	VC	3	·

소득구분코드				
INCM_SE_CODE				
코드	코드명			
W001	전체소득			
W002	근로소득+사업소득			
W010	근로소득(계)			
11	근로소득(상시고용)			
12	근로소득(임시고용)			
13	근로소득(일일고용)			
14	근로소득(자활사업)			
15	근로소득(행정인턴)			
W020	사업소득(계)			
24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			
W030	재산소득(계)			
31	재산소득(임대수입)			
32	재산소득(이자수입)			
W090	기타소득(계)			
33	기타소득(공적이전-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			
90	기타소득(공적이전-보훈수당)			
91	기타소득(공적이전)			
92	기타소득(사적이전)			
93	기타소득(부양비)			
94	추정소득			
95	기타소득(사적이전-무료임대)			
96	기타소득(금융기관 연금소득)			
97	기타소득(공적이전-기초노령연금)			
98	기타소득(공적이전-국민연금)			
99	기타소득(공적이전-장애수당)			

## - 수급가구의 재산 항목

ID	HLWER016								
NM	재산								
NO	컬럼ID	타입	길이	비고					
1	YYYYMM	년월		6					
2	GBN	구분(A,B,C,D)		1					
3	BOK_CGG_CODE	시군구코드	C	7	PK				
4	HOUSE_ID	VC	20	PK					
5	SUPPTR_SID 부양자(가구원)주민등록번호		VC	13	PK				
6	SUPPTR_SID_SNO	SUPPTR_SID_SNO 부양자주민일련번호		3	PK				
7	MEANS_SE_CODE	재산구분코드	VC	5	PK				
8	AGE 나이		N	9					
9	EX_RT_APPLY_SE 환산율적용구분		С	1					
10	INCM_EX_TRGT_OSD_YN 소득환산대상제외여부		С	1					
11	MEANS_AM 재산금액		N	15					
12	TRGT_SID	대상자(세대주)주민등록번호	VC	13					
13	TRGT_SID_SNO	대상자주민일련번호	VC	3					

10	1	RG1_BIB_BITO	10.11 6666					
		재산구분코드						
	MEANS_SE_CODE							
7	<u> </u>	코드						
W	001	전체/	재산					
W	010	건축물	<u>-</u> [(계)					
W	020	토지						
W	050	임차보증	·금(계)					
W	060	금융재						
W	070	동산(						
1	1	건축물(						
3	31	선택	•					
3	32	항공기						
4	11	자동차						
4	12	회원권						
4	13	입주권						
4	14	분양권						
5	51	임차보증금(전월세)						
6	51	금융재산(은행예금.적금등)						
6	52	금융재산(저축성보험)						
6	53	금융재산(주식)						
6	64	금융재산(현금,수표,어음,증권거래 등)						
6	35	금융재산(3년미만예.적금)						
-	66	금융재산(3년						
	67	금융재산(보험상품)						
6	88	금융재산(보험보상금)						
69		금융재산(기타)						

## - 수급가구의 공제 항목

ID	HLWER018								
NM	공제								
NO	컬럼ID 컬럼명			길이	비고				
1	YYYYMM	년월		6					
2	GBN	구분(A,B,C,D)		1					
3	BOK_CGG_CODE	시군구코드	С	7	PK				
4	HOUSE_ID	세대ID(Key)	VC	20	PK				
5	SUPPTR_SID	ID 부양자(가구원)주민등록번호			PK				
6	SUPPTR_SID_SNO	O 부양자주민일련번호		3	PK				
7	DEDUC_SE_CODE	E 공제구분코드		5	PK				
8	AGE	AGE 나이		9					
9	DEDUC_AM	DEDUC_AM 공제금액		15					
10	DEDUC_CN	DEDUC_CN 공제내용		100					
11	DEDUC_RT	공제율		15					
12	DEDUC_TGT_AM	공제대상금액		15					
13	TRGT_SID	TRGT_SID 대상자(세대주)주민등록번호 V		13					
14	TRGT_SID_SNO	VC	3						

	공제구분코드					
	DEDUC_SE_CODE					
코드	코드명					
W001	공제액(계)					
W100 소득공제액(계)						
W200	재산공제액(계)					
W300	부채(계)					
311	일반부채					
312 의료비부채						
313	교육비부채					
314 주거부채						
315 금융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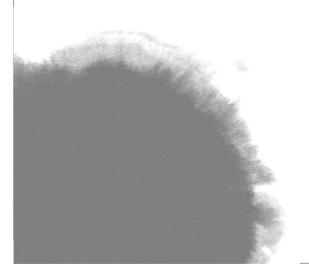
## - 수급가구의 보장구분

ID	HLWER033							
NM	보장구분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비고			
1	YYYYMM	년월		6				
2	GBN	구분(A,B,C,D)		1				
3	BOK_CGG_CODE	시군구코드	С	7	PK			
4	HOUSE_ID	세대ID(Key)	VC	20	PK			
5	SUPPTR_SID	부양자(가구원)주민등록번호	VC	13	PK			
6	SUPPTR_SID_SNO	부양자주민일련번호	VC	3	PK			
7	GUA_SE_CODE	보장구분코드	VC	2	PK			
8	AGE	나이	N	9				
9	CGG_SE_CODE	시군구구분코드	С	7				
10	FAMCO_CNT	가구원수	VC	2				
11	FAMCO_CNT_GUGAN	MCO_CNT_GUGAN 가구원수구분		10				
12	MIN_INCM_YN	만5세아저소득2층여부	VC	1				
13	RSDC_KD_CODE	주거유형코드	VC	3				
14	SEX_CD	성별	С	1				
15	SIDO_CODE	시도코드	С	7				
16	SKJ_SE_CODE	수급자구분코드	VC	2				
17	TRGT_SID 대상자(세대주)주민등록번호			13				
18	TRGT_SID_SNO	대상자주민일련번호	VC	3				

	보장구분						
GUA_SE_CODE							
코드	코드명	시점					
2	영유아(2층)	2009년5월					
21	영유아복지(만5세아)						
22	영유아(1층)						
23	영유아(3층)						
24	영유아(4층)						
25	두자녀이상						
26	영유아(5층)						
27	영유아(100%)	2009년8월					
28	영유아(60%)						
29	영유아(30%)						
30	영유아(방과후보육료)						
31	영유아(기본보육료)						
32	영유아(양육수당)						
33	영유아(장애아방과후)						
34	영유아(100%법정)						
35	영유아(신만5세아)						
36	영유아(만5세아법정)						
37	두자녀(60%)						
38	두자녀(30%)						
39	영유아(방과후법정)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주요내용





## 제2장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주요내용

1. 개편 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요

### □ 기본구조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영유아 기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산조사를 통해 산출된 소득인정액(선정방식)을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비교
- 지원유형(차등보육료, 두자녀, 만5세)과 지원계층(1~5층)을 구분하는 각각의 선정기준액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 결정
- □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구분 및 차등보육료 지원수준
  -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지원계층은 5개 층의 계단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계층(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은 가 구규모에 따라 각각 설정됨
  - 1층 (전액지원-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 영유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영유아 등, 법정 지원대상
  - 2층 (전액지원-10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 3층 (부분지원-8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상 연간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소득 (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 이하

- 4층 (부분지원-6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50~70% 이하
- 5층 (부분지원-30%)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연간 도시근로자기구 월평균소득(통계청 가계조사 기준 발표자료)의 70~100% 이하
- 만 5세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최대 선정기준은 5층에
   해당하는 선정기준과 동일하며 계층구분에 따라 지원수준이 상이하게 결정됨

###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에 따른 계층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9월 1일 발표하는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이 전국가계조시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을 혼용하여 설정되고 있다는 정합성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
  - 1층과 2층은 최저생계비를, 3~5층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 도출 및 적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지원 비율	2008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단위: 만원/월)				
		미판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년 0H	-	-	1	-	
2층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전액 (100%)	123	151	178	205	
3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부분 (80%)	178	199	210	230	
4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부분 (60%)	250	278	294	322	
5층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분 (30%)	357	398	420	460	

### □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었음
  - 보육료 지원제도는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선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두 제도가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제도가 선별적 공공부조의 자산조사 방식을 준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보육료 지원제도의 선정방식과 관련된 각종 민원과 문제점을 유발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2. 개편 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 보육료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에 따른 지원계층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있으나,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9월1일 발표하는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와 통계청이 전국가계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기구의 평균소득을 혼용하여 설정되고 있어 선정기준으로서 정합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음
  - 전액지원 대상인 1~2층은 최저생계비를, 부분지원 대상인 3~5층은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활용하여 선정기준액을 도출 및 적용함
- 특히, 선정기준액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과의 차이에 따라 해당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
  - 선정기준액(평균소득)과 선정방식에서의 소득인정액 신출방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예를 들어, 4인가구 대상 5층의 선정기준은 소득 398만원인 반면, 4인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근거로 보육료 지원대상 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398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그러므로,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중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의 선정기준 내에서 개념 및 도출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선정기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일치시키는 것이었음

-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된 무상보육(전액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인 영유아 기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한 개념를 정립하고, 선정기준액 도출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부분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소득인정액 하 위 50~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역시 (준)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적합한 선정체계 구축을 위해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 필요

###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이미 전산조회를 통해 확 보한 자료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전산자료의 미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부 소득 및 재산항목, 생활실태, 동거기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 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음
- 이처럼, 영유아 가구의 70%에 대한 보육료 전액 또는 부분 지원을 통한 준보편적 제도로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선별적이고 엄격한 자산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 정책집행 방식이 아니므로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였음
  - 수요자인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의 입장에서 신청 시 제출 및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았고 확인조사 등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였음
  - 일선 지자체의 보육관련 업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집중 신청기간에 일시적인 민원 집중과 확인조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자산조사 관련 업무 부담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은 자산조사 대상 소득 및 재산항목, 조사범위 및 기준 등 자산조사 방식과 관련된 원칙 또는 지침과 이를 적용하는 일선 지자체의 현실 사

이에 존재하는 괴리로 인한 선정방식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민원 역시 비현실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선정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관련 특례 조항
  - 일반재산 및 승용차 분류와 관련된 자동차 배기량 기준 (2000cc)
  - 전업주부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문제
  - 사적이전소득의 포함 여부
- 준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로의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우선적으로 견지하면서 선정방식이 지닌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기존 보육료 지원제도 가운데 추정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은 선정과정에서 자산조사 대상 항목에서 제외해야 하였음
  -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소득환산 시 반영해야 하였음
  - 보육료 지원제도가 선별적 공공부조 제도로서 엄격한 자산조시를 통한 수 급대상 선정과 보충급여 방식의 급여수준을 결정해야만 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과 관련된 환산율은, 현행 1/3만 반영하고 있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기초 노령연금 수준(연간 5%)과 유사하게 보다 완화해야 하였음
- 3.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주요내용
- □ 20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개편
  - 2009년 7월부터 전체 영유아기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차등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영유아기구의 공적 행정자료를 기초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의 가구규모 및 분위별 선정기준액을 산출
    - 그 동안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2009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별 선정기준액에 따라 보육료 지원계층이 구분됨

- 영유아기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까지는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인정액 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
- 선정기준 개편과 함께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자산조사 업무부담 및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소득 및 재산항목에 대한 자산조사 방식을 2009년 추진되었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간소화 및 합리화

### □ 가구규모 및 지원계층별 선정기준

- 전체 영유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 행정자료를 기초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의 선정기준 258만원, 소득인정액 하위 60%와 70% 선정기준은 339만원과 436만원으로 최종 결정함
  - 보장단위는 영유아 및 그 부모와 영유아 기준 형제자매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구원수가 결정됨
  - 7인 이상 기구의 경우, 6인기구를 기준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선정기준액 30만원씩 상향 조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인정액 (만원)		소득하위 70%초과	정부미지원시설이용 0~2세 이동 => 기본보육료 지원			5
	만5세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변동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계층은 5층에서 3층으로 조정됨
    - 지원수준(전액 또는 부분지원 비율)은 개편 전 지원계층에 따라 '100% -

100% - 80% - 60% - 30%'에서 개편 후 '100% - 60% - 30%'로 조정

- 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의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음
- 4인 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 선정기준은 개편 전 차상위계층 (약 159만원)에서 소득인정액 2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됨
  - 선정방식 개편 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선정기준 확대는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3층과 4층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액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를 의미함
- 4인가구를 기준으로 2009년 7월 개편 전후 지원계층별 선정기준액 및 지원 수준을 비교하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소득하위 50	)% 소	특하위	60%	소득하위 70%
개편 후 지원수준	100% 지원		60%	60% 지원		[원
개편 전후	정부지원 확대 1~2층 3층 (100%) (80%)			부모 부담 4층 (80%) 5층 (30%)		부담
지원범위 변화						
	·	(00 /0)				
	기본보육회	료 (0~ <b>2</b> 세 정부	L 미지원	시설 ㅇ	1용 영유	아 지원)
4인가구 선정기준	159	213	298		427	
(만원) 변화		258	3	339		436

- 부분지원 대상 선정기준 역시 크게 상향 조정됨
  -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의 4층에 해당하는 60% 지원계층의 경우, 213~298 만원에서 258~339만원으로 선정기준이 약 4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음
  - 정부의 치등보육료 지원 상한선으로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5층에 해당하는 30% 지원계층 선정기준은 298~427만원에서 339~436만원으로 상승함
- 이러한 선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지원은 추가적으로 확대(하늘색 부분) 되었으며, 그만큼 영유아 가구 부모의 부담은 감소함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지원을
   받게 되며, 실제 보육료 지원 영유아 규모는 보육시설 이용률에 따라 변동
- 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주요내용
- □ 기본방향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체계 간소화·합리화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체계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신청 영유아 가구의 제출서류 과다, 일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자산조사 업무부담 증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를 의미하는 보장단위와 소득인정액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 포함여부, 조사원칙 및 프로세스 개선
- □ 선정방식 개편의 기대효과
  - 영유아 가구

    - 단,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인프라 상, 공적 행정자료가 없는 임대차계 약서,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서 등의 경우 제출 필요
  - 일선 보육업무 담당 사회복지직공무워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적용원칙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자산조사 업무 부담 최소화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 폐지 등으로 그 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민원을 발생시켰던 선정기준의 합리화로 민원 감소 및 관련 업무부담 완화
- □ 주요 개편사항
  - 보장단위(자산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 개편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 조회 실시
-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재산유형 분류기준 완화
-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 □ 보장단위 개편 : 조사대상 기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 (문제점) 조부모의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부모의 자산보유 현황 과 가구원수 증감 시 유·불리에 따라 편법으로 가구원의 범위를 설 정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선정
  - 보장단위로 인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및 탈락 관련 불합리한 사례
    - ① 조부모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기구원수를 증가시켜 보다 높은 선정기준 을 적용 받는 가구
    - ② 다세대, 다기구 주택 거주 시 동일주택에 거주하나 자산을 보유한 조부 모를 별도 세대로 구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 ③ 실직, 폐업 등으로 조부모와 동거 시 조부모가 보유한 소득 및 재산에 의해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 발생
  - (개선) 보장단위에서 조부모 제외
    -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서 조부모를 제외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중심으로 보장단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한 자산조사 대상 감소로 자산조사 업무 간 소화 및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
    - 조부모의 지산조사 대상 제외로 인한 가구원수 감소(선정기준의 하향)의 요인으로 탈락되는 가구 대상으로 유예기간 적용('10.2월)
- □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가구는 최소 3~4종부터 많은 경우 7~8종에 이르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 (개선)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하여 영유아 가구의 제출서류를 최소화

- □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조사 실시
  - 근로소득
    -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 제출
    - (개선) ①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  $\to$  ② 국민연금 보수월액  $\to$  ③ 국세청 종합소득 순서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적용
    - 일용근로자 중 공적 행정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이 고용·임금 확인서 등으로 사용
  - 사업소득
    - (기존) 매출액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 및 반영
    - (개선) 국세청 종합소득 중심의 공적 행정자료 반영
  - 주택·건물 재산가액 : (기존) 시가 적용 ⇒ (개선) 공시가격 적용
  - 자동차
    - (기존) 보험계약서 제출 및 보험계약서 상 자동차가액 적용
    - (개선) 보험개발원 공적 행정자료 중심으로 적용
- □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조회 실시
  - (기존)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신고자료에 의존
  - (개선)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로부터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 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 반영
    - 영유아보육법 개정('08.12)을 통해 근거 마련
- □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 및 환산방식 개선
  - (기존) 자동차의 일반재산 및 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를 경계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여 각종 민원과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편적 보육료지원제도를 지향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
    - 배기량 2000cc 이상 : 차량가액 × 100% / 3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 4.17% / 3
  - (개선)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완화하고, 다자녀(자녀수 3인 이상) 기구의 경우 배기량 기준 미적용

- 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기준 완화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자동차 보유비율 : 85%
- 전체 영유아 가구 중 2500cc이상 자동차 보유비율 : 13%

#### □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 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특히, 전업주부가 포함된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하여 추정소득을 적용함으로써발생했던 민원 및 자산조사 부담 개선

####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일반 사항	
보장단위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① 소득	<ul> <li>근로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li> <li>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li> </ul>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승용차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 / 3) (2500cc이상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일반재산	③ 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 / 3) ④ 주택·건축물 = 시가표준액(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0.9)×환산율(4.17% / 3) ⑤ 전월세보증금 = 보증금×환산율(4.17% / 3) ⑥ 2500cc미만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환산율(4.17% / 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환산
⑦ 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 환산율(6.26% / 3)
■ 공제	
⑧ 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 중소도시 3400만원 / 농어촌 2900만원
 ⑨ 부채	금융권 부채 전액
■ 소득인정액 산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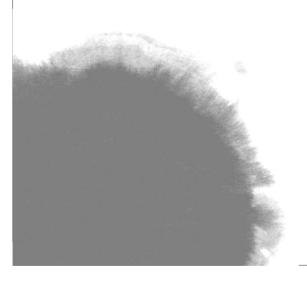
- $= 1 + \{ (3 + 4 + 5 + 6 + 7 8 9) + 2 \}$ 
  - ※ ③~⑦ 재산유형별 합산 후 ⑧과 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 각 재산유형별 환산율 적용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 ※ 공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지며,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주요 개편사항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보장단위)	영유아 기준 생계를 같 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영유아 기준 부모 및 형제 자매	<ul> <li>조부모 동거사실 확인불가</li> <li>에 따른 편법 성행</li> <li>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li> <li>한정</li> </ul>
소득 및 재산조사 원칙 및 조사방법	<ul> <li>· 근로소득</li> <li>: 소득증명서류 제출</li> <li>· 사업소득</li> <li>: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li> </ul>	· 근로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 국  민연금보수월액 → 국세  청종합소득 → 기타자료  순으로 적용  ·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  득자료 사용	<ul> <li>소득증명서류 제출 없이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조시수행</li> <li>복수의 행정자료 존재 시 적용 우선순위 사전 설정으 로 혼란 해소</li> </ul>
사적이전 소득	적용	폐지(제외)	– 실질적인 확인 곤란으로 자 산조사 항목에서 제외
추정소득	적용	폐지(제외)	<ul> <li>전업주부 등 추정소득에 대한 각종 민원 발생</li> <li>정확한 추정소득 계산 근거미흡</li> </ul>
자동차	- 2000cc미만 환산율 : 4.17%/3	- 2500cc미만 환산율 : 4.17%/3 - 2500cc이상 환산율 : 100%/3	- 자동차의 일반재산/승용차 분류기준인 배기량 2000cc 를 경계로 적용되는 소득 환산율 관련 각종 민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재산유형 분류기준 및 소득환산 방식	- 2000cc이상 환산율 : 100%/3	- 3자녀 이상기구는 배기량 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 로 분류	<ul> <li>보편적 보육료 지원제도 지향의 정책취지와 목표를 반영하여 기준 완화</li> </ul>
부동산 재산가액 산정방식	주택·건축물 ⇒시가 파악 후 적용	주택·건출물 ⇒시기표준액(공시기격) 적용	- 재산가액 평가기준 및 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실시여부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미실시 신고자료 반영	실시	<ul> <li>정확한 금융재산 및 부채</li> <li>조회결과의 반영으로 대상</li> <li>선정의 형평성 제고</li> </ul>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 제3장

#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 제1절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을 분석

-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에 따른 영유아 가구 보육시설 이용률 및 정부의 보육료 지원율 변화를 비교 분석함
  - (개편 전) 2008년 12월 기준 ☞ (개편 후) 2009년 12월 기준
-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층 및 영유아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을 위해 전체 영유아 및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규모를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연령 구분에 따라 산출함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도출 시 활용했던 분석 DB(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상 영유이(2003~2008년 출생)를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규모를 산출함

⟨표 3-1⟩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전체 영유아 규모 및 구성비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TT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 신세
	하위 0~50%	231,972	246,821	224,918	222,078	241,232	252,149	1,419,170
	전액(100%) 지원	50.5%	50.9%	50.5%	51.0%	50.7%	50.9%	50.8%
	하위 50~60%	53,108	53,662	46,778	43,716	45,355	44,985	287,604
	부분(60%) 지원	11.6%	11.1%	10.5%	10.0%	9.5%	9.1%	10.3%
전체	하위 60~70%	48,596	50,134	45,246	42,940	46,230	46,805	279,950
영유아	부분(30%) 지원	10.6%	10.3%	10.2%	9.9%	9.7%	9.4%	10.0%
	하위 70% 초과	125,531	133,846	128,562	127,006	143,112	151,462	809,519
미지원 전체	미지원	27.3%	27.6%	28.9%	29.1%	30.1%	30.6%	29.0%
	459,207	484,462	445,504	435,740	475,929	495,401	2,796,243	
	'관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규모의 경우, 2009년 12월 기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제공)를 기초로 보육료 지원유형(치등보육료, 두 자녀, 만 5세) 및 지원수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로 재구성함

⟨표 3-2⟩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현황 및 구성비(2009.12)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50%	51,837	99,252	122,213	105,853	96,028	\ /	475,183
	차등보육료 전액(100%) 지원	47.9%	50.1%	45.9%	46.7%	49.2%	]\ /	41.3%
	하위 50~60% 두자녀60	7,566	10,292	10,687	5,340	1,403		35,288
	전액(60%+40%) 지원	7.0%	5.2%	4.0%	2.4%	0.7%		3.1%
0~4세	하위 50~60% 차등보육료	4,828	12,511	19,702	19,101	18,283		74,425
0~4^	부분(60%) 지원	4.5%	6.3%	7.4%	8.4%	9.4%		6.5%
	하위 60~70% 두자녀30	4,991	7,226	8,238	3,979	992		25,426
	무사더30 부분(30%+50%) 지원	4.6%	3.6%	3.1%	1.8%	0.5%		2.2%
	하위 60~70% 차등보육료	3,503	8,858	14,796	14,197	13,254	]/ \	54,608
	부분(30%) 지원	3.2%	4.5%	5.6%	6.3%	6.8%	/	4.7%
_ 2	하위 0~70%			_			110,118	110,118
5세	만5세 전액(100%) 지원			<i>&gt;</i>			70.8%	9.6%
	하위 70% 초과	35,429	59,920	90,703	78,128	65,199	45,337	374,716
	미지원	32.8%	30.3%	34.1%	34.5%	33.4%	29.2%	32.6%
전체	전체 보육시설 이용	108,154	198,059	266,339	226,598	195,159	155,455	1,149,764
	영유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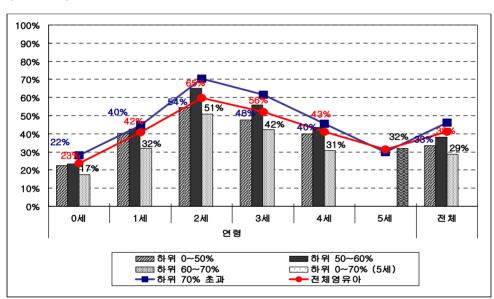
#### ⟨표 3-3⟩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2009.12)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하위 0~50%	22.35%	40.21%	54.34%	47.66%	39.81%		33.48%
0~4세	하위 50~60%	23.34%	42.49%	64.96%	55.91%	43.40%		38.15%
	하위 60~70%	17.48%	32.08%	50.91%	42.33%	30.82%		28.59%
5세	하위 0~70%							$\times$
الة (ح	하위 70% 초과	28.22%	44.77%	70.55%	61.52%	45.56%	29.93%	46.29%
전체 -	전체 영유아	23.55%	40.88%	59.78%	52.00%	41.01%	31.38%	41.12%

#### □ 소득인정액 계층 및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 전체 영유아 및 보육통계 상 제시된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2009년 12월말 기준 전체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41.12%로 나타났음
- 영유아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약 59.78%로 가장 높았으며, 0세 23.55%, 1세 40.88%로 아동의 출생 이후부터 2세까지 증가 하여 정점에 이른 후 보육시설을 대체하여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3세부터 5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3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2.0%, 4세의 경우 약 41.0%로 1세와 유사한 수준이며 다른 연령과 달리 하위 70% 이하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5세의 경우 약 31.4%까지 낮아짐





- 소득인정액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을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70%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경계로 하여 보육료의 30%의 부분 지원을 받는 하위 60~70%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하위 50~60% 계층의 이용률

보다 낮아졌으며 오히려 하위 50% 이하 계층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짐

- 이처럼 소득인정액 하위 60~70% 계층에서 가장 낮게 떨어졌던 보육시설 이용률은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하위 70% 초과 계층(0~2세의 경우에 한해 기본보육료 지원)의 경우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인 0~4세의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약 33.5%, 하위 50~60% 계층은 약 38.2%인 반면, 하위 60~70% 계층은 28.6%로 가장 낮았으며 하위 70% 초과 계층의 경우 약 46.3%로 가장 높았음
- 이러한 경향은 각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각 연령별로 하위 60~70% 계층의 이용률은 하위 50~60% 계층보다 약 6~14%p, 하위 70% 초과 계층보다 약 11~19%p 낮게 나타났음
- 이것은 모수인 소득인정액 계층별 전체 영유아 규모가 공적 행정자료의 사전 분석을 통해 산출된 반면, 소득인정액 계층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통계는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절차를 거쳐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라는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액 경계값보다 약간 낮은 소득인정액을 보유하여 보육료 부분(30%)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하위 60~70% 계층의 일부 가구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통계에서는 하위 70% 초과 계층으로 분류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함
  - 결과적으로, 하위 60~70% 계층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수급률이 낮은 상황이 보육시설에 이용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신청 유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하위 70%)과 유사한 수준에 해당 하는 보육시설 이용가구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측 이나 자가 체크(self-check)가 가능하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수요자 접근성 제고 등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 대한 전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5세의 경우 하위 70%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약 32.0%로 하위 70% 초과 계층 (약 29.9%)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취학 직전인 5세의 경우, 하위 70% 초과 계층에서 보육시설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분석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개편을 위한 선정기준안 도출 및 사행에 따른 예산변동 분석 당시, 기존 보육통계에 기초한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산출결과를 가정하여 적용한 바 있음

〈표 3−4〉 개편 전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2008.12)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0~2세
이용률	21.68%	33.18%	54.52%	52.87%	40.70%	35.55%	39.46%	36.22%
지원율	11.56%	20.52%	34.14%	33.26%	25.85%	24.80%	24.87%	21.92%
이용 대비 지원율	53.31%	61.85%	62.61%	62.90%	63.50%	69.76%	63.02%	6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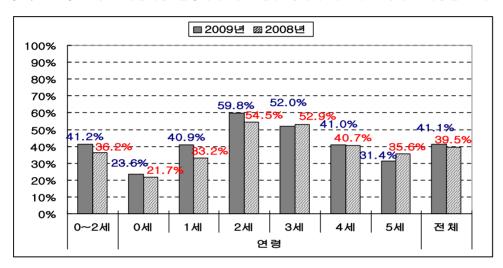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재구성

- 개편 전 보육료 지원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전후의 연령별 보육 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 앞서 제시한 결과와 같이, 2009년 12월 기준 전체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41.1%로 2008년 12월 기준 보육시설 이용률(39.5%)에 비하여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약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는 연령별로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0~2세 영아는 약 5.0%p 상승한 반면 3~5세의 경우 다소 낮아짐
  - 2009년 3세와 4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각각 약 52.0%와 약 41.0%로
     2008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5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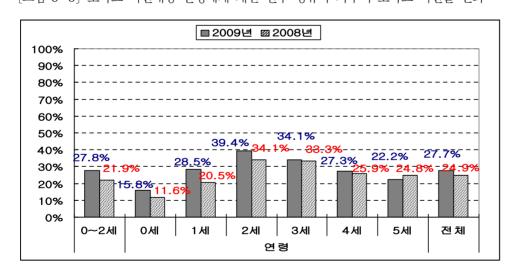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35.6%에서 31.4%로 약 4.2%p 감소하였음

 반면에, 0~2세 영아의 경우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는데, 1세의 경우 2008년에 약 33.2%에서 2009년에는 약 40.9%로 약 7.7%p 상승하였으며, 0세와 2세 역시 각각 1.9%p와 5.3%p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그림 3-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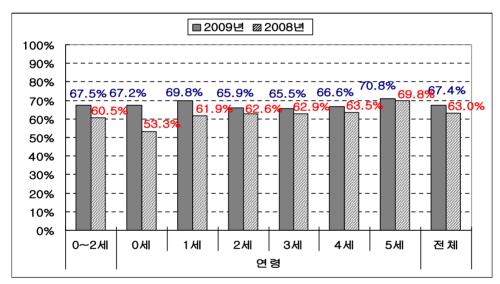


[그림 3-3]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율 변화



- □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율 변화 분석
  - ─ 보육시설 이용률과 달리, 연령별 전체 영유아 대비 정부 보육료 지원율(기본 보육료 제외)은 5세를 제외한 0~4세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함
    -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대비 보육료 지원율은 약 27.7%로, 2008년 12월(24.9%)에 비해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0~2세의 경우 21.9%에서27.8%로 약 5.9%p 증가한 반면 5세의 경우 2.6%p 낮아짐
    - 1세의 경우, 2008년에 약 20.5%에서 2009년에 약 28.5%로 가장 큰 폭 (8.0%p)으로 상승하였으며, 2세(5.3%p), 0세(4.2%p) 순서로 나타났음

[그림 3-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대비 보육료 지원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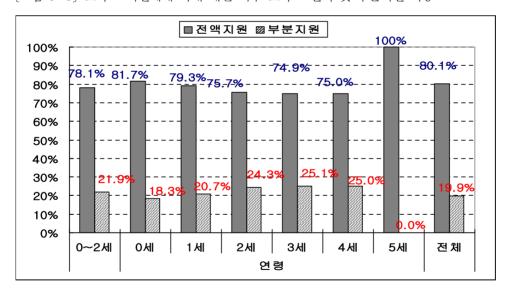


- 특히, 보육료 지원율의 개념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의 비율'로 재분석할 경우 모든 연령에서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대비 보육료 지원율은 2008년에 약 63.0%에서

2009년에 약 67.4%로 4.4%p 증가하였으며, 0~2세 영아의 경우 2008년 60.5%에서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이후 67.5%로 약 7.0%p(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0세의 경우 53.3%에서 67.2%로 13.9%p(26%)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보육료 지원율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1세의 경우 약 7.9%p, 2~4세는 각각 약 3%p 내외로 증가한 반면, 5세는 약 1.0%p 증가하는데 그쳤음
- 한편,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 선정기준의 대폭 확대(4인 가구의 경우 약 100만원 상향 조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가운데 전액지원을 받는 영유아의 비율은 5세(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에 대해 100% 전액지원)를 포함하여 약 80.1%, 0~2세 영아의 경우 78.1%로,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전액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와 1세의 경우 각각 81.7%와 79.3%로 전액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4세의 전액지원 비중은 75% 내외로 나타남

[그림 3-5]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이후 보육료 전액 및 부분지원 비중



〈표 3−5〉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및 보육료 지원율 변화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0~2세
전체 영유아	459,207	484,462	445,504	435,740	475,929	495,401	2,796,243	1,389,174
이용 영유아	108,154	198,059	266,339	226,598	195,159	155,455	1,149,764	572,552
이용률 (2008년말)	23.55% (21.68%)	40.88% (33.18%)	59.78% (54.52%)	52.00% (52.87%)	41.01% (40.70%)	31.38% (35.55%)	41.12% (39.46%)	41.22% (36.22%)
지원 영유아	72,725	138,139	175,636	148,470	129,960	110,118	775,048	386,500
보육료 지원율 (2008년말)	15.84% (11.56%)	28.51% (20.52%)	39.42% (34.14%)	34.07% (33.26%)	27.31% (25.85%)	22.23% (24.80%)	27.72% (24.87%)	27.82% (21.92%)
전액지원 영유아	59,403	109,544	132,900	111,193	97,431	110,118	620,589	301,847
 전액지원율	12.94%	22.61%	29.83%	25.52%	20.47%	22.23%	22.19%	21.73%
부분지원 영유아	13,322	28,595	42,736	37,277	32,529	-	154,459	84,653
부분지원율	2.90%	5.90%	9.59%	8.55%	6.83%	-	5.52%	6.09%
이용 대비 보육료 지원율 (2008년말)	67.24% (53.31%)	69.75% (61.85%)	65.94% (62.61%)	65.52% (62.90%)	66.59% (63.50%)	70.84% (69.76%)	67.41% (63.02%)	67.50% (60.53%)
이용 대비 전액지원율	54.92%	55.31%	49.90%	49.07%	49.92%	70.84%	53.98%	52.72%
이용 대비 부분지원율	12.32%	14.44%	16.05%	16.45%	16.67%	-	13.43%	14.79%
전액지원 비중	81.68%	79.30%	75.67%	74.89%	74.97%	100.00%	80.07%	78.10%
부분지원 비중	18.32%	20.70%	24.33%	25.11%	25.03%	0.00%	19.93%	21.90%

#### <참고> 0세 보육시설 이용률 신출방식 및 주기 개선 필요성

- □ 현행 0세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방식의 문제점
  - 현행 보육통계 상 0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연령구분 기준에 따라 전년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1월부터 보육통계 산출 시점까지 출생한 12개월 미만의 영아 역시 보육시설 이용자 수에 포함되는 반면,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 시 모수에 해당하는 연령별 전체 영아 규모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에 출생한 영아만으로 통계를 산출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예를 들어, 2009년 12월 기준 보육통계에 기초한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출생한 영 아(0~24개월 미만)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의 규모인 반면, 모수에는 전년도인 2008년 출생한 영유아(12~24개월 미만)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방식에 따라 산출된 <표 3-5>의 경우에도 0세 보육시설 이용률 23.55%는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과다 추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0세의 보육시설 이용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육통계 산출방식 및 주기의 개선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0세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을 정밀하게 산출하기 위해 보육통계를 재구성하여 분석함
    - 특히, 양육수당 및 여성가족부 0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필요함
- □ 0세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방식 및 주기 개선방안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보육통계의 연령구분 상 0세로 분류되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영유이를 당해연도 1월 이후 출생한 0~12개월 미만 영유아나) (00세)와 12~24개월 미만 영유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전체 영유아와 보육시설 이용 영유이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이용률을 산출해야 함
    - 이 때, 0~12개월 미만 전체 영유아 수를 모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 해

<sup>1)</sup> 현재 일부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어를 구분하기 위해 00세라고 부르기도 함

- 2월경 발표되는 통계청의 출생통계(잠정치)를 반영(예를 들면, 2009년 말기준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 시 2010년 2월 발표된 통계청 출생통계 활용)하여 각 집단별 보육시설 이용률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함
- 따라서, 보육통계 생산 주기와 관련하여 연령 및 소득인정액 계층(보육료 지원수준), 장애아 등 각종 지원유형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규모는 분기나 반기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출하고,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연말 기준으로 다음 해 2월경 산출하여 공표함으로써 보육 및 돌봄 서비스 관련 정책수립 및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같은 보육시설 이용률 산출방식의 개선을 통해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0~24개월)에 대한 양육수당 운영의 당위성을 제고하며 보육료 지원체계와 양육수당, 더 나아가 여성기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0세(0~12개월)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규모 산출 및 확대 등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음
- □ 0~12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재산출 (2009년 12월말 기준)
  - 기존 0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23.55%인 반면, 0~12개월 영유아를
     구분하여 보육시설 이용률을 재산출한 결과 약 4.7%에 불과함
    -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의 경우 약 4.0%,
       하위 70% 초과 계층의 경우 6.4%로 0~12개월 영아의 실질적인 보육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

소득인정액 계층	보육시설 이용률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수	전체 영유아 수
하위 0~50%	3.96%	8,914	224,826
하위 50~60%	4.84%	2,498	51,643
하위 60~70%	3.53%	1,665	47,191
보육료 지원대상	4.04%	13,077	323,660
하위 70% 초과	6.40%	7,776	121,540
전 체	4.68%	20,853	445,200

- □ 12~24개월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재산출 (2009년 12월말 기준)
  - 12~24개월 미만 영유아를 구분할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18.8%로 기존 산출방식에 의한 이용률(23.55%)보다 약 4.8%p 낮게 나타나며, 0~12개월 미만 영유아(4.7%)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의 경우 17.6%,

소득인정액 계층	보육시설 이용률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수	전체 영유아 수
하위 0~50%	18.14%	42,077	231,972
하위 50~60%	18.63%	9,894	53,108
하위 60~70%	14.04%	6,823	48,596
보육료 지원대상	17.62%	58,794	333,677

27,586

86,380

125,530

459,207

하위 70% 초과 계층의 경우 약 22.0%로 나타남

21.98%

18.81%

하위 70% 초과

전 체

#### □ 0~24개월 미만(현행 보육통계 상 0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재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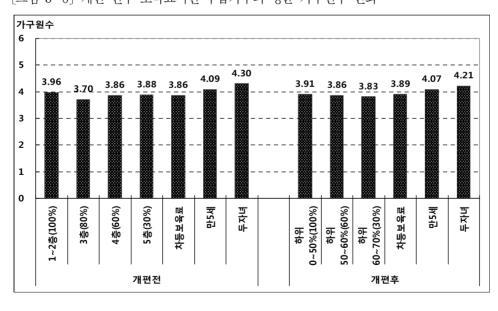
- 기존 신출방식을 적용할 경우 0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약 23.6%인 반면, 동일 개념으로 0~24개월 미만 전체 영유아와 보육시설 이용 영유이를 반영하여 재산출한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11.9%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하위 70% 이하는 약 10.9%, 하위 70% 초과 계층의 경우 약 14.3%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기존 보육통계 상 1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40.9%와 비교한다면, 0~24개월 미만 영유아의 실질적 보육시설 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24개월 이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11.9% ☞ 40.9%)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따라서, 0~24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보건복지부)
     및 0세 돌봄서비스 지원제도(여성가족부)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음

소득인정액 계층	보육시설 이용률	보육시설이용	전체
<u>エコピのコ/川の</u>	그기기만 기이크	영유아 수	영유아 수
하위 0~50%	11.16%	50,991	456,798
하위 50~60%	11.83%	12,392	104,751
하위 60~70%	8.86%	8,488	95,787
보육료 지원대상	10.93%	71,871	657,337
하위 70% 초과	14.31%	35,362	247,070
전 체	11.86%	107,233	904,407

#### 제2절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기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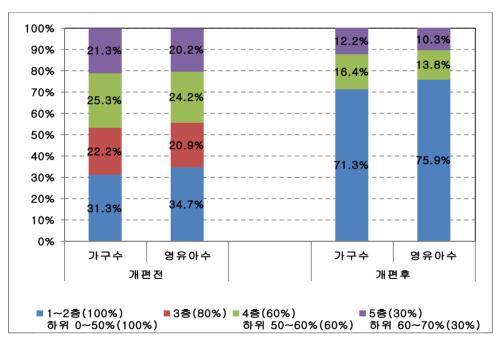
- □ 여기서는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2009년 7월) 전후인 2009년 5월과 8월을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과 상관없이 각 시점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의 분포와 함께 소득인정액 수준의 변화 등을 횡단적으로 비교 분석함
  - 1.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변화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시, 자산조사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보장단위를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전체'에서 '영유아 및 부모'로 축소 개편 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요인이 존재하였음
  - 그러나, 가구원수 조정에 따른 수급탈락 등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가구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예조치 적용 등으로 인해, 개편 전후 차등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약 3.9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3-6]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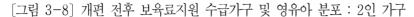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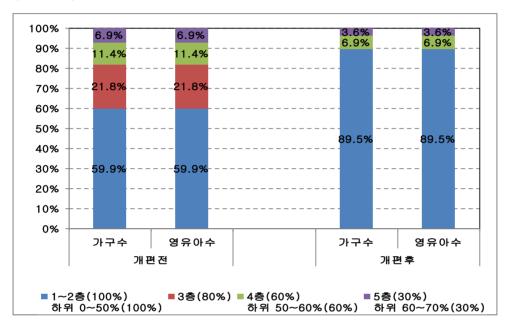
-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
  - 개편 전후 나타난 보육료 지원수준별 기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전액지원 대상 확대 효과로 인해 차등보육료 지원 수급기구 가운데 전액지원(개편 전 1~2층 vs. 개편 후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을 받는 가구 및 영유아의 비중이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임
    - 전액지원 기구 및 영유아 비중은 개편 전 31.3%와 34.7%에 불과했으나, 개편 후에는 71.3%와 75.9%로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차등보육료 지원 수급기구 및 영유아 규모가 개편 전에 약 40만 2천 가구의 47만 2천명에서, 개편 후에는 약 56만 8천 가구의 68만 3천명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액지원을 받는 가구의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역시 약 12만 6천 가구의 16만 4천명에서 약 40만 5천 가구의 51만 9천명으로 약 3배 이상 확대되었음

[그림 3-7]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 가구규모별로 구분(2인~6인 이상)하여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별 영유아 기구 및 영유아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3인 기구의 선정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2인 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대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개편전후 59.9%에서 89.5%로 확대된 반면, 3인 가구의 경우 개편 전후 23.1%에서 67.4%까지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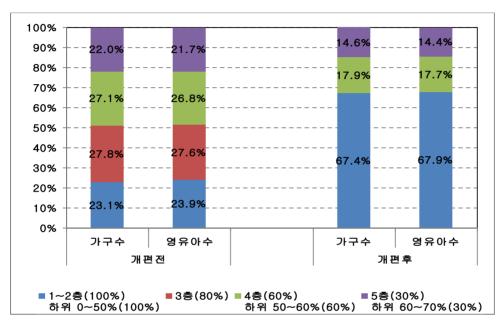


- 주로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2인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전액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가운데 약 90%가 소득 인정액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여 전액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료의 60% 및 30%를 지원 받는 부분지원 가구의 비중은 각각 6.9%와 3.6%로 낮아짐
  - 개편 전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2인 가구 중 보육료의 80%를 부분 지원 받았던 가구의 비중이 21.8%로 전액지원 다음으로 높았으나,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분 전액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전액지원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3인 기구의 경우, 개편 전에 3층(80%) 및4층(60%)에 해당하는 기구의 비중이 각각 약 2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으로 인해 전액지원 비중이 23.1%에서 67.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기준으로 23.9%에서 67.9%로 증가함

• 그러나, 3인 가구의 경우 보육료의 60% 및 30%를 부분지원 받는 가구 및 영유아의 비중이 각각 17.9%(17.7%)와 14.6%(14.4%)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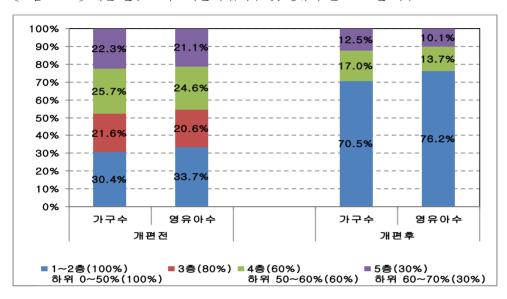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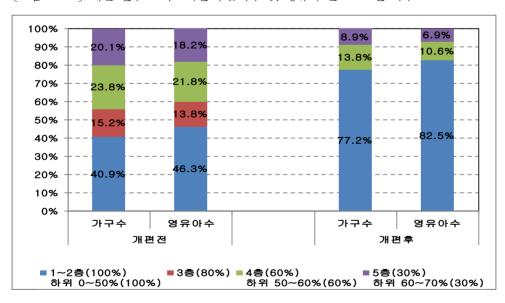
- 보육료지원 수급기구 중 절대적인 규모가 가장 큰 4인 가구 역시,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은 개편 전 30.4%에서 개편 후 70.5%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기준 전액지원을 받는 대상은 개편 전후 33.7%에서 76.2%로 증가함
  - 4인 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전액지원 다음으로 60%의 부분지원을 받는 가구(4층) 비중이 25.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개편 이후에도 보육료의 60%와 30%를 부분적으로 지원받는 가구(영유아) 비중이 17.0%(13.7%), 12.5%(10.1%)로 3인 가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5인 가구의 경우 역시,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이 개편 전 40.9%에서 개편 후 77.2%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영유아 기준으로는 46.3%에서 82.5%로 증가함

•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개편 전에는 60%의 부분지원을 받는 가구(4층) 비중이 23.8%로 전액지원 다음으로 높았으며, 개편 이후 보육료의 60%와 30%를 부분지원 받는 가구(영유아)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3.8%(10.6%)와 8.9%(6.9%)로 나타남

[그림 3-10]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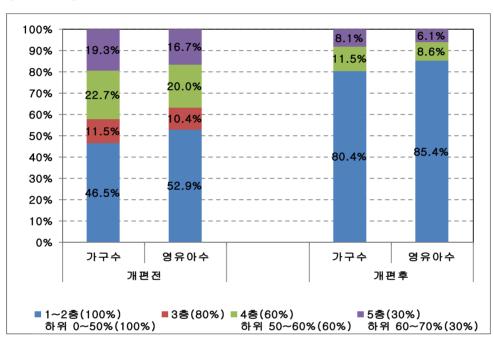


[그림 3-11]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 6인 이상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에 있어서 4인 또는 5인 가구와 유사한 변화 경향을 나타냄
  -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은 개편 전 46.5%에서 개편 후 80.4%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영유아 기준으로도 52.9%에서 85.4%까지 증가함
  - 개편 전에는 전액지원 다음으로 60%의 부분지원을 받는 가구(4층) 비중이 22.7%로 높았으며, 개편 후 60%와 30%의 부분지원을 받는 가구(영유아) 비중은 11.5%(8.6%)와 8.1%(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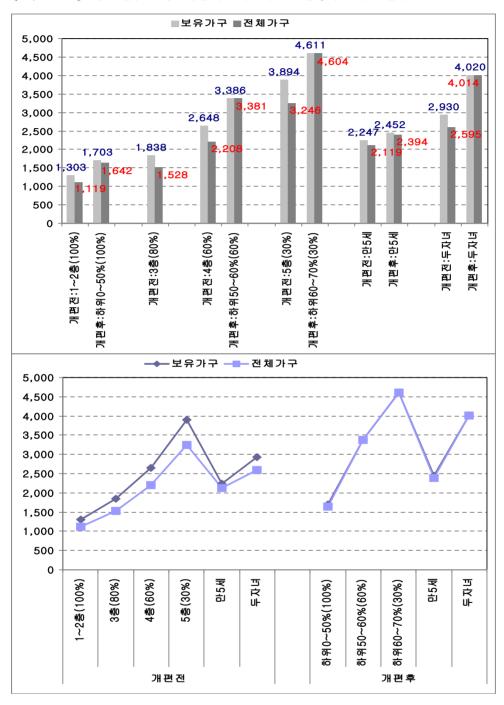
[그림 3-12]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 2.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 □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계층(보육료 지원수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전액지원(개편 전 1~2층, 개편 후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및 부분 지원(개편 전 3~5층, 개편 후 하위 50~70%) 등 동일한 보육료 지원수준에 해당하는 집단별로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평균을 비교해보면 개편 전에 비해 개편 후에 소득인정액 평균이 상당히 높아졌음
    - 이것은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둘째, 개편 전에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소득인정액 0인 기구 제외)' 사이에 크게 나타났던 소득인정액 평균의 차이가 개편 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이것은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재산항목별 자산조사,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개편을 통해 보육료 지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개편 전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신고자료를 반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편 후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조회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한 성과임
-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전체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 수준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기구의 소득 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119천원에서 1,642천원으로 약 523천원(46.7%)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각각 1,173천원(53.1%), 1,358천원(41.8%) 높아졌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303천원에서 개편 후 1,703천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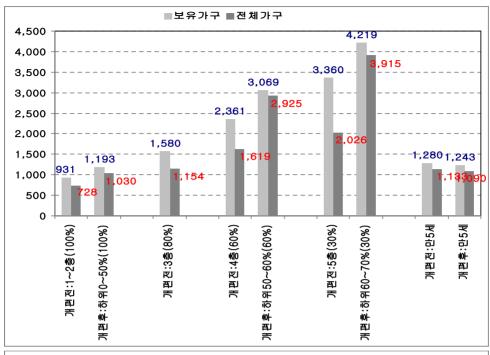
약 400천원(30.7%)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각각 738천원(27.9%), 717천원(18.4%)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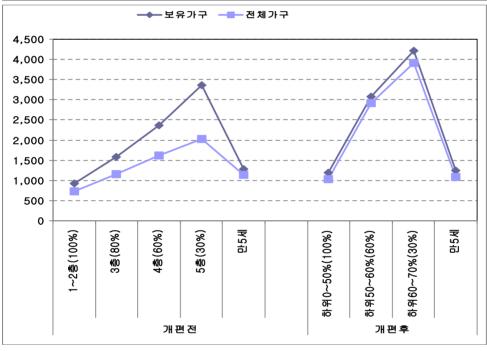
[그림 3-13]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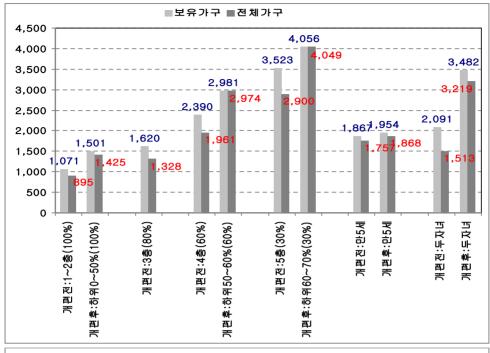
- 이처럼, 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율이 보유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앞서 언급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개선(특히,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과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보여주는 결과임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은 개편 전후 84.2%에서 97.4%까지 높아졌음
  - 이러한 결과는 막대그래프에서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을 제시한 그래프의 높이가 개편 전에는 보유가구가 월등히 높았으나 개편 후 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꺾은선 그래프의 경우에는 개편 전에는 두 그래프가 다소 떨어져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편 후에는 이러한 간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 □ 다음으로 가구규모에 따라 영유아 가구를 구분하여 동일한 보육료 지원수준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인 기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728천원에서 1,030천원으로 약 302천원(41.5%)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306천원(80.7%), 1,889천원(93.2%)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931천원에서 개편 후에 1,193천원으로 약 262천원(28.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708천원(30.0%), 859천원(25.6%) 높아졌음
  - (3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895천원에서 1,425천원으로 약 530천원(59.2%)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013천원(51.7%), 1,149천원(39.6%)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071천원에서 개편 후에 1,501천원으로 약 430천원(40.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591천원(24.7%), 533천원(15.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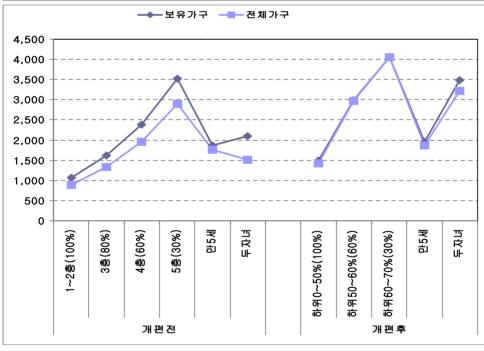
[그림 3-14]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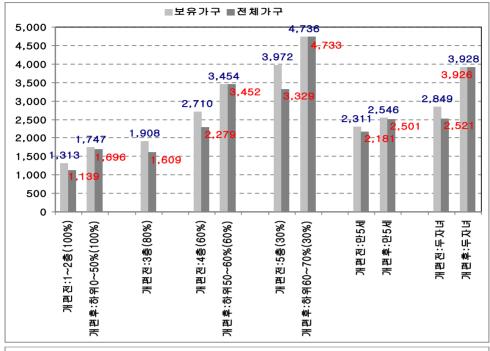
[그림 3-15]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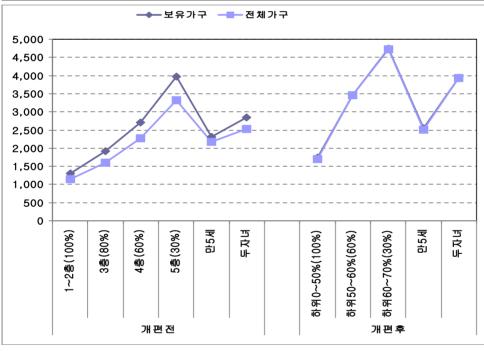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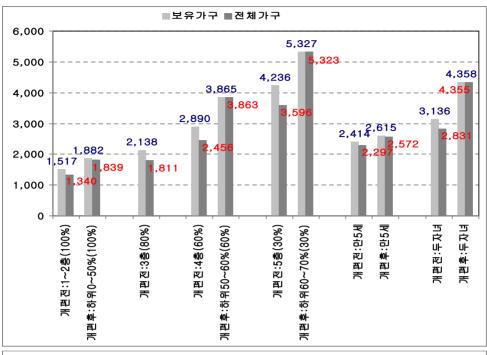
- (4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139천원에서 1,696천원으로 약 557천원(48.9%)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173천원(51.5%), 1,404천원(42.2%)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313천원에서 개편 후에 1,747천원으로 약 434천원(33.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744천원(27.5%), 764천원(19.2%) 증가함
- (5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340천원에서 1,839천원으로 약 499천원(37.2%)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407천원(57.3%), 1,727천원(48.0%)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517천원에서 개편 후에 1,882천원으로 약 365천원(24.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975천원(33.7%), 1,091천원(25.8%) 증가함
- (6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564천원에서 1,940천원으로 약 376천원(24.0%)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486천원(53.1%), 1,711천원(41.3%)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767천원에서 개편 후에 1,984천원으로 약 217천원(12.3%)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1,036천원(31.9%), 1,119천원(23.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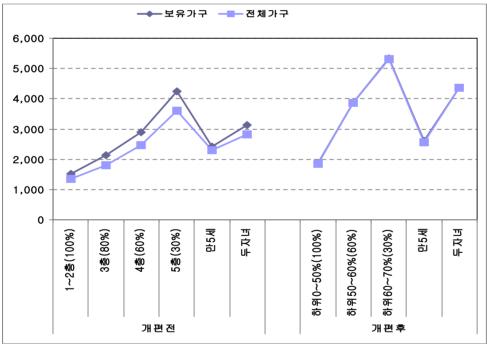
[그림 3-16]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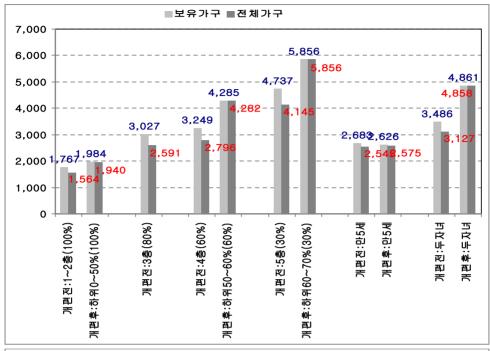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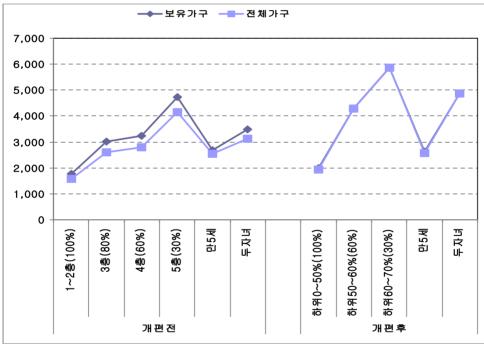
[그림 3-17]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5인 가구





[그림 3-18]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 : 6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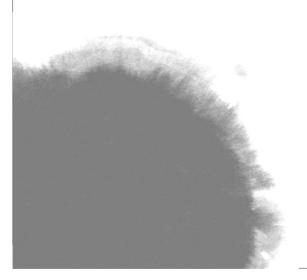






04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 제4장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변동 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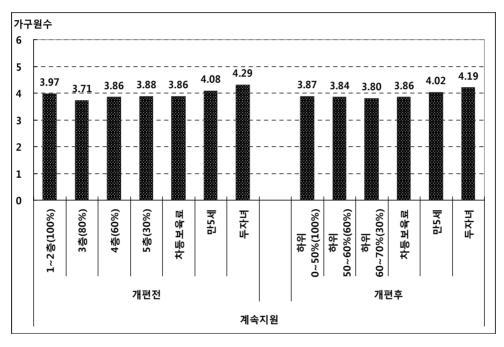
- □ 제4장에서는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 변동 유형별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분석함
  -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변동 유형을 '계속 수급기구(제1절) / 신규 신청 및 수급가구(제2절) / 수급 중단가구(제3절)'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가구 및 영유아 분포,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의 변화를 분석함

#### 제1절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 □ 여기서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계속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계속 수급가구(약 34만4천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5월과 8월을 기준시점으로 가구 및 영유아의 분포, 소득인정액 수준의 변화 등을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함
  - 1.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평균 기구원수 변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의 주요내용
     으로 자산조사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보장단위와 관련하여 '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전체'에서 '영유아 및 부모'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 이러한 보장단위 개편은 향후 보육료지원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가구원수 조정에 따른 수급탈락 등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가구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예조치 적용 등으로 인해, 차등보육료 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평균 가구원수는 3.86명으로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전액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3.97명에서 3.87명으로 약 0.1명 감소하였으며,
     60%와 30% 부분지원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개편 전후 각각 0.02명과
     0.08명 감소하는데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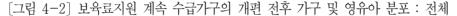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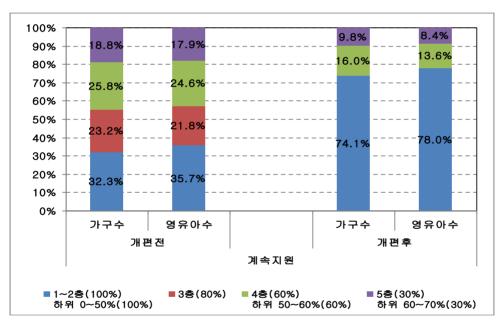


-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
  -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전후 나타난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의 특징은,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전액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해 차등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가운데 전액지원을 받는 가구 및 영유아의 비중이 개편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약 34만 4천 가구, 영유아 40만 8천명)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 및 영유아의 비중은 개편 전 32.3%와 35.7%에 불과했으나, 개편 후에는 74.1%와 78.0%로 각각 2.3배와 2.2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전액지원 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편 후 부분지원 대상 (60% 및 30%)의 비중은 영유아 가구를 기준으로 16.8%와 9.8%에 이름
-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의 변화는, 개편 전후 개별 영유아 가구의 다양한 지원수준 변동 유형으로부터 기인된 결과임
  - 제5장에서는 여기서 분석한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증가/유지/감소)에 따라 재구성한 후, 이를 다시 12가지 세부 변동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소득인정액 분포 변화 및 지원수준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선정기준 확대 개편의 효과를 모의 분석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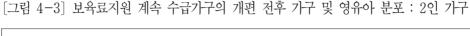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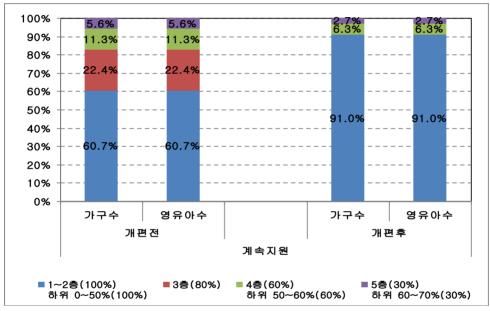


-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를 가구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별 영유아 가구 및 영유아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부모 가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3인 기구의 선정기준이 적용되는 2인

기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전액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개편 전 약 60.7%에서 개편 후에는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기운데 약 91%가 전액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육료의 60%와 30%를 지원 받는 부분지원 수급 기구의 비중은 각각 6.3%와 2.7%로 감소하였음

• 개편 전에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2인 가구 중 80%를 부분적으로 지원 받은 가구(22.4%)는 전액지원 다음으로 높았으나,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대부분 전액지원 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이전에 전액지원 가구 및 영유아 비중이 각각 23.9%
   와 24.6%로 가장 낮게 나타난 3인 가구의 경우, 개편 전 3층(80%) 및 4층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이 각각 29.1%와 2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으로 인해 3인가구의 경우에도 전액지원 비중이 23.9%에서 71.6%로 크게 약 3배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기준으로도 개편 전 24.6%에서 72.0%로 큰 폭으로 증가함

100% 11.5% 11.3% 19.5% 19.3% 90% 80% 16.9% 16.7% 70% 27.3% 27.5% 60% 50% 40% 28.8% 29.1% 72.0% 1.6% 30% 20% 24.6% 23.9% 10% 0% 가구수 영유아수 가구수 영유아수 개편전 개편후 계속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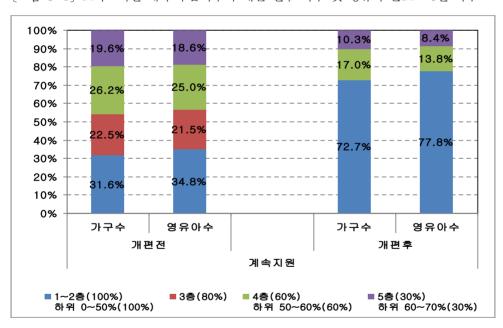
[그림 4-4]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그림 4-5]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 3층(80%)

■ 4층(60%) 하위 50~60%(60%) ■ 5층(30%) 하위 60~70%(30%)

■ 1~2층(100%) 하위 0~5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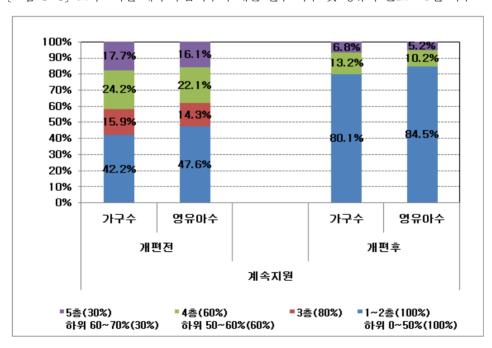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 중에서 절대적인 규모가 가장 큰 4인 가구 역시,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은 개편 전후 31.6%에서 72.7%로 약 2.3배 정도 증가

하였으며, 영유아 기준으로도 전액지원을 받는 대상은 개편 전후 34.8%에서 77.8%로 약 2.24배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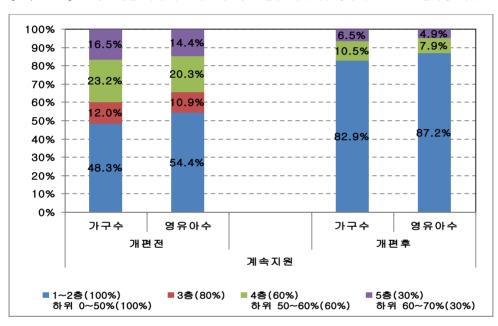
- 4인 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31.6%를 차지한 전액지원 가구 다음으로 60%의 부분지원을 받는 가구(4층) 비중이 26.2%로 높았으나 제도의 확대 개편 이후에는 17.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30%의 부분지원을 받았던 5층은 개편 전후 19.6%에서 10.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5인 가구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2~4인 가구의 변화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액지원 기구의 비중이 개편 전 42.2%에서 개편 후에는 80.1%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영유아 기준으로는 47.6%에서 84.5%로 증가함
  -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개편 전에 60%의 부분지원을 받는 가구(4층)의 비중이 24.2%(영유아 기준 22.1%)로 전액지원 다음으로 높았으며, 30% 지원을 받았던 5층의 비중도 17.7%(영유아 기준 16.1%)에 이르렀음
  - 그러나, 개편 전후 보육료의 60%와 30%를 부분지원 받는 가구(영유아) 비중은 약 10%p 이상 감소하여 13.2%(10.2%)와 6.8%(5.2%)를 차지함

[그림 4-6]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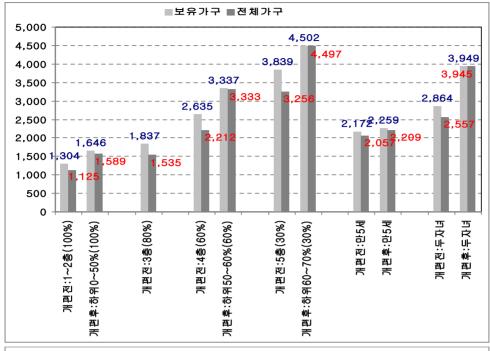
- 6인 이상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남
  -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은 개편 전 48.3%에서 개편 후 82.9%로 약 1.72배 증가하였으며, 영유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개편 전후 54.4%에서 87.2%로 약 1.6배 확대됨
  - 개편 전후 30% 또는 60%의 부분지원을 받는 기구 및 영유아의 비중은 각각 10%p 이상 감소하여, 30%의 경우 16.5%에서 6.5%(영유아 기준 14.4%에서 4.9%)로, 60%의 경우 23.2%에서 10.5%(영유아 기준 20.3% 에서 7.9%)로 각각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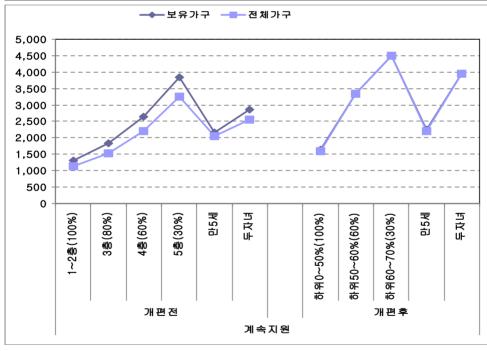
[그림 4-7]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6인이상 가구



- 2.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분석
-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기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전후의 소득 인정액 평균의 변화 경향을 소득인정액 계층(보육료 지원수준)에 따라 비교하면, 앞서 제3장 2절에서 개편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수급기구의 소득인정액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첫째,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기구 중 전액지원 대상(개편 전 1~2층, 개편 후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및 부분지원 대상(개편 전 3~5층, 개편 후하위 50~70%) 등 동일한 보육료 지원수준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별로 개편 전후소득인정액 평균을 비교해보면, 전체가구 또는 소득인정액 보유가구 기준으로 각각 개편 전에 비해 큰 폭으로(전액지원 대상의 경우 약 41.2%, 약 26.2%)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것은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선정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둘째, 개편 전에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소득인정액 0인 가구 제외)' 사이에크게 나타났던 소득인정액 평균의 차이가 개편 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전액지원 대상 중 소득인정액 보유기구 평균 대비 전체기구의 평균 비율은 개편 전에 86.3%에서 자산조사 등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후에는 96.5%로 약 10%p 상승하여 그 차이가 축소되었음
    -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 개편을 통해 보육료 지원체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높인 결과이며, 특히, 개편 전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신고자료를 반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편 후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한 조회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을 높여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한 성과임
-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별로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8]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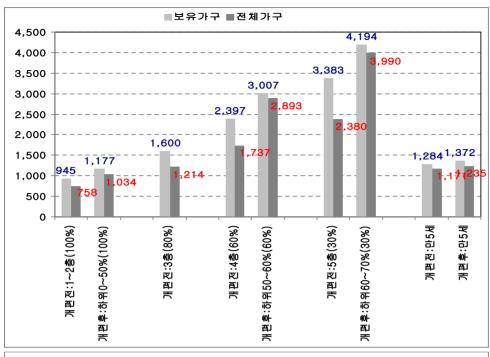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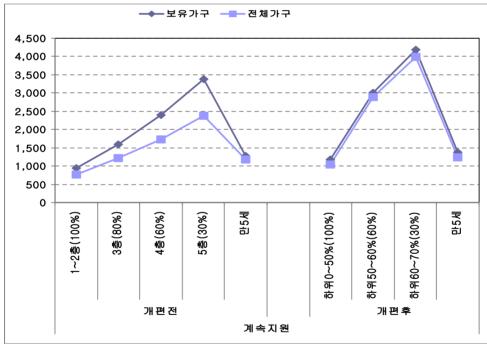


- 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 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125천원에서 1,589천원으로 약 464천원(41.2%)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각각 1,121천원(50.7%), 1,241천원(38.1%)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304천원에서 개편 후 1,646천원으로 약 342천원(26.2%) 증가하였음
  - 6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도 2,635천원에서 3,337천원으로 702천원(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30% 부분지원 기구 역시 3,839천원에서 4,502천원으로 663천원(17.3%) 상승하였음
-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율은 보유가구보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특히 금융재산 조회 실시에 따른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과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된 결과임
  - 전액지원 대상 기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은 개편 전 86.3%에서 개편 후 96.5%까지 높아졌으며, 전액지원 대상 중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소득인 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비율은 86.3%에서 96.5%로 약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 수준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에서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의 높이 차이가 개편 전에는 크게 나타났으나 개편 후에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꺾은선 그래프의 경우에도, 개편 전에는 두 그래프가 다소 떨어져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편 후에는 이러한 간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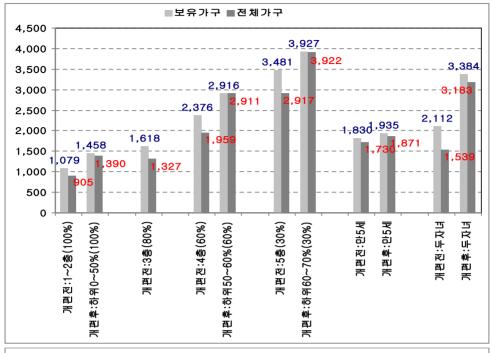
- □ 다음으로 가구규모에 따라 영유아 가구를 구분하여 동일한 보육료 지원수준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가구에서 평균 소득인정액 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보편적 지원제도를 지항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인 기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758천원에서 1,034천원으로 약 276천원(36.4%)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156천원(66.6%), 1,610천원(67.6%)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945천원에서 개편 후에 1,177천원으로 약 232천원(24.6%)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610천원(25.4%), 811천원(24.0%)씩 높아졌음
  - (3인 가구) 전체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905천원에서 1,390천원으로 약 485천원(53.6%)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952천원(48.6%), 1,005천원(34.5%) 상승함
    - 보유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079천원에서 개편 후에 1,458천원으로 약 379천원(35.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540천원(22.7%), 446천원(12.8%) 증가함
  - (4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140천원에서 1,658천원으로 약 518천원(45.4%)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142천원(50.1%), 1,326천원(39.7%) 상승함
    -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전액지원 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311천원에서 개편 후에 1,705천원으로 약 394천원(30.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726천원(26.9%), 750천원(19.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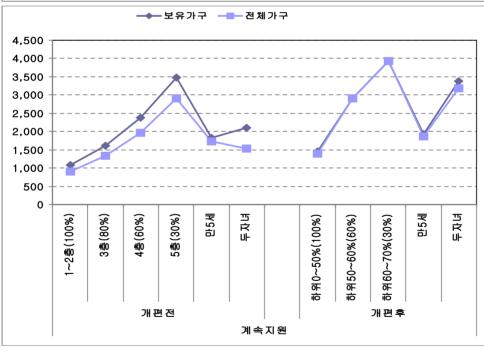
[그림 4-9]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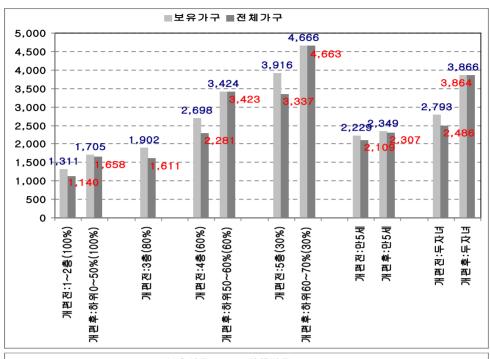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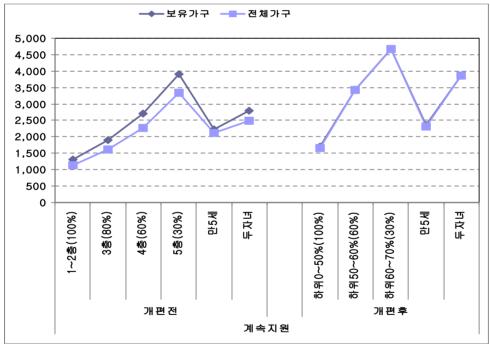
[그림 4-10]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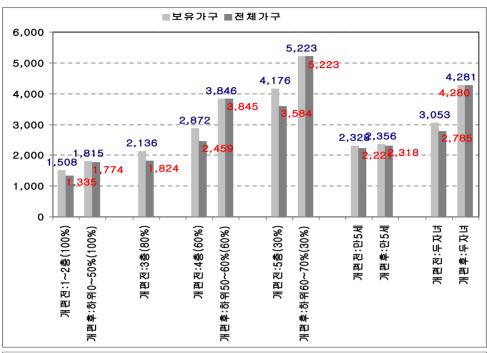
[그림 4-11]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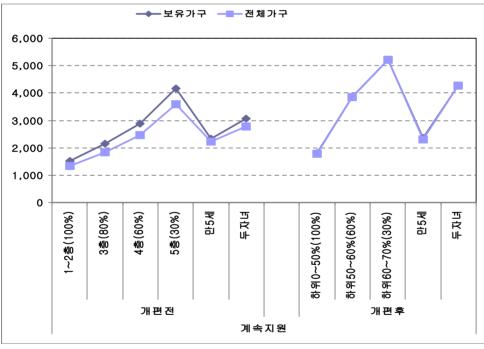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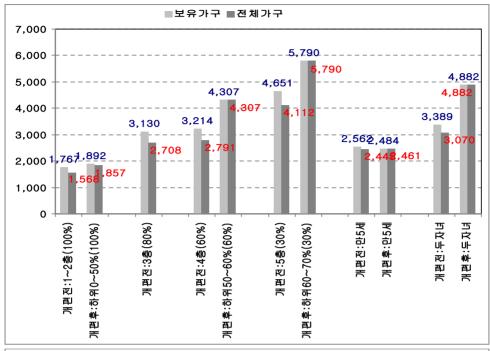
- (5인 기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335천원에서 1,774천원으로 약 439천원(32.9%)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386천원(56.4%), 1,639천원(45.7%)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508천원에서 개편 후에 1,815천원으로 약 307천원(20.4%)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974천원(33.9%)과 1,047천원(25.1%)씩 증가함
- (6인 기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568천원에서 1,857천원으로 약 289천원(18.4%)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516천원(54.3%), 1,678천원(40.8%) 상승함
  - 보유가구 대상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767천원에서 개편 후에 1,892천원으로 약 125천원(7.1%) 증가했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1,093천원(34.0%), 1,139천원(24.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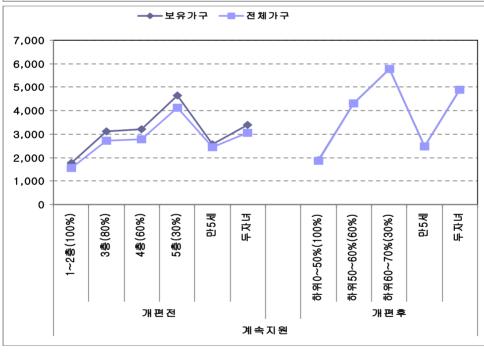
[그림 4-12]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변화 : 5인 가구





[그림 4-13]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 6인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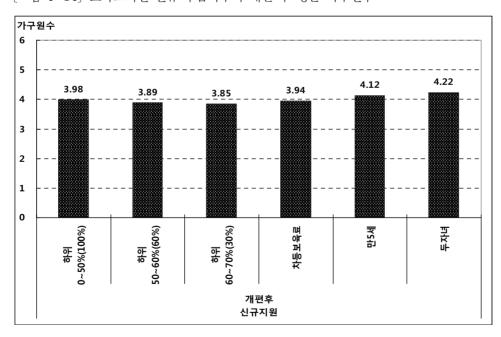




#### 제2절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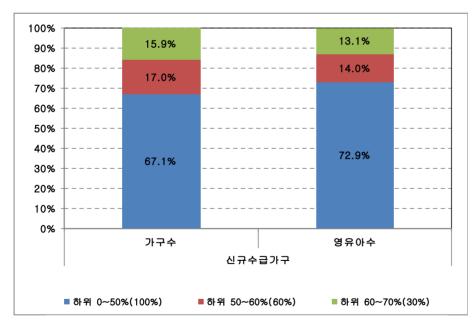
- □ 여기서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후 신규 신청 및 선정을 통해서 새롭게 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가구(약 22만3천 가구)'에 대하여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가구 및 영유아의 소득인정액 계층별(보육료 지원수준) 분포,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 등을 분석함
  - 1.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기구의 개편 후 평균 기구원수
  - 차등보육료 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94명으로 앞서 살펴본 계속 수급가구의 평균 3.86명보다 약 0.08명 높게 나타났음
    - 전액지원 대상의 경우 3.9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와 30% 부분 지원을 받는 소득인정액 하위 50~60% 및 60~70%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89명과 3.85명으로 나타남

[그림 4-14]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평균 가구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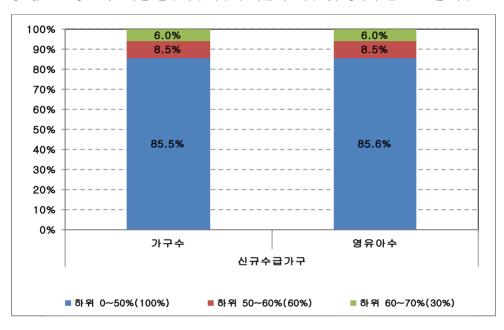
-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앞서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의 핵심은, 전액지원을 받는 가구 및 영유아 비중이 개편 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확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이후 신규 신청 및 자산조사를 거쳐 보육료 신규 수급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영향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및 영유아의 절대적 규모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이러한 신규 수급기구의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액 지원 가구의 비중은 67.1%로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후 전액지원 대상 가구비율 74.1%보다 약 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신규 수급가구 중 60% 부분지원 대상 가구의 비율은 17.0%로 계속 수급 가구의 16.8%와 거의 유사한 수준인 반면, 30% 부분지원 가구의 비율은 15.9%로 계속 수급가구의 9.8%에 비해 약 6.1%p 높게 나타났음
    - 영유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규 수급기구 중 전액지원 대상은 72.9%로 나타났으나 계속 수급가구(78.0%)에 비해 역시 약 5.1%p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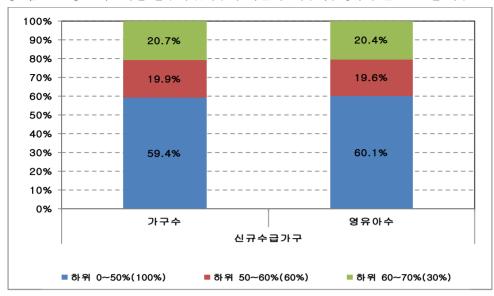


- □ 가구규모에 따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이후 보육료 지원을 신규 수급하게 된 영유아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속 수급가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개편 이후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이 약 91%로 가장 높았던 2인 가구의 경우, 신규 수급가구에서도 전액지원 비중이 8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 및 영유아의 비중은 각각 8.5%와 6.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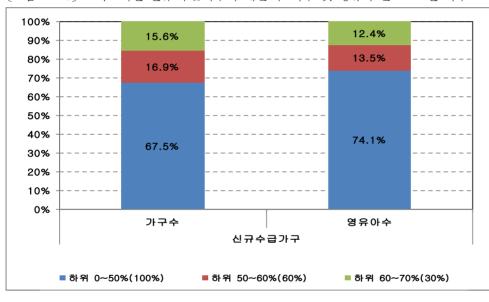


- 2인 가구와 달리 3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액지원 대상의 비중이 약 59.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계속 수급가구 중 3인 가구의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이후 전액지원 대상의 비율 71.6%에 비해 약 12.2%p 낮은 수준임
  - 60%와 30%의 부분지원을 받는 기구의 비중은 각각 약 20% 내외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 중에서도 절대적 규모가 가장 큰 4인 기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은 67.5%(영유아 74.1%)로 나타났으며, 앞서 살펴본
   계속 수급가구(72.7%, 영유아 77.8%)에 비해 약 5%p 낮은 수준임



[그림 4-17]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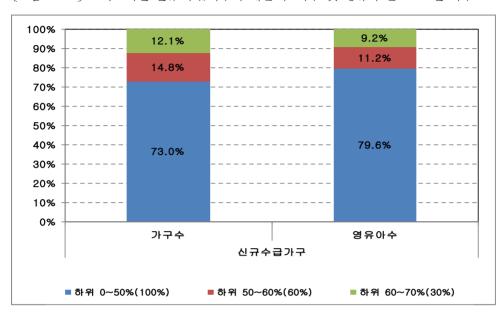
[그림 4-18]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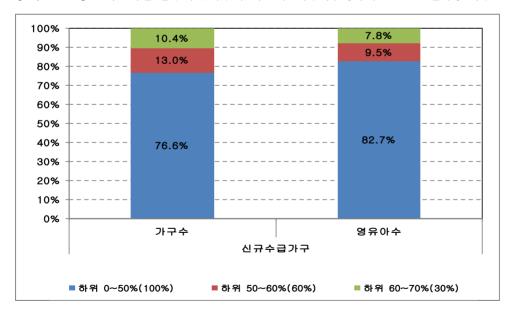
- 신규 수급가구 중 5인 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는 약 73%(영유아 기준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후 전액지원 대상 비중 80.1%(영유아 기준 84.5%)에 비해 약 7%p(영유아 약 5%p) 낮은 결과임
  - 이러한 경향은 가구규모별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6인 이상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후 신규 수급가구 중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은 76.6%(영유아 82.7%)로, 부분지원 대상은 각각 13.0%(60%
 지원)와 10.4%(30% 지원)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19]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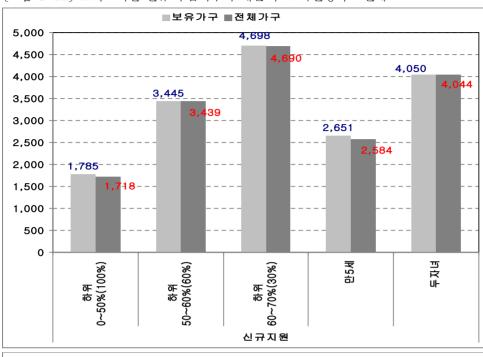
[그림 4-20]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6인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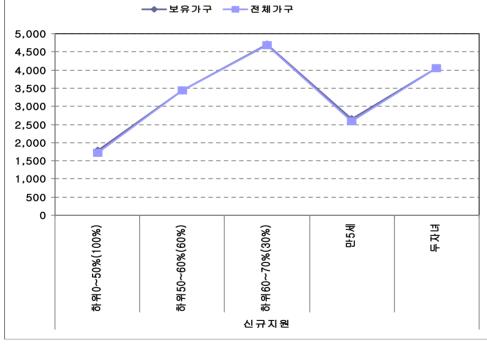


- 2.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분석
- □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이후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층(보육료 지원 수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을 산출하여 앞서 제시한 계속 수급 가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모두 포함한 신규 수급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718천원으로 계속 수 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평균(1,589천원)보다 129천원 높게 나타남
    - 60% 및 30%의 부분지원을 받는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각각 3,439천원과 4,690천원으로, 계속 수급가구보다 106천원과 193천원 정도 높은 결과임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785천원이며, 60%와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445천원, 4,698천원으로 앞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이처럼, 개편 이후 보육료 신규 수급기구를 대상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액 평균에 있어서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특히, 금융재산 조회 실시의 영향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기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이 높아지고 자산조사의 정확 성이 제고되었기 때문임
    - 차등보육료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은 97.4%로, 수급 중단 가구(3절)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이전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80.9%와 대비되는 결과임
    - 한편, 보유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비율을 비교할 경우 신규 수급가구(전액지원)의 경우 96.2%인 반면 개편 전 수급 중단가구의 경우 83.6%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결과는 막대그래프에서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을 제시한 그래프의 높이가 거의 유사한 점, 꺾은선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의

### 간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겹쳐 보이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21]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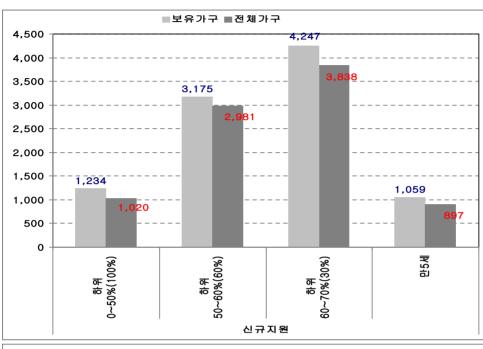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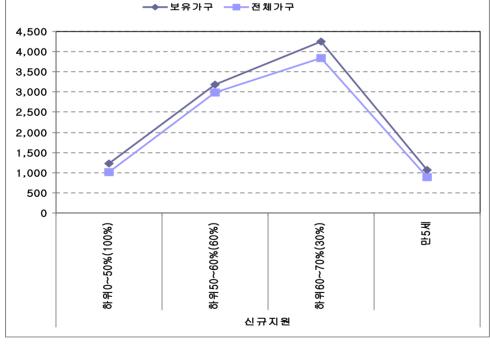


- □ 신규 수급가구의 가구규모별로 보육료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층별로 평균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020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소득인정액 평균은 2,981천원과 3,838천원을 상회함
    -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234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175천원과 4,247천원임
  - (3인 기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492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3,060천원과 4,162천원임
    -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587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070천원과 4,172천원으로 전체가구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
  - (4인 기구) 전체기구의 경우, 전액지원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744천원이며, 하위 50~60%(60% 지원)과 60~70%(30% 지원)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487천원과 4,786천원임
    - 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제외하고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할 경우, 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800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값은 3,489천원과 4,789천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 (5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926천원 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는 각각 3,883천원과 5,390천원임
    - 보유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973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887천원과 5,398천원 으로 전체가구와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 (6인 기구) 전체기구의 경우, 전액지원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2,053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기구의 경우 각각 4,256천원과 5,908천원임
    -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 50% 이하 전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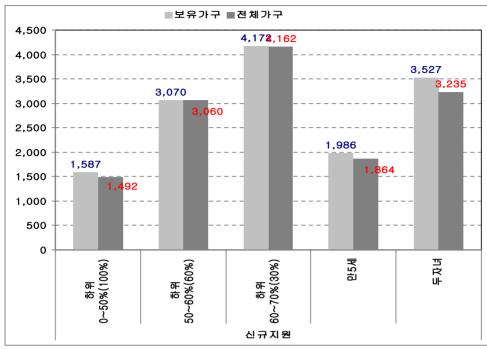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2,111천원이며, 60% 및 30% 부분지원 기구의 경우 각각 4,263천원과 5,908천원으로 전체기구와의 차이가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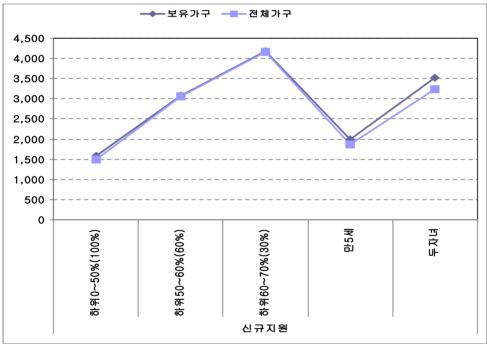
[그림 4-22]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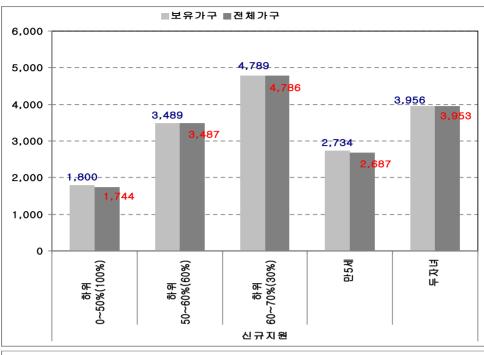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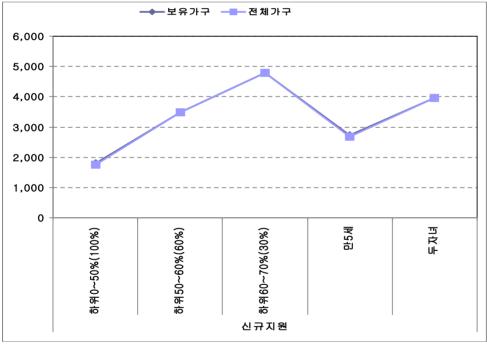
[그림 4-23]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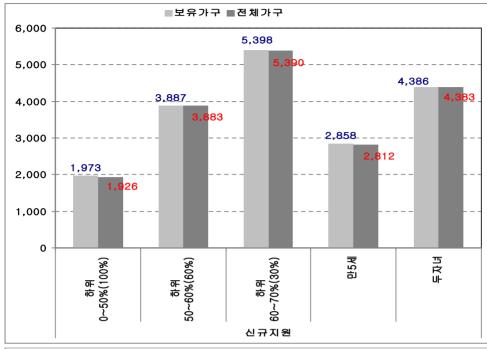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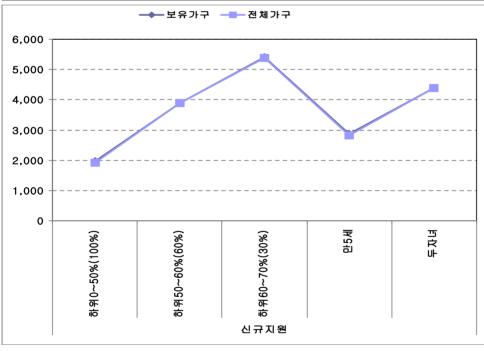
[그림 4-24]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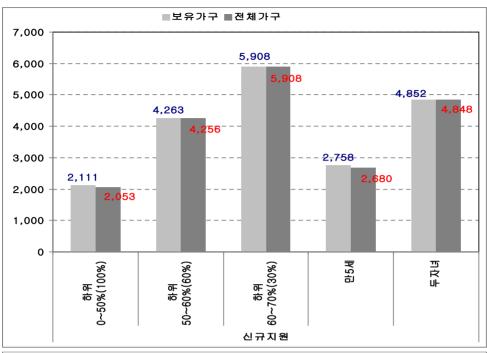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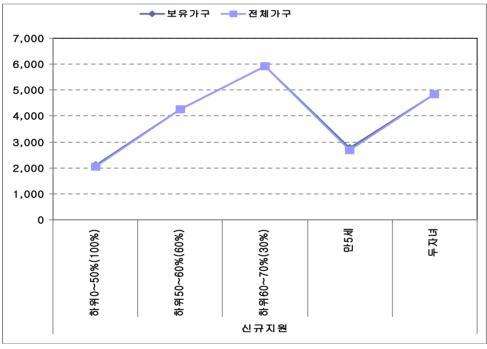
[그림 4-25]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5인 가구





[그림 4-26] 보육료지원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6인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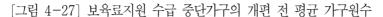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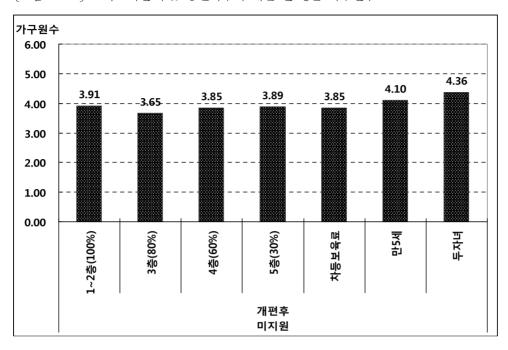
- □ 이상에서 살펴본 신규 수급기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의 특징은,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 등 보육료 지원수준별로 계속 수급기구 및 수급 중단기구에 비해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이 높으며,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 제외)' 간의 소득인정액 평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임
  - 이것은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계층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보편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또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의 제외, 금융
     재산 조회 실시를 중심으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의
     개편을 통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정확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제3절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기구의 소득인정액 분석

- □ 여기서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선정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편 전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나 개편 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수급 중단가구'(차등보육료 지원대상 기준 약 5만8천 가구)'에 대해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수급 중단 이전의 가구 및 영유아의 소득인정액 계층별 (보육료 지원수준)분포,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 등을 분석함
  - 또한, 수급 중단가구의 수급자격 중단 시점 및 사유 관련 기초통계를 제시함
  - 1.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평균 가구원수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차등보육료 수급이 중단된 가구의 평균 기구원수는 3.85명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수급가구(3.94명)보다 낮지만 계속 수급가구의 평균 3.86명과 유사한 수준임
    - 개편 전 차등보육료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전액지원 대상인 1~2층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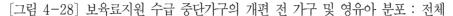
3.9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80%의 지원을 받았던 3층은 3.65명으로 가장 가구원수가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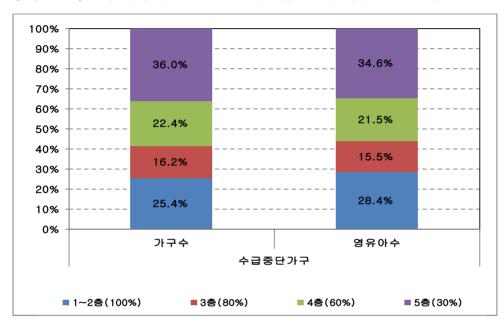




- □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유형별 영유아 가구 및 영유아수 분포
  - 앞서 살펴본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액지원을 받는 가구 및 영유아비중이 개편 전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어 74.1%에 이르렀음
  - 이와 같은 계속 수급기구의 전액지원 비중의 확대와 함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이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신규 수급기구의 경우 에도 전액지원 기구의 비중은 67.1%로 분석된 바 있음
  - 반면에,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급이 중단된 영유아 기구의 중단 직전 보육료 지원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를 지원 받은 5층에서 탈락한 경우가 3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2층에 해당 하는 전액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가 25.4%로 약 1/4을 차지하고 있음

- 60%의 지원을 받았던 4층에서 수급이 중단된 기구와 3층(지원수준 80%) 에서 탈락한 가구의 비율은 각각 22.4%와 17.0%로 나타났음
- 이러한 수급 중단가구의 분포 및 비중에 따른 순위는 영유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5층 > 1~2층 > 4층 > 3층)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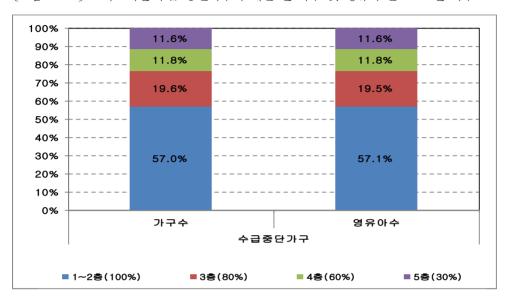


- □ 가구규모별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급이 중단된 가구 및 영유아의 기존 보육료 지원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앞서 계속 수급가구 및 신규 수급가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2인 가구의 경우, 수급 중단가구 중에도 전액지원 가구의 비중이 약 57.0%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층(19.6%), 4층 (11.8%), 5층(11.6%) 순서로 나타났음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에도 이처럼 2인 가구의 경우 대체로 지원수준이 높았던 이유는, 한부모 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인 가구에 대하여 3인 가구와 동일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2인 가구와는 반대로, 3인 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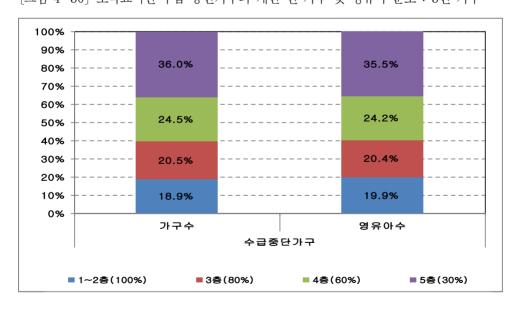
기구의 비율이 18.9%(영유아 기준 19.9%)로 가장 낮았으며, 30%의 지원을 받았던 5층이 36.0%(영유아 기준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60%와 30%를 지원 받았던 4층(24.5%), 3층(20.5%) 순으로 분포 하였으며, 영유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

[그림 4-29]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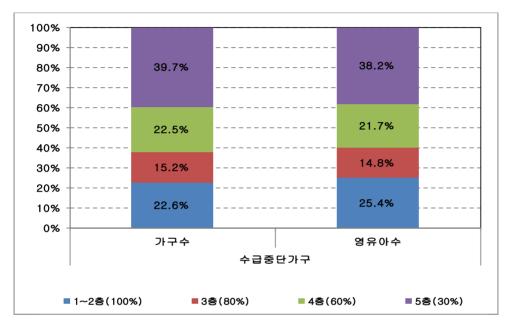


[그림 4-30]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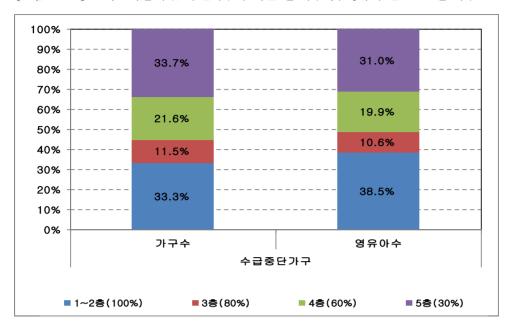
- 다음으로,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4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서 3인 기구와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액지원에 해당하는 1~2층 가구 비중은 22.6%%(영유아 기준 25.4%)로 39.7%(영유아 기준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5층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80%를 지원 받았던 3층의 경우 15.2%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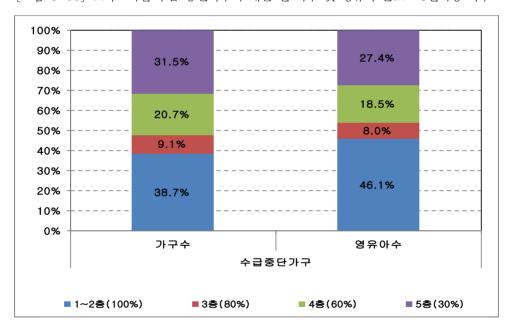


- 수급 중단가구 중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경우에는, 3인 또는 4인 가구와 달리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액지원 가구인 1~2층의 비율이 각각 33.3%(영유아 기준 38.5%)와 38.7%(영유아 기준 4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액지원 기구에 이어서 30%의 보육료 지원을 받았던 5층의 비율이 각각 33.7%(영유아 기준 31.0%)와 31.5%(영유아 기준 27.4%)로 높았음

[그림 4-32]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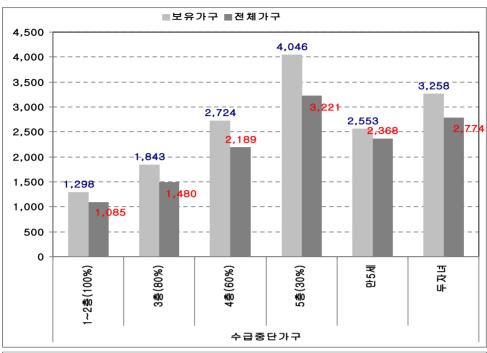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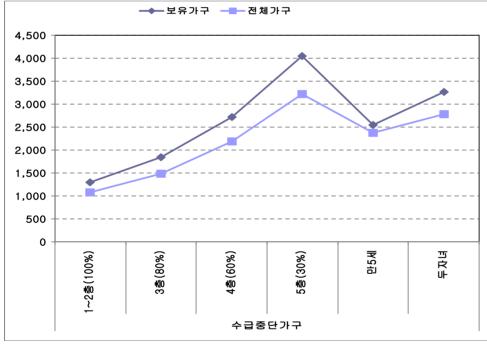
[그림 4-33]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6인이상 가구



- 2.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분석
- □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 과정에서 수급이 중단된 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별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을 산출하여 앞서 분석한 계속 수급가구 및 신규 수급가구와 비교함
  - 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모두 포함한 수급 중단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수급 중단 이전(2009년 5월 기준) 시점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살펴보면, 전액 지원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1,085천원으로, 개편 이후 신규 수급가구 (1,718천원)의 63.2%, 계속 수급가구(1,589천원)의 68.3%에 불과했음
    - 부분지원을 받는 수급 중단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3층(80%)
       1,480천원, 4층(60%) 2,189천원, 5층(30%) 3,221천원으로 낮게 나타났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기구만을 대상으로 수급 중단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액지원 가구(1~2층)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298천원이었으며 3~5층에 해당하는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각각 1,843천원, 2,724천원, 4,046 천원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전체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 수준보다 약 20~25% 높게 나타났음
    - 이처럼, 수급 중단기구의 경우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이가 크게 존재하였고, 보유가구 소득인정액 대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의 비율이 약 80% 내외에 불과한 것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이전의 자산조사 방식이 사적이전소득이나 추정소득과 같이 다양한 민원을 유발하는 항목을 포함한 반면, 금융재산과 같이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가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필수적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이것은 보육료 계속 수급가구 및 신규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개편 후 산출된 소득인정액 평균값에 있어,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으로 시작된 금융재산 조회 실시의 영향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이 높아지고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전체가구와 보유가구간에 평균 소득인정액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대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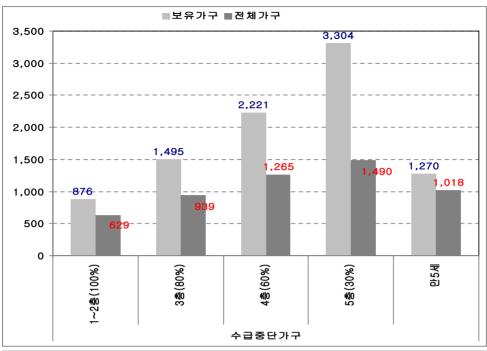
[그림 4-34]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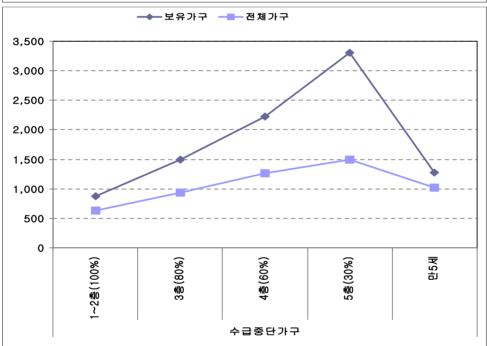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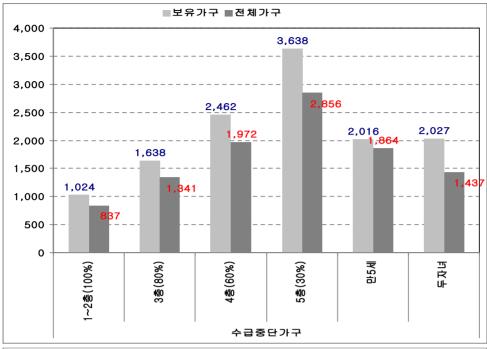
- 이러한 결과는 계속 수급가구(1절), 신규 수급가구(2절)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전체기구와 보유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을 나타낸 막대그래프의 높이가 거의 유사하며, 꺾은선 그래프에서 두 그래프 간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급 중단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그래프에서 전체기구와 보유기구의 막대그래프 높이가 매우 상이하며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두 그래프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수급 중단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보육료 지원수준(소득인정액 계층)별로 평균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인 가구) 전체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629천원이었으며, 부분지원 가구(3~5층)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각각 939천원,
     1,265천원, 1,490천원으로 분석됨
    -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87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지원 가구(3~5층)의 평균은 각각 1,495천원, 2,221천원, 3,304천원으로 전체가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음
  - (3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1~2층)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837천원이었으며, 부분지원 가구(3~5층)의 경우 각각 1,341천원, 1,972천원, 2,856천원으로 나타남
    - 보유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024천원이었으며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3층(80%) 1,638천원, 4층(60%) 2,462천원, 5층 (30%) 3,638천원으로 전체가구와 큰 차이를 나타냄
  - (4인 가구) 전체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1~2층)의 소득인정액 평균값은
     1,130천원이며, 부분지원 가구(3~5층)의 소득인정액은 각각 1,587천원, 2,264 천원, 3,309천원으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제외한 후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평균을 산출한 결과, 개편 전 보육료지원 계층 1~2층(100%)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323천원이었으며 부분지원 대상인 3층(80%)은 1,957천원, 4층(60%)은 2,791천원, 5층(30%)은 4,136천원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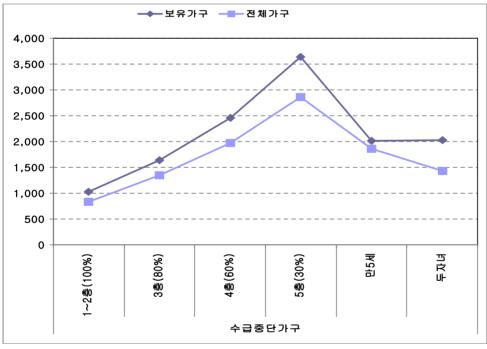
[그림 4-35]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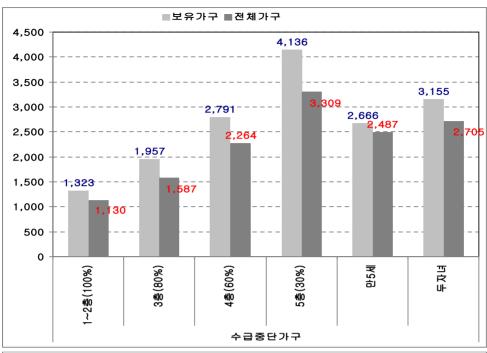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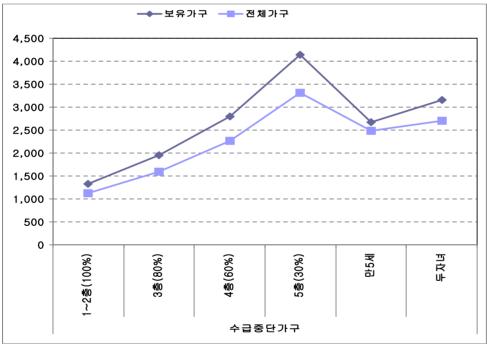
[그림 4-36]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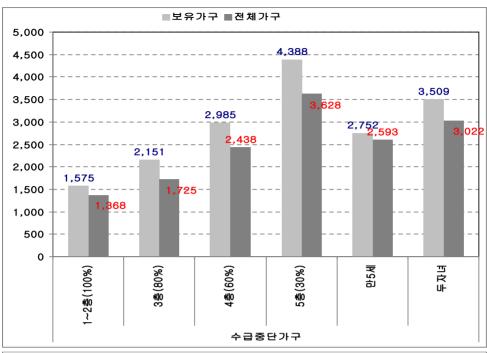
[그림 4-37]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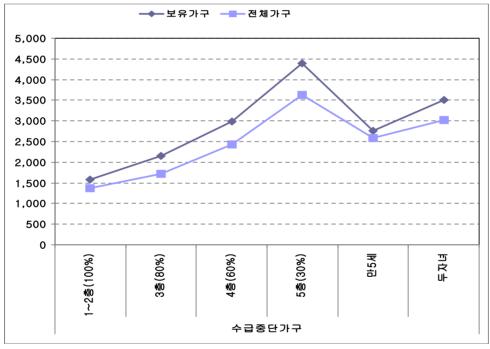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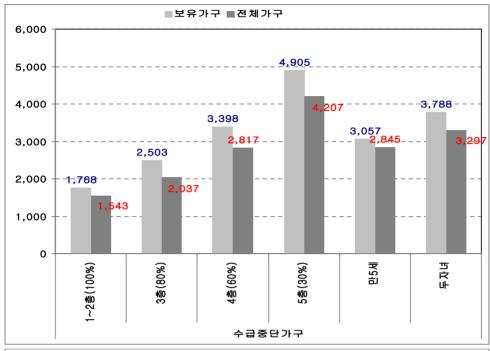
- (5인 가구) 전체가구 기준으로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368천원
   이었으며, 부분지원 가구는 각각 3층 1,725천원, 4층 2,438천원, 5층 3,628
   천원으로 분석됨
  - 보유가구의 수급 중단 이전 소득인정액 수준은, 1~2층(100%) 1,575천원, 3층(80%) 2,151천원, 4층(60%) 2,985천원, 5층(30%) 4,388천원으로 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보다 약 15~25% 높은 수준이었음
- (6인 가구) 전체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543천원이었으며, 부분지원 가구의 경우 3층(80%) 2,037천원, 4층(60%) 2,817천원, 5층(30%) 4,207천원으로 나타남
  -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액지원 대상인 1~2층 (100%)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1,768천원이었으며, 부분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3층(80%) 2,503천원, 4층(60%) 3,398천원, 5층(30%) 4,905천원으로 전체가구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 □ 이상에서 살펴본 수급 중단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의 특징은, 전액지원 및 부분지원 등 보육료 지원수준별로 계속 수급가구와 신규 수급가구의 개편 후 소득인정액 수준에 비해 소득인정액 평균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 제외)'의 소득인정액 평균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임
  - 이것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확대 개편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로, 2009년 7월 개편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대상 및 수준이 상당 부분 확대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정책대상의 포괄성 및 보편성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의 제외, 금융재산 조회 실시를 중심으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자산조사 체계)의 개편이 없었다면, 2009년 개편 이전의 상황은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산출 등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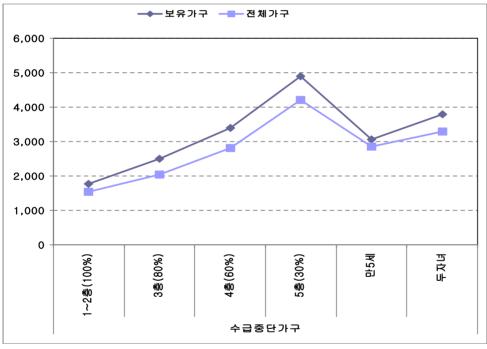
[그림 4-38]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5인 가구





[그림 4-39]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6인이상 가구





# <참고>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가구의 중단 시점 및 사유

- □ 제3절에서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수급 중단기구'을 대상으로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수급 중단 이전의 가구 및 영유아의 소득인정액 계층별(보육료 지원수준)분포, 소득인정액 평균 수준 등을 분석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DB 원자료인 기존 복지 DB의 경우, 급여지급 대상으로 책정된 가구 및 개인에 한해 신청 및 선정과정(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자산조사), 급여지급 결과가 구축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수급 중단가구의 경우에 본 연구의 분석 DB 기준시점인 2009년 5월과 8월 중에서 개편 이후인 8월 시점에서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음
  - 요컨대,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재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조사된 결과, 즉 수급 중단 당시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자산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수급 중단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이 불가능함
- □ 여기서는 이러한 분석 DB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급 중단가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된 수급 중단가구의 보육료지원 수급자격 중지 시점 및 사유와 관련된 정보2)를 제시함
  - 분석 DB 상 수급 중단가구는 2009년 5월 보육료 지원을 받았으나 8월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영유아 가구로 구성되었으므로, 대부분 집중 신청기간 및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6월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은 이후 수급이 중단되었음
  - 이에 따라, 수급 중단가구의 기본 정보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공된 원자료 상 중단 시점을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방안이 적용된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전체 수급 중단가구의 영유아 중

<sup>2)</sup> 복지DB 상 구축되어 있는 수급 중단가구 관련 정보는 시군구코드, 개인 및 세대 ID, 보장구분코드, 성별, 나이, 최초책정일자, 중지일자, 보장대상탈피사유코드, 책정요청여부, 중지요청여부, 중지화정여부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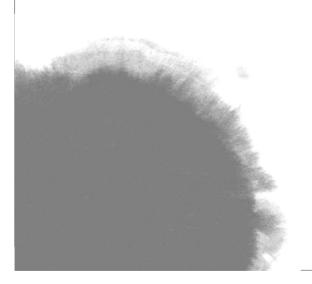
각각의 수급중단 시점과 관련된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음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과 상관없이 2009년 6월30일 이전에 전출 등 기타 사유로 수급이 중단된 사례 : 2.1%
- 집중신청기간 중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확대 개편된 선정기준 및 선정 방식 적용에 의해 보육료지원 수급 중단이 결정되어 6월까지 보육료지원이 이루어지고, 2009년 7월1일 직전인 6월30일 일괄적으로 정비되어 수급이 중단된 사례: 96.1%
- 7월 중 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수급 중단된 사례 : 0.4%
- 8월 중 전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수급 중단된 사례 : 1.4%
- 수급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 이루어진 재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복지 DB 상에는 2009년 6월30일 시점에
   '일괄 자료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음
  - 기타 수급 중단 사유로는 대부분 '전출' 또는 '세대주 변경처리', '기타'등 으로 분류되어 있음
  - 중단 사유의 구분 항목에 '취업'과 '자활'이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3건에 불과했음
- □ 이처럼, 복지 DB 상 수급 중단가구와 관련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중단된 가구의 개편 전 소득인정액 및 세부 구성항목별 수준과 재신청 및 자산조사 과정에서 산출된 소득인정액 수준 및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동시에 축적되어 있어야만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의 성과와 더불어 개편과정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영유아 가구의 탈락 사유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
  -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제도 개편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영유아 가구가 어떤 소득 및 재산항목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지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복지DB는 보육료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책정된 기구에 한해 선정과정에서 조사된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료가 구축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따라서,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선정방식 개편 등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 초과 로 보육료 지원에서 탈락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장에서 제시할 예정인 계속 수급가구의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및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음
  - 특히, 제5장 2절에서 보육료 지원수준 세부 변동유형 중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영유아 가구, 특히 선정기준 확대 및 자산조사 체계 개편에 불구하고 지원수준이 개편 전 100% 또는 80%, 60%에서 개편 후에는 가장 낮은 30% 지원(소득인정액 하위 60~70%) 계층으로 이동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수준 및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을 제시함
    - 이는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된 가구(보육료 지원수준 0%)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변화 양상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심층분석





# 제5장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심층분석

□ 제5장에서는 앞서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변동유형 중 '계속 수급가구(제4장 1절 분석대상 34만4천 가구 / 영유아 40만 8천명)³)'를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에 따라 3가지 유형(증가/유지/감소)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지원수준 변동에 따른 세부 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소득인정액 수준 및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지원수준 변동 요인 및 선정기준 확대 개편의 효과성 등을 모의 분석함

# 제1절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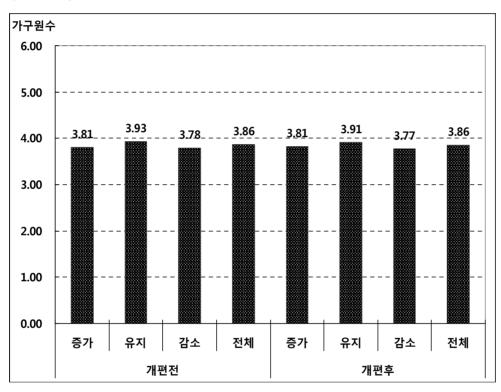
- □ 여기서는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가구 및 영유아 분포, 소득인정액수준 및 분포의 변화,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변화 경향을 심층 분석함
  - 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변화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자산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보장단위 개편방안('영유아 가구의 가구원 전체'에서 '영유아 및 부모'로 축소)이 포함 되었으나, 가구원수 조정에 따른 수급탈락 등 기존에 보육료 지원을 받았던

<sup>3)</sup>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로 전체 가구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개편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기구원수 변동 및 다자녀 보육시설 이용으로 인하여 분석 기준시점 간에 영유이수 변동이 발생하며, 개편 전(5월 기준) 분석대상 영유아 수는 약 40만 6천명에서 개편 후(8월 기준) 40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개편 후 가구 및 영유아수 기준으로 제시함

영유아 가구가 소득인정액의 변동 없이 가구원수 축소의 영향만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조치 등으로 인해,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86명으로 변화가 없었음

•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균 기구원수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 지원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가구의 경우 3.81명으로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3.78명에서 3.77명으로 0.01명 감소하는데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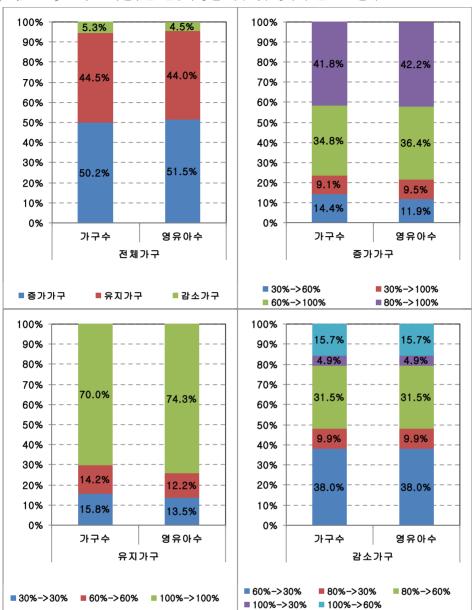
[그림 5-1]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평균 가구원수 변화



-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앞서 제4장1절의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이 가져온 중요한 결과는,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합리화, 전액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 기운데 전액지원을 받는 가구 및 영유아의 비중이 개편 이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약 34만 4천 가구, 영유아 40만 8천명)의 경우, 전액지원을 받는 가구의 비중은 개편 전에 32.3%(영유아 기준 35.7%)에 불과했으나, 개편 후에는 74.1%(영유아 기준 78.0%)로 약 2.3배(영유아 기준 약 2.2배)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의 변화는, 개편 전후 개별 영유아 가구의 다양한 지원수준 변동유형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로, 여기서는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제4장 1절과 동일한 분석대상으로 34만 4천 가구, 영유아 40만 8천명)를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증가/유지/감소)으로 재구성한 후, 이를 다시 보육료 지원비율에 따라 12가지 세부 변동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분포를 분석하였음
  - 2009년 7월 개편 이전 : 100%(1~2층) / 80%(3층) / 60%(4층) / 30%(5층)
  - 2009년 7월 개편 이후 : 100% (하위 0~50%) / 60% (하위 50~60%) / 30% (하위 60~70%)
- 먼저 전체 계속 수급기구를 대상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 개편에 의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비율은 50.2%(영유아 기준 51.5%)로 기존 보육료지원 수급기구 2가구 중 1기구는 정부지원 확대로 인해 보육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5.3%(영유아 기준 4.5%)에 불과 하였으며, 이처럼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개편 전후 실제로 소득인정액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이거나 선정방식 개편에 의해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실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및 반영 등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이 제고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보육료 지원계층 구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전후 기존의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는 전체의 약 44.5%(영유아 기준 44.0%)로 나타났음



[그림 5-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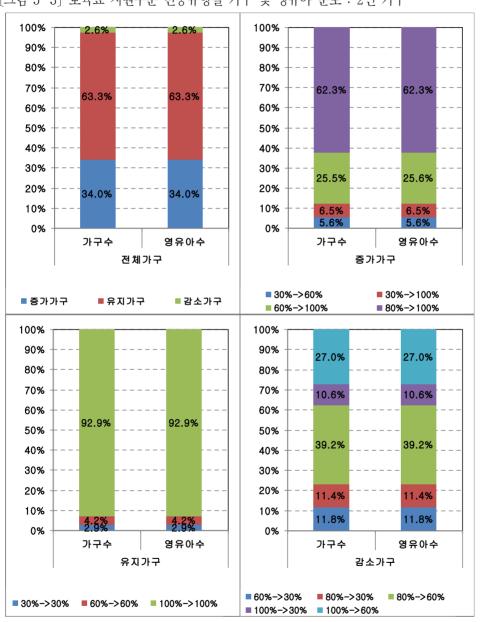
- 다음으로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지원비율 변화에 따른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 유형의 경우, '80% ➡ 100%'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 ➡ 100%', '30% ➡ 60%', '30% ➡ 100%' 순서였음

- 보육료 지원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가 41.8%(영유아 기준 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60%에서 100%로 확대된 경우가 34.8%(영유아 기준 3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지원 대상인 30%에서 60%로 증가한 가구는 14.4%(영유아 기준 11.9%)이었음
- 특히, 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30%에서 전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100%로 크게 상승하여 보육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가구 역시 9.1% (영유아 기준 9.5%)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유형 중에는 '100% ➡ 100%'로 전액
   지원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 ➡ 30%', '60% ➡ 60%' 순서로 나타남
  - 전액지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70%(영유아 기준 7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부분지원 대상인 30%를 유지한 가구가 15.8%(영유아 기준 13.5%), 60%를 유지한 가구가 14.2% (영유아 기준 12.2%)로 나타남
- 전 가구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경우,
   '60% ➡ 30%'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80% ➡ 60%', '100% ➡ 60%', '80% ➡ 30%', '100% ➡ 30%' 순서로 나타나 큰 폭으로 감소한 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 보육료 지원비율이 60%에서 30%로 감소한 가구는 전체 감소가구 중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동일하게 부분지원 대상인 8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 역시 31.5%로 높았음
  - 다음으로 전액지원 대상에서 60% 부분지원 대상으로 감소하게 된 가구의 경우 15.7%로 나타났으며, 80%에서 30%로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 역시 9.9%에 해당하였음
  - 마지막으로, 100%에서 30%로 가장 큰 폭으로 지원수준이 떨어진 가구의 경우 4.9%(영유아 가구 역시 4.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 이러한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영유아 가구의 분포를 가구규모별로 구분할 경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체 계속 수급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4인 가구와 3인 기구의 경우, 앞서
     제시한 전체 가구의 분포와 유사한 반면, 대부분 한부모 가구인 2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인 5인 이상의 가구는 다소 상이한 패턴을 나타냄
    - 이러한 가구는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3인 또는 4인 가구에 비해 전액지원 대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나타낸 바 있음
    - 특히, 계속 수급기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3인 기구의 선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액지원 대상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2인 가구의 경우,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분포에 있어 전체적인 분포와 차이를 나타냄
  - (2인 가구) 2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 비율이 50.2%(영유아 기준 51.5%)로 가장 높았던 전체 가구의 분포와 달리 기존 보육료 지원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대부분이 전액지원 대상으로서 100% 지원수준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함
    - 이 결과는 지원비율 세부 변동유형에 따른 분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가구 중에서 92.9%가 기존의 전액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와 30% 부분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는 각각 4.2%와 2.9%로 매우 낮았음
    - 한편,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는 34%로 전체 가구에 비해 낮았으며 지원 수준이 감소한 가구 역시 2.6%로 전체 가구(5.3%)의 절반에 불과했음
  - 다음으로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지원비율 변화에 따른 2인 가구 및 영유아분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수준 증가유형의 경우 '80% ➡ 100%' 유형 (62.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 ➡ 100%', '30% ➡ 100%', '30% ➡ 60%' 순서로 나타나 전체 증가가구의 94.4%가 부분지원 대상에서 전액지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대로, 전체 2인 기구의 2.6%에 불과한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경우,
     '80% ➡ 60%' 유형이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0% ➡ 60%' 유형 27% , '60% ➡ 30%' 유형 11.8% 순서로 나타남

- 전액지원 대상에서 가장 낮은 지원수준인 30%로 감소한 유형의 경우 10.6%로 나타나 지원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구의 비중은 가장 작았음
- 요컨대, 2인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의 상향 적용(3인 가구 선정기준 적용) 및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이 매우 유리하게 영향을 미쳐 전액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영유아 기구의 지원수준 변화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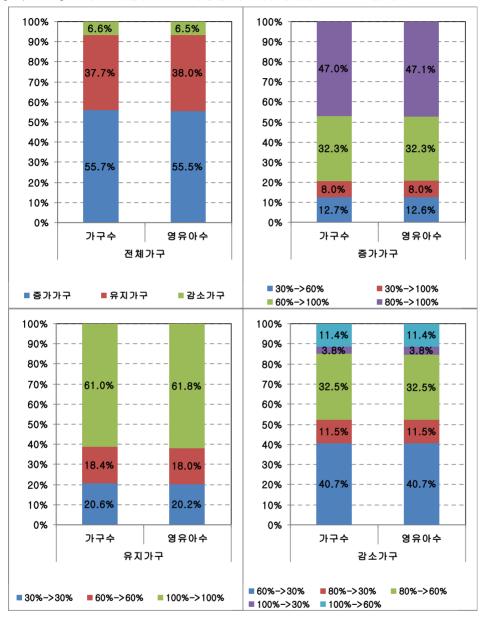
[그림 5-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2인 가구



- (3인 가구) 개편 전후 전액지원 대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3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수준의 변동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개편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비율은 55.7% (영유아 기준 55.5%)로 기존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중 절반 이상의 보육료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료 지원계층 구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전후 기존의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는 37.7%(영유아 기준 38.0%)로 분석됨
  - 반면에,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이후 오히려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하여 부담이 증가한 가구는 6,6%(영유아 기준 6.5%)에 불과하였음
- 다음으로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지원비율 변화에 따른 3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경우 '80% ➡ 100%'의 증가 유형이 47.0%(영유아 기준 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 ➡ 100%'로 부분지원 대상에서 전액지원 수준으로 증가한 가구가 32.3%로 높게 나타났음
  - 이어서 30%에서 60%까지 증가한 가구가 12.7%(영유아 기준 12.6%)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30%에서 전액지원 대상(100%)으 로 크게 상승하여 개편 이후 보육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는 약 8%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유형 중에는 '100% ➡ 100%'로 전액
   지원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비중이 61.0%(영유아 기준 61.8%)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 ➡ 30%', '60% ➡ 60%' 순서로 나타남
  - 부분지원 대상인 30%와 6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기구는 각각 20.6% (영유아 기준 20.2%), 18.4%(영유아 기준 18.0%)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전체 3인 기구의 6.6%에 불과한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기구의 경우,
   '60% ➡ 30%' 유형이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80% ➡ 60%', '80% ➡ 30%', '100% ➡ 60%', '100% ➡ 30%' 순서로
   나타났는데, 전액지원 대상(100%)에서 부분지원 대상(60%, 30%)으로 감소
   한 규모는 15.2%(11.4% & 3.8%)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보육료 지원비율이 기존의 3층에 해당하는 80%에서 60%와 30%로 각각 감소한 기구는 44%(32.5% & 11.5%)를 차지하였음

[그림 5-4]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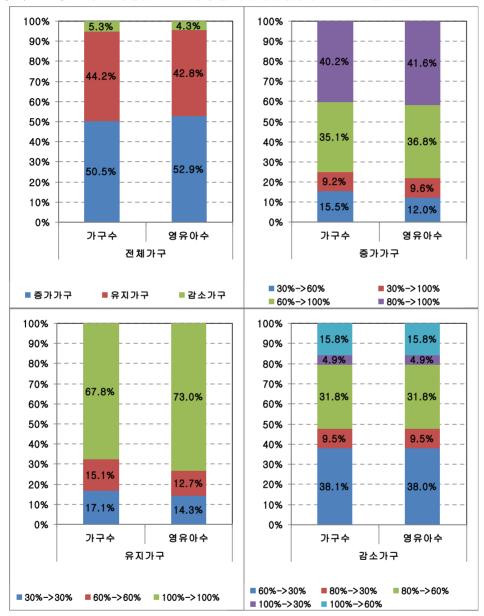


- (4인 가구) 전체 계속 수급가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 개편에 의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비율은 50.5%(영유아 기준 52.9%)로 전체계속 수급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기존 보육료지원 수급가구 중 절반 정도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정부지원 확대로 인해 보육료 부담이 감소한 반면,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는 4인 가구의 5.3%(영유아 기준 4.3%)에 불과했음
- 한편, 2009년 개편에 의해 보육료 지원계층 구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구 중에서 기존의 보육료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가구는 44.2% (영유아 기준 42.8%)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지원비율 변화에 따른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 중에서는 '80% ➡ 100%' 유형이 40.2%(영유아 기준 4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 ➡ 100%', '30% ➡ 60%', '30% ➡ 100%' 순서로 나타났음
  - 개편 전후 부분지원 대상인 4층(60%)과 5층(3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상승한 가구는 35.1%(영유아 기준 36.8%)와 9.2%(영유아 기준 9.6%)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원수준이 전액지원으로 확대된 가구는 증기유형 가구의 84.5%(영유아 기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부분지원 대상인 30%에서 60%로 지원수준이 다소 증가한 가구는 15.5% (영유아 기준 12.0%)이었음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유형 중에는, '100% ➡ 100%'로 전액지원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비중이 67.8%(영유아 기준 7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 ➡ 30%' 유형이 17.1%(영유아 기준 14.3%), '60% ➡ 60%' 유형이 15.1%(영유아 기준 12.7%) 순서로 나타남
- 전체 3인 가구 중에서 5.3%만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경우, '60% ➡ 30%' 유형이 약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80% ➡ 60%', '100% ➡ 60%', '80% ➡ 30%', '100% ➡ 30%' 순서로 나타나 지원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보육료의 30%만 지원받게 됨으로써 보육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가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80% 또는 100%에서 지원수준이 60%인 소득인정액 하위 50~60% 계층

- 으로 감소한 기구는 각각 31.8%와 15.8%로 전체의 47.6%를 차지함
- 다음으로 80%와 100%에서 지원수준이 가장 낮은 30%로 감소한 가구는 각각 9.5%와 4.9%로, 전체 감소가구의 14.4%로 나타났음

[그림 5-5]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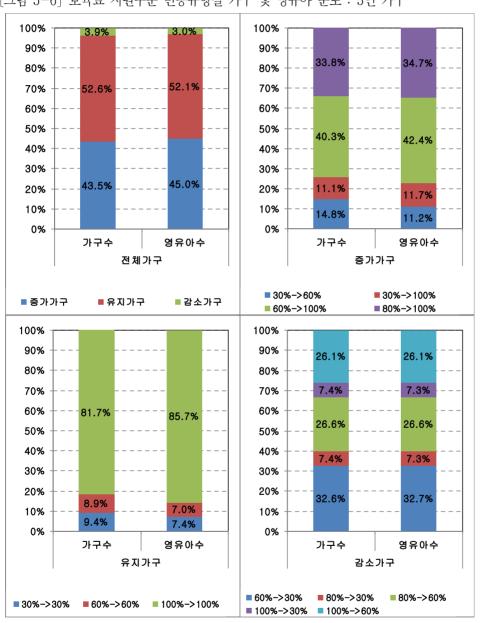
- (5인 & 6인이상 가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인, 5인, 6인 가구의 경우 전체 분포와 다소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특히, 5인 가구와 6인 이상의 가구는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2009년 개편에 의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5인 가구와 6인 이상 가구에서 각각 43.5%(영유아 기준 45.0%)와 34.7%(영유아 기준 35.8%)로 나타났으며, 이외는 반대로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각각 3.9%(영유아 기준 3.0%)와 3.7%(영유아 기준 2.8%)에 불과했음
- 전체 가구의 분포와 상이하지만 2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5인 가구가 52.6%, 6인이상 가구가 61.6%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이처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지원수준이 유지된 유형 중에 전액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가구는 5인 가구가 81.7%(영유아 기준 85.7%), 6인이상 가구는 85.8%(영유아 기준 89.3%)로,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이미 전액지원을 받고 있었고 개편 과정에서 이를 유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지원비율 변화에 따른 가구 및 영유아 분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4인 및 전체 가구의 변화 경향과 다르게 '60% ➡ 100%' 유형이 5인 가구 40.3%와 6인이상 가구 43.8%로 '80% ➡ 100%' 유형(5인 가구 33.8%, 6인이상 가구31.2%)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것은 5인 및 6인이상 가구의 경우 전액지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지원수준의 증가 폭이 3~4인 가구보다 더 컸음을 보여줌
  - 다음으로 가장 낮은 30% 수준의 부분지원 대상에서 각각 '30% ➡ 60%',
     '30% ➡ 100%'로 증가한 유형은, 5인 가구의 경우 14.8%와 11.1%, 6인 이상 가구는 13.3%와 11.7%로 나타남
- 5인 및 6인 이상 계속 수급가구 중에 3.9%와 3.7%를 각각 차지하는데 그친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경우, 역시 '60% ➡ 30%' 유형이 32.6%와 3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5인 기구의 경우 '80% ➡ 60%', '100% ➡ 60%', '80% ➡ 30%', '100% ➡ 30%' 순서로 나타났으나, 6인이상 가구의 경우에 전액 지원 대상인 10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의 비율이 27.7%로 부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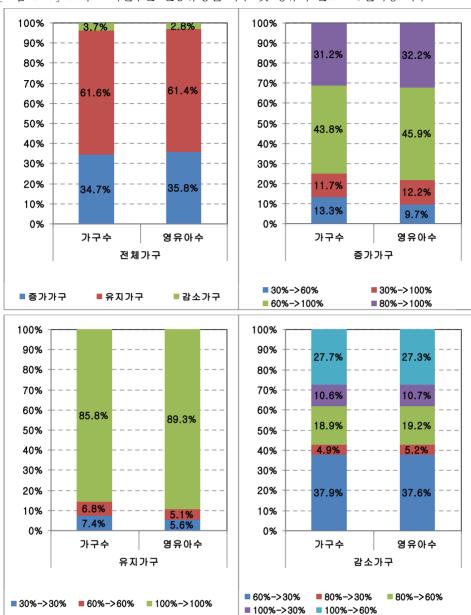
대상인 8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18.9%)보다 오히려 더 높았음

• 기존 보육료 지원수준이 80%(3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0%로 감소한 가구는 5인 가구가 7.4%, 6인이상 가구 4.9%였으나, 전액지원 대상인 100%에서 30%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경우는 5인 가구가 7.4%, 6인이상 가구가 10.6%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

[그림 5-6]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5인 가구



[그림 5-7]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가구 및 영유아 분포 : 6인이상 가구



### 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화와 지원수준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지원수준 변동유형(증가・유지・감소)에 따라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전체가구(소득인정액 0인 가구를 포함)와 보유가구(소득인정액 0인 기구 제외)로 구분하여 분석함
  - (증가) 전체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2,153천원에서 개편 후 2,037천원으로 약 116천원(5.4%) 감소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기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에 2,541천원에서 2,075천원 으로 약 466천원(18.3%) 감소하였음
    - 이러한 기구의 소득인정액 수준 감소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앞서 제4장 1절에서 계속 수급가구를 동일한 지원계층별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 평균을 비교한 결과, 집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이 상승하였으며 소득인정액 평균의 증가율은 보유가구에 비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위의 분석결과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이 감소한 경우에는 전체가구에 비해 보유가구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것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특히 금융재산 조회 실시에 따른 개편 전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 등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제고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경우, 보유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비율은 개편 전후 84.7%에서 98.2%로 약 13.5%p 상승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또한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개편 전후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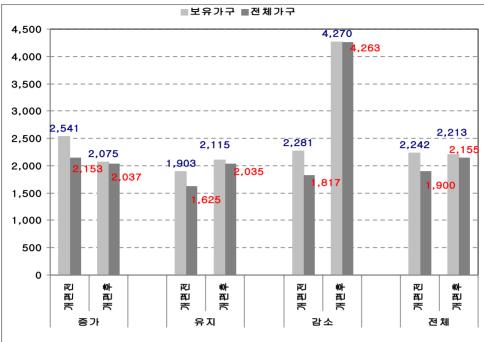
인정액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상에서 전체가구와 보유가구의 높이 차이가 개편 전 크게 나타났으나 개편 후 거의 유사하며,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수준의 증감상황에 따라 전체가구의 소득인정액 증가율과 보유 가구의 소득인정액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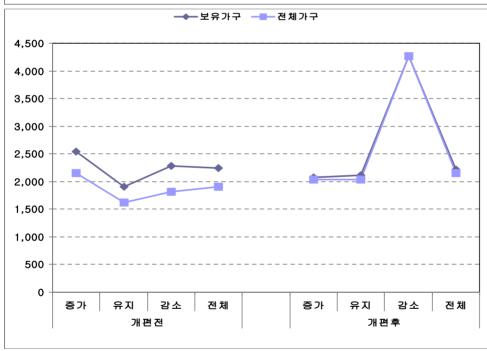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꺾은선 그래프의 경우에도, 개편 전에는 두 그래프가 다소 떨어져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편 후에는 이러한 간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유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원계층이 조정되었지만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전후 1,625천원에서 2,035천원으로 약 410천원(25.2%) 증가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기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 1,903천원에서 개편 후 2,115천원으로 약 212천원(11.1%) 상승하였음
  - 이처럼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은 2009년 이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증가수준(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반영, 2007년과 2008년에 4인 가구 전액지원 대상 7만원, 3층 15만원, 4층 20만원, 5층 29만원 상승)을 초과하는 것임
  - 그러나,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수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확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4인 기구의 경우, 2009년 개편 전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은 107만원, 60%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61만원, 30%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38만원 상향 조정되었음
  - 요컨대,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되었던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수준이 전체가구 평균 41만원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시에 적용된 선정기준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2009년 7월 개편 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외에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그만큼 확대하지 않았다면 보육료 지원수준을 유지한 가구 중 많은 가구의 지원수준이 오히려 감소했거나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시 개별 영유아 가구의 지원수준 변동에 대한 모의분석 결과를 제5장 2절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요소인 선정기준 확대의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감소) 전체기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817천원 에서 개편 후에 4,263천원으로 무려 2,446천원(134.6%)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2,281천원에서 개편 후에 4,270천원으로 1,989 천원(87.2%) 증가하였음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기구의 경우, 이처럼 평균 소득인정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 수급자격이 중단되지 않고 단순히 지원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은 역시 가구원수에 따른 선정기준을 대폭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요컨대,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원계층의 확대 개편을 통한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 가구의 대부분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의분석 결과는 2절에서 제시함
-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1,900 천원에서 개편 후에 2,155천원으로 약 255천원(13.4%) 증가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 2,242천원에서 2,213천원으로 약 29천원(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8]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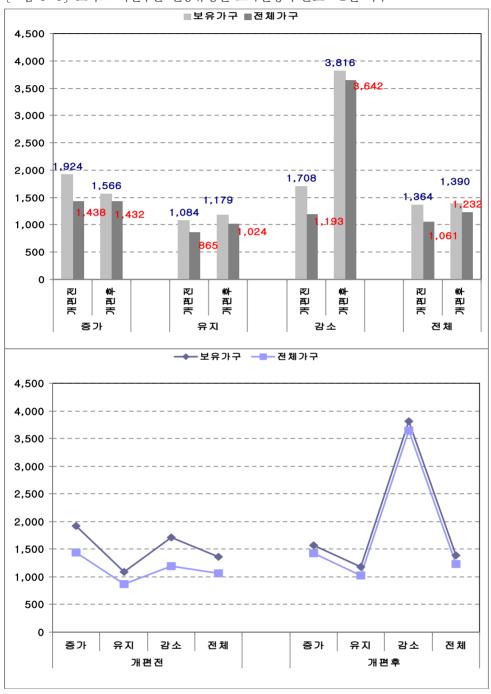
□ 다음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2인~6인이상 가구까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원수준 증가·유지·감소 유형별로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에 의한 합리성 및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선정기준 상향조정이 가져온 보육료 지원수준 확대의 효과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음

#### - 2인 가구 분석결과

- (증가) 전체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438천원에서 개편 후에 1,432 천원으로 약 6천원(0.4%) 감소하였음
- 한편,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 1,924천원에서 1,566천원으로 358천원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개편 전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보유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의 비율은 개편 전후 74.7%에서 91.4%로 높아졌음
- (유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원계층이 조정되었지만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865천원 에서 1,024천원으로 약 159천원(18.4%) 증가하였으며, 보유기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084천원에서 1,179천원으로 약 95천원 (8.8%) 상승하였음
- (감소) 2인 가구를 분석한 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감소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193천원에서 개편 후약 3배 수준인 3,642천원까지 2,449천원(205.3%)이나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1,708천원에서 개편 후에 3,816천원으로 2,108천원(123.4%)만큼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은 1,061천원에서

1,232천원으로 약 171천원(16.1%) 증가하였으며, 보유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364천원에서 1,390천원으로 26천원(1.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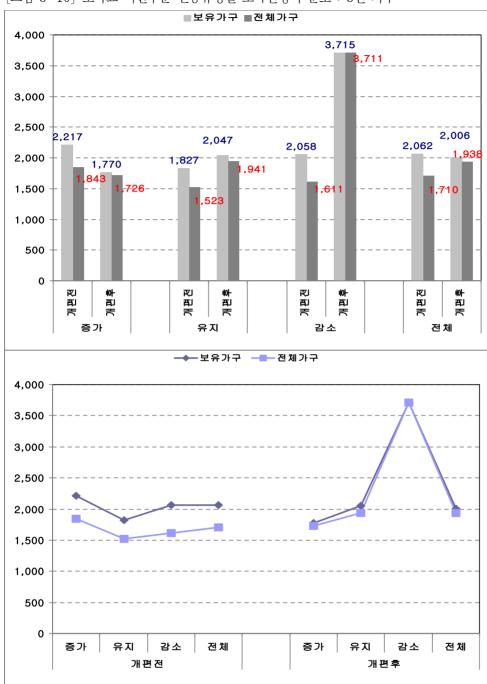
[그림 5-9]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2인 가구



## - 3인 가구 분석결과

- (증가) 전체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843천원에서 개편 후에 1,726 천원으로 약 117천원(6.3%) 감소하였음
-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본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2,217천원에서 1,770천원으로 447천원(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특히 금융재산 조회 등에 따른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보유기구 소득 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비율은 개편 전후 83.1%에서 97.5%로 높아졌음
- (유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원계층이 조정되었지만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523천원에서 1,941천원으로 약 418천원(27.4%) 증가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 1,827천원에서 개편 후 2,047천원으로 약 220천원(12.0%) 상승하였음
- (감소) 3인 가구 전체 분석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감소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611천원에서 개편 후 3,711천원으로 2,100천원(130.4%)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2,058천원에서 개편 후에 3,715천원으로 1,657천원(80.5%)만큼 증가하였음
-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은 1,710천원에서 1,938천원으로 약 228천원(13.3%) 증가한 반면,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2,062천원에서 2,006천원으로 56천원(2.7%)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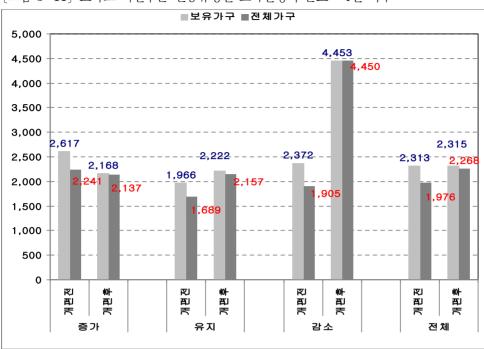
[그림 5-10]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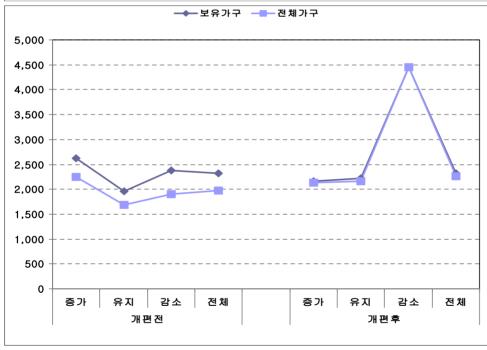


### - 4인 가구 분석결과

- (증가) 전체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2,241천원에서 개편 후에 2,137 천원으로 104천원(4.6%) 감소하였음
- 한편,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 2,617천원에서 2,168천원으로 449천원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특히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개편 전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 등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보유기구 소득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비율은 개편 전후 85.6%에서 98.6%로 높아졌음
- (유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의 경우 개편 전후로 1,689천원에서 2,157천원으로 약 468천원(27.7%) 증가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 1,966천원에서 개편 후 2,222천원으로 약 256천원(13.0%) 상승하였음
- (감소) 4인 가구를 분석한 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감소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905천원에서 개편 후 4,450천원으로 2,545천원(133.6%)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2,372천원에서 개편 후에 4,453천원으로 2,081천원(87.7%) 증가하였음
-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과 상관없이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은 1,976천원에서 2,268천 원으로 약 292천원(14.8%) 증가하였으며,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2,313천원에서 2,315천원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1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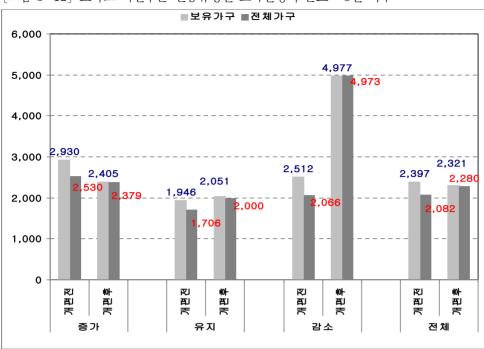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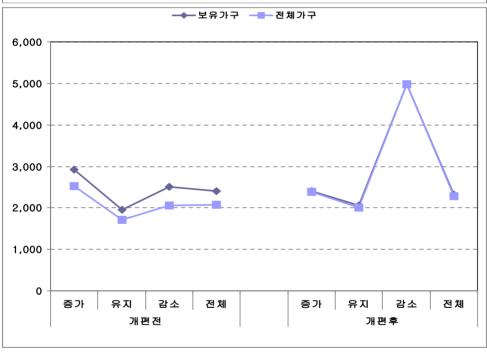


### - 5인 가구 분석결과

- (증가) 전체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2,530천원에서 개편 후에 2,379 천원으로 약 151천원(6.0%) 감소하였음
- 한편,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 2,930천원에서 2,405천원으로 525천원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5인 기구 역시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특히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 가구의 보유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 소 득인정액 평균 비율은 개편 전후 86.3%에서 98.9%로 높아졌음
- (유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원계층이 조정되었지만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706천원 에서 2,000천원으로 약 294천원(17.2%) 증가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 1,946천원에서 개편 후 2,051천원으로 약 105천원(5.4%) 상승하였음
- (감소) 5인 가구 분석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으로 지원수준이 감소한 영유아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2,066천원에서 개편 후 4,973 천원까지 2,907천원(140.7%)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2,512천원에서 개편 후에 4,977천원으로 2,465천원(98.1%) 증가하였음
-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 전후 계속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평균은 2,082천원에서 2,280천원으로 198천원(9.5%) 증가한 반면, 보유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은 개편 전후 2,397천원에서 2,321천원으로 오히려 76천원(3.2%) 감소함

[그림 5-1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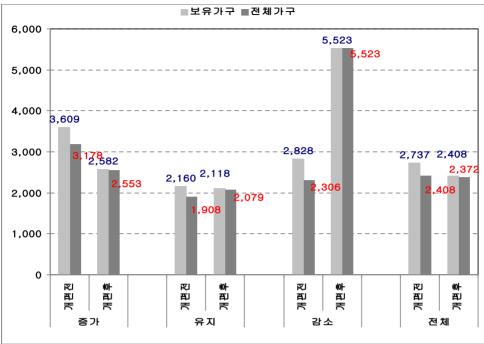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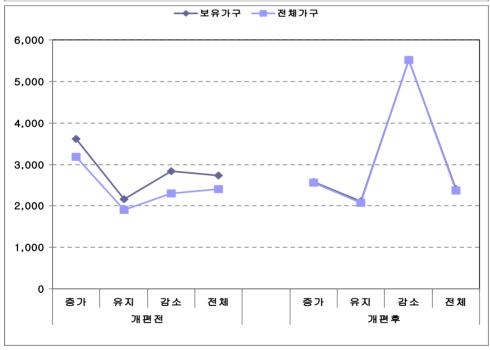


### - 6인이상 가구

- (증가) 6인이상 전체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수준이 증가한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3,178천원에서 개편 후 2,553천원으로 약 625천원(19.7%) 감소하였음
- 한편, 보유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후 3,609천원에서 2,582천원으로 1,027천원 (2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선, 특히 금융재산 조회에 따른 개편 전후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유비율 상승 등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보유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대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평균 비율은 개편 전 88.1%에서 개편 후 98.9%로 높아졌음
- (유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원계층이 조정되었지만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1,908천원 에서 2,079천원으로 약 171천원(9.0%) 증가하였음
- 이와 달리, 소득인정액 보유기구만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개편 전 2,160천원에서 개편 후 2,118천원으로 약 42천원(1.9%)이 오히려 감소하였음
- (감소) 6인이상 가구에 대한 분석결과,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감소한 영유아 기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2,306천원에서 개편 후 5,523천원으로 3,217천원(139.5%) 상승하였음
- 한편, 소득인정액 보유가구의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2,828천원에서 개편 후에 5,523천원으로 2,695천원(95.3%)만큼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6인이상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평균은 2,408천원에서 2,372 천원으로 약 36천원(1.5%) 감소하였으며, 보유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 역 시 개편 전후 2,737천원에서 2,408천원으로 329천원(12.0%) 감소함

[그림 5-1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분포 : 6인이상 가구





- 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 앞서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지원수준 변동유형(증가・유지・감소)에 따라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전체가구와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와 같이 전체적인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소득 및 재산항목별 자산조사 결과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임
  -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과 정도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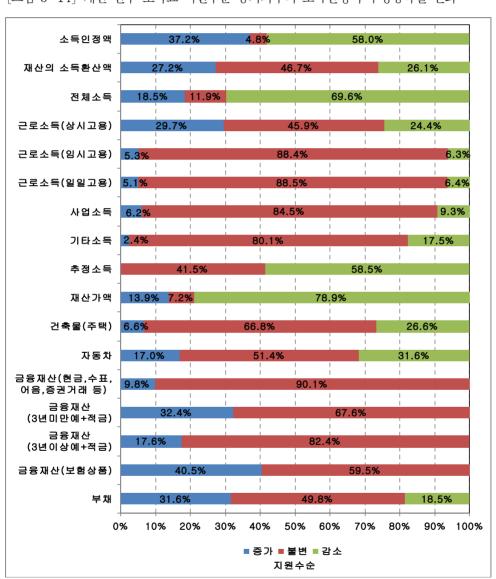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

- 분석대상(계속 수급가구 34만 4천 가구) 중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의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는 50.2%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2,153천원에서 2,037천원으로 5.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평균 소득인정액 수준의 변화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소득 및 재산항목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로의 전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폐지,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실시 등 선정방식의 변화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과 그 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58%였으며 변동되지 않은 가구는 4.8%로 나타남
  - 반면,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가구는 37.2%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계층 개편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 조정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 및 자산조사 DB 반영 주기의 영향으로 변동되지 않은 기구가 46.7%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 가구가 각각 27.2%와 26.1%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됨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의 주요 내용 중, 그 동안 '시가' 기준으로 조사한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전환한 조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금융재산 조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유아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변동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5-14]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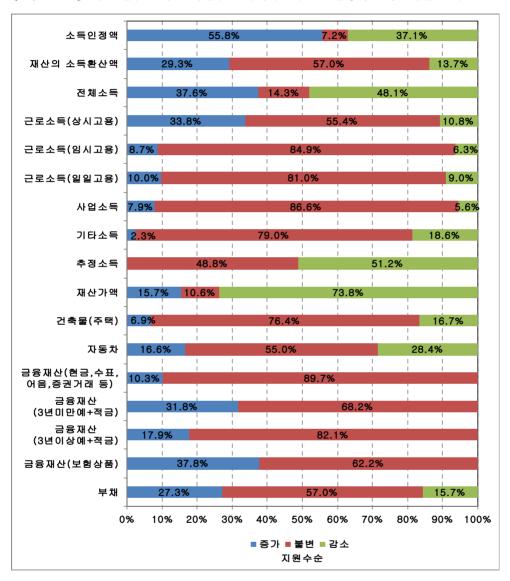
- 전체적으로 소득평가액은 감소한 가구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상시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근로 및 사업소득의 변동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보다는 감소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기타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에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감소한 기구가 17.5%와 58.5%로 나타났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과 지동차의 경우 재산가액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변화 및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완화로 인해 재산가액이 감소한 가구가 각각 26.6%, 31.6%를 차지함
  - 이로 인해 일반재산가액이 감소한 가구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증가한 기구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금융재산 변동을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으로 실시한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결과, '보험상품' 증가 기구가 4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년 미만 예·적금' 32.4%, '3년 이상 예·적금' 17.6%, '현금, 수표 등'이 9.8%로 나타났음
  - 이처럼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 비율은, 평균 소득인정액이 상승한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 또는 감소한 가구에서 나타났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

- 분석대상(계속 수급가구 34만 4천 가구) 중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의해 보육료 지원계층 구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편 전후 기존 보육료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 가구는 전체의 약 44.5%였으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평균은 개편 전후 1,625천원에서 2,035천원으로 약 410천원(25.2%) 상승하였음
-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의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인정액 변화에 있어서 지원수준 증가가구와 달리 개편 전후 재산정된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가구가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감소한 가구 37.1%,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가구는 7.2%로 나타남

• 이처럼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은, 보육료 지원계층 개편에 따른 선정기준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5-15]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특성 상 변동되지 않은 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앞서 분석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유형과 달리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29.3%로 감소한 가구(13.7%)보다 높았음

- 전체적인 소득 수준은 감소한 기구가 48.1%로 증가한 기구 37.6%보다 다소 높았으며, 증가한 경우가 33.8%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이 없는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기타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에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감소한 가구가 18.6%와 51.2%로 지원수준 증가가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건축물과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변화 및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완화로 인해 재산가액이 감소한 가구가 각각 16.7%, 28.4%를 차지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수준 증가유형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이로 인한 일반재산가액 감소 가구는 73.8%를 차지하였으며, 증가 가구는 15.7%로 앞서 분석한 지원수준 증가유형보다 다소 높았음
-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가구에 대하여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결과로 인한 금융재산의 변동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증가 가구가 3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년 미만 예·적금' 31.8%, '3년 이상 예·적금' 17.9%, '현금, 수표 등'이 10.3%로 나타났음
  - 이처럼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 비율은, 앞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

- 전체 계속 수급가구 중에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의해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5.3%에 불과하며, 이처럼 지원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영유아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에 1,817천원에서 개편 후 4,263천원으로 매우 큰 폭(2,446천원, 134.6%)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에서 이처럼 큰 폭으로 소득인정액 수준이 상승한 것은, 선정방식 개편에 의해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특히 금융재산 조회 등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과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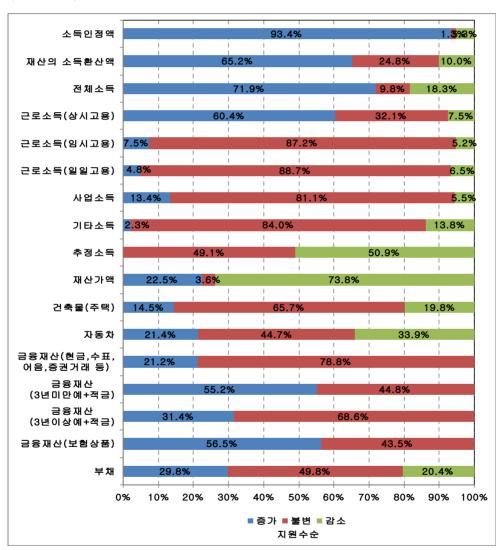
다양한 변화 요인이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앞서 분석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 유형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먼저,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가구가 전체의 93.4%로 대부분을차지하고 있으며, 감소한 가구는 5.3%에 불과하여 정반대로 나타남
  - 이처럼,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가구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되었지만 완전히 탈락하지 않은 것은 2009년 개편의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체 소득 수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증가한 가구가 71.9%로 오히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감소한 가구는 18.3%에 불과하였음
  -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에 60.4%가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변동이 없는 가구가 가장 많은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에서 제외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여 감소한 가구가 각각 13.8%와 50.9%로 나타났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에도 상이한 분포가 나타났는데, 재산가액 변동 및
   자산조사 DB 반영주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변동되지 않은 가구(24.8%)보다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65.2%로 월등히 높았음
  -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 가운데 건축물과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변화 및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완화로 재산가액이 감소한 가구가 각각 19.8%, 33.9%로 나타났으며,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각각 14.5%와 21.4%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반재산가액의 경우, 전체적인 조사기준(시가표준액) 변경에 따라 감소한 가구가 73.8%로 역시 가장 높았으나, 증가한 가구가 22.5%로 역시 다른

변동유형의 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변동을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으로 인해 '보험상품' 관련 금융재산가액이 증가한 가구가 56.5%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3년 미만 예·적금'이 55.2%로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한편, '3년 이상 예·적금' 31.4%, '현금, 수표 등' 21.2%로 나타나 각종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에 있어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하거나 유지된 가구에서 나타난 규모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음

[그림 5-16]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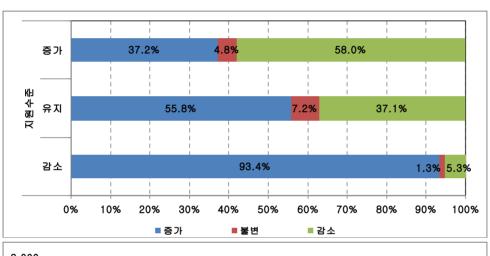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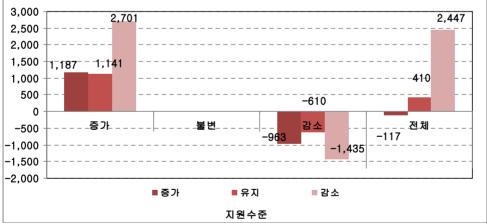
- □ 요컨대,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관련 자산조사 체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재산 및 부채의 조회와 관련된 금융 재산 세부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 및 지원비율 수준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소득인정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경우 금융재산 조회 결과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면에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지원수준 감소한 유형에서는 세부 금융재산 유형별로 증가한 가구의 비율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
    - 금융재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의 변동유형과 상관없이 보험 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가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3년 미만 예금·적금', '3년 이상 예금·적금', '현금, 수표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반면에, 금융재산 조회결과 증가한 금액의 규모는 '3년 미만 예금·적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보험상품', '3년 이상 예금·적금', '현금, 수표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 및 자산조사 DB 반영 주기의 영향으로 변동되지 않은 기구가 높은 가운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의주요 내용 중, 그 동안 '시가' 기준으로 조사한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전환한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재산 조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 정도에 의해 개별 영유아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변동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공·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과 많은 민원을 유발했던 추정소득의 경우 2009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과정에서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을 제외시킴에 따라, 기타 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감소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정소득의 경우 그 동안

추정소득의 반영으로 불이익을 받던 가구에서 추정소득이 제외됨에 따라 추정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비율은 각 유형별로 50.9~58.5%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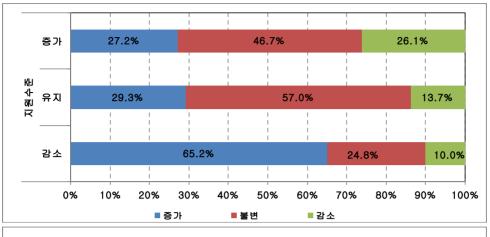
□ 이상에서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에 따라 소득인정액 구성항목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세 가지 지원수준 변동유형별(증가/유지/감소) 변화 방향(증가/불변/감소)의 분포와 더불어 해당 항목의 평균적인 변동 수준에 관한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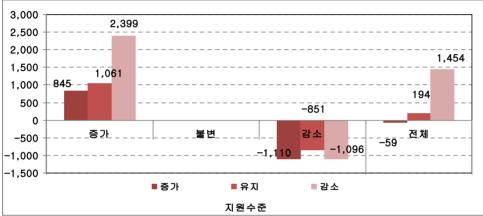
[그림 5-17]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소득인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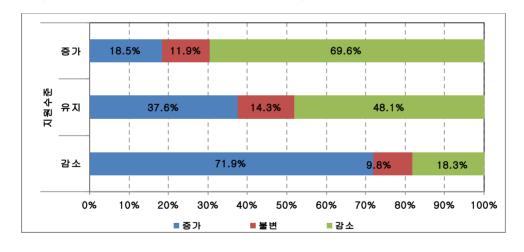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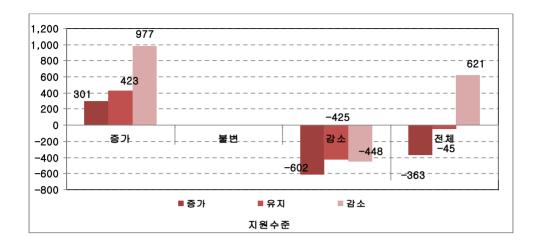
[그림 5-18]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재산의 소득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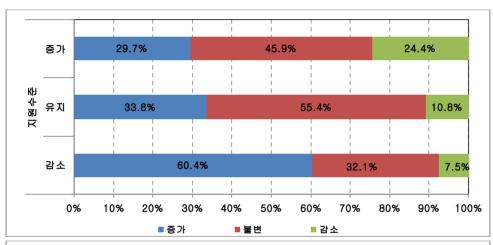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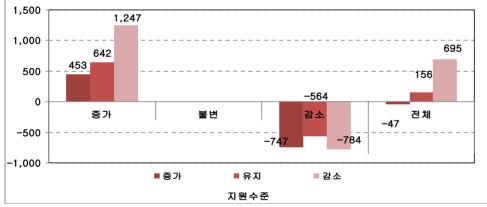
[그림 5-19]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전체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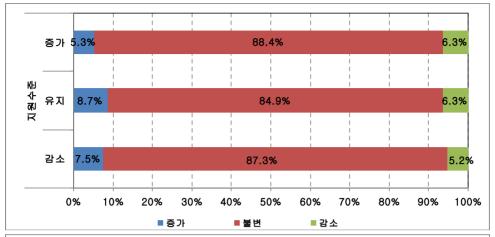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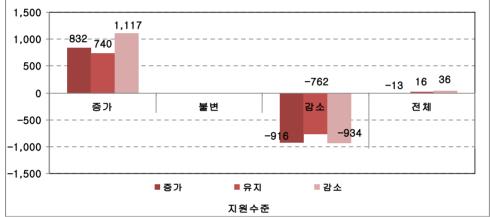
[그림 5-20]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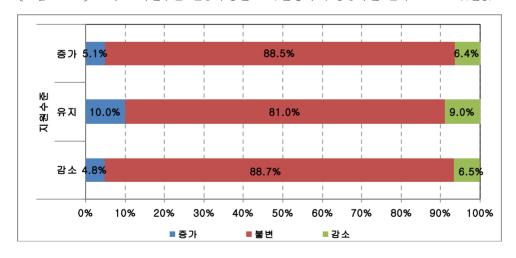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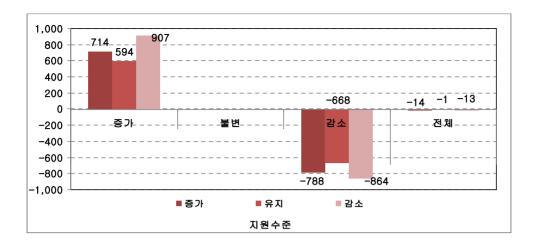
[그림 5-2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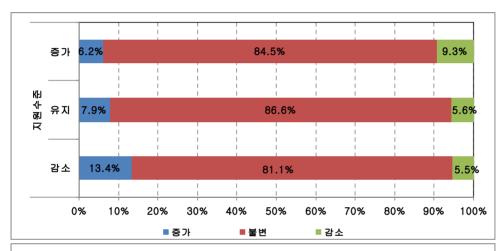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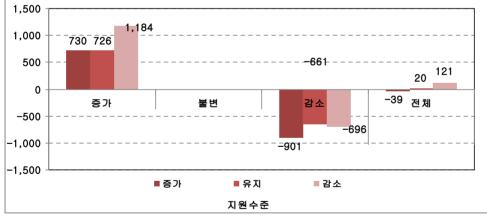
[그림 5-2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근로소득(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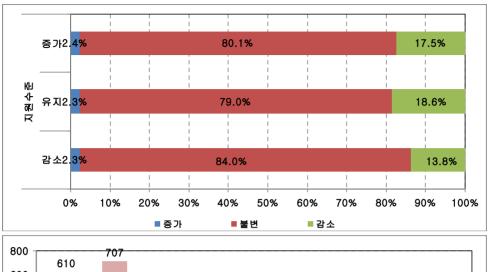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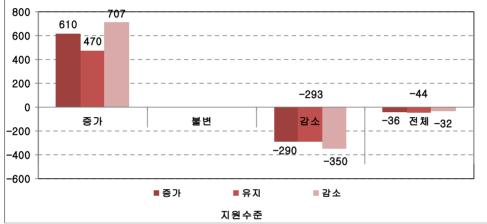
[그림 5-2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사업소득





[그림 5-24]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기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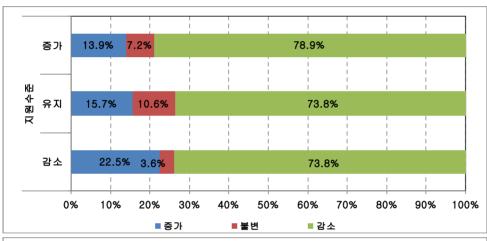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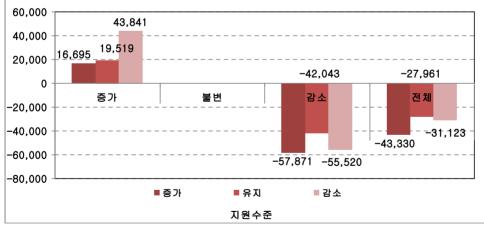
[그림 5-25]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추정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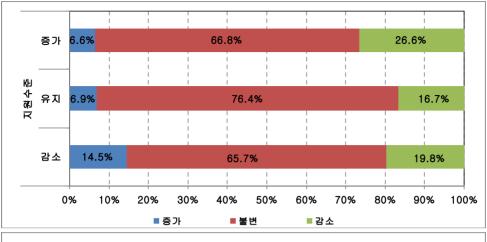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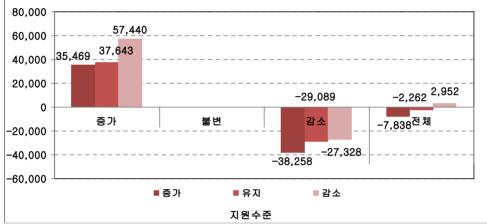
[그림 5-26]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일반재산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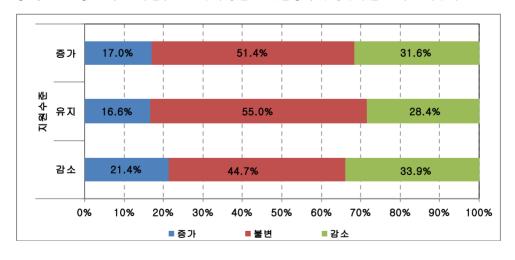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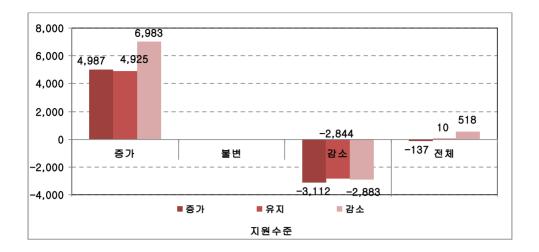
[그림 5-27]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건축물





[그림 5-28]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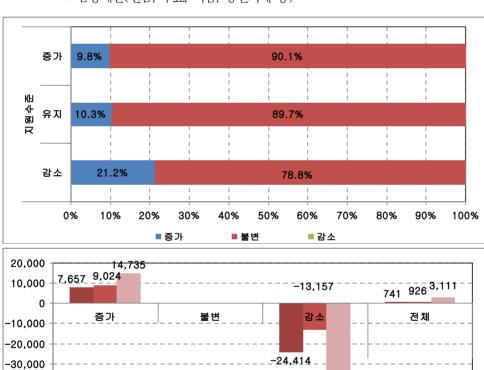


[그림 5-29]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현금, 수표, 어음, 증권거래 등)

■증가

-40,000 -50,000

-60,000



■유지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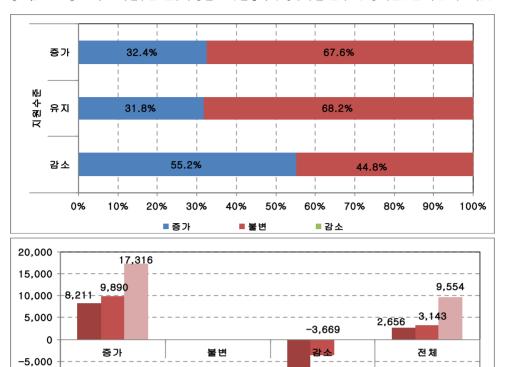
-53,778

■감소

-10,000

-15,000

[그림 5-30]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금융재산(3년 미만 예ㆍ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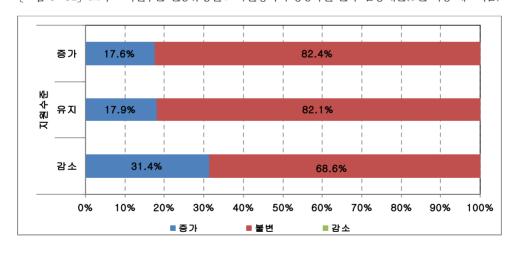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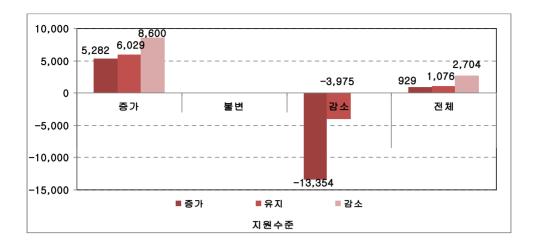
[그림 5-31]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금융재산(3년 이상 예ㆍ적금)

■유지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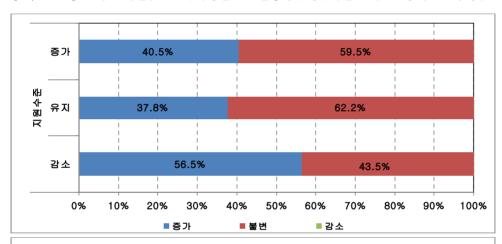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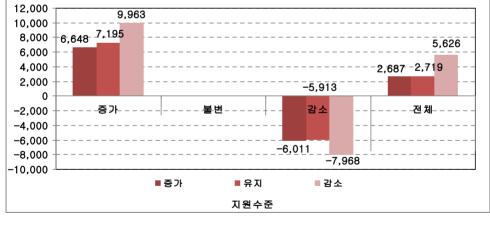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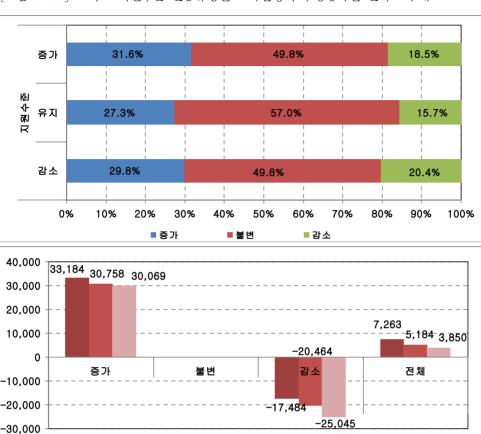




[그림 5-32]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금융재산(보험상품)







[그림 5-33]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 부채

# 제2절 보육료 지원수준 세부 변동유형별 요인 분석

■증가

□ 앞서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의 지원수준 변동유형(증가・유지・감소)에 따라 개편 전후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를 전체가구와 소득인정액 보유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 때 각 집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소득 및 재산항목별 증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임

■유지

지원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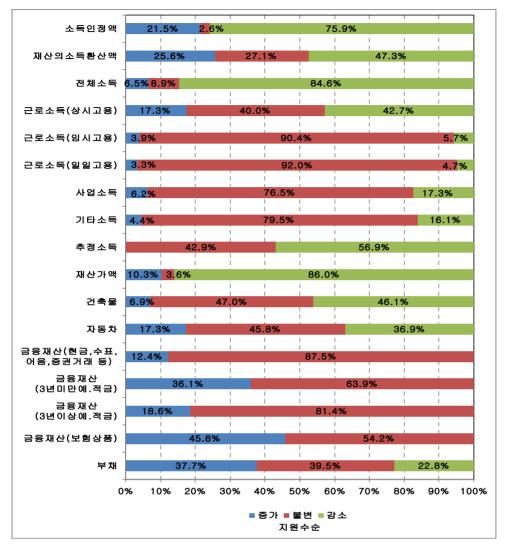
■감소

- 제2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을 지원비율의 변동에 따라 12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분포,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에 따른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 요인을 심층 분석함

- 특히, 12가지 세부 유형별로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수준을 모의 분석함으로써 선정체계 개편을 통한 보육료지원 확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 1.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분석
-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경우, 분석대상(계속 수급가구 34만 4천 기구) 중 50.2%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후 2,153천원에서 2,037천원으로 5.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수준의 변화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소득 및 재산 항목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적용된 선정방식 변화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는 2009년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계층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원수준 증가기구를 4가지 유형('30% ➡ 100%', '60% ➡ 100%', '80% ➡ 100%', '30% ➡ 60%')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분포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 → 100%) 가구
  - 보육료 지원수준이 가장 낮은 30%에서 전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10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보육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가구는 전체 증가 가구의 약 9.1%(영유아 기준 9.5%)를 차지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수준이 3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에 따라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가구가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동 수준은 1,133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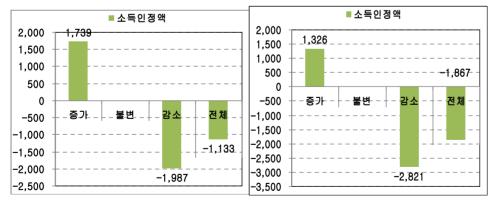
-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가구도 21.5%가 있었으나 이러한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규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동을 살펴보면, 2인~6인 이상 가구에 이르기까지 1,023천원~1,867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수준이 크게 확대된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의 확대와는 별개로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과 그 수준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전체 소득의 경우,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각각 47.3%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시 근로소득(감소가구의 비율 42.7%)을 제외하면 근로/사업소득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보다는 감소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기타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편에서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감소한 가구가 16.1%와 56.9%로 나타났음
- 조사기준이 변경된 재산가액의 경우 86%의 가구가 감소하였으며, 건축물과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변화 및 자동차 배기량 기준의 완화로 인해 재산가액이 감소한 가구 역시 46.1%와 36.9%로 높았음
-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항목별로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 유형 중에서 소득인정액 평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재산 조회로 인해 금융재산 보유 수준이 증가한 기구가 상당 수 존재하였음
  - 금융재산 유형 중 '보험상품'의 경우 증가한 가구(45.8%)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미만 예·적금' 36.1%, '3년 이상 예·적금' 18.6%, '현금, 수표 등'이 12.4%로 나타났음

[그림 5-34]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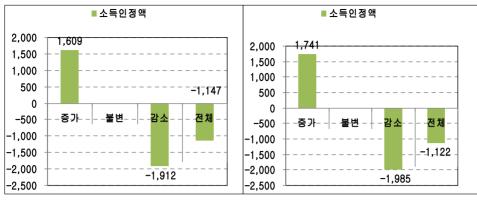


##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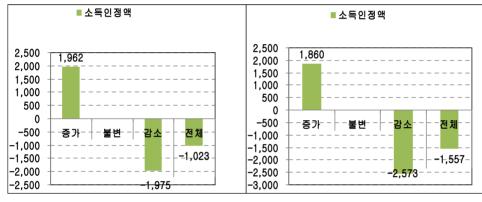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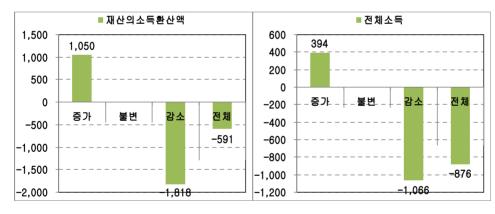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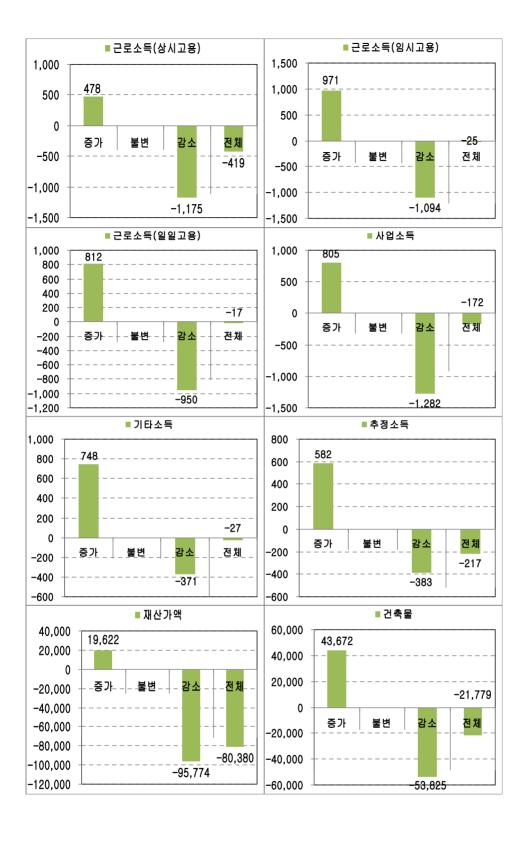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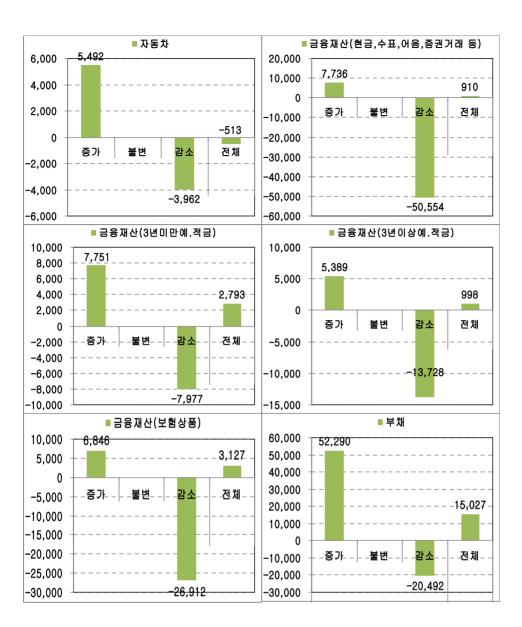
<5인 가구>

<6인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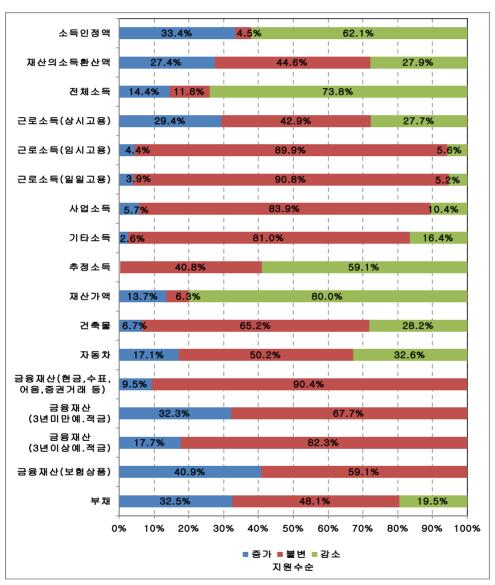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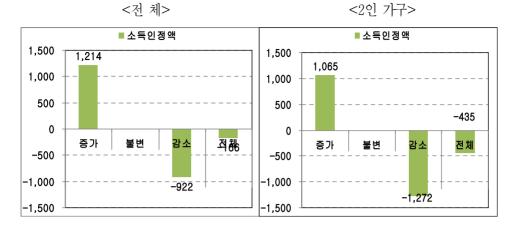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60% → 100%) 가구
  - 보육료 지원수준이 부분지원 대상인 4층(60%)에서 전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100%로 상승한 가구는 전체 지원수준 증가기구의 약 34.8%를 차지함
  - 보육료 지원수준이 6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가구가 6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3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75.9%)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며,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동 수준에 있어 약 166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분석한 결과(1,133천원)와는 큰 차이를 보임
    - 반면에,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가구도 33.4%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규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동을 살펴보면, 60%에서 100%로 지원 수준이 증가한 유형에서는 여전히 모든 가구에서 131천원~435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가 44.6%로 높았으며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기구의 비율이 약 27%로 거의 유사하였음
  - 반면, 전체 소득의 경우에는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각각 73.8%로 앞서 3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84.6%)보다 약간 낮아졌음
    -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유사한 경향으로 보여 불변인 가구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가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나머지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감소한 가구가 약간 더 많았음
    - 기타소득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제외에 따라 16.4%의 가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소득의 경우 60%에서 100%로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의 약 59.1%에서 추정소득과 관련된 개선(감소기구의 추정소득 평균 감소액 약 366천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기준이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된 일반재산가액의 경우 약 80%의 기구에서 감소하였으며, 건축물과 자동차의 경우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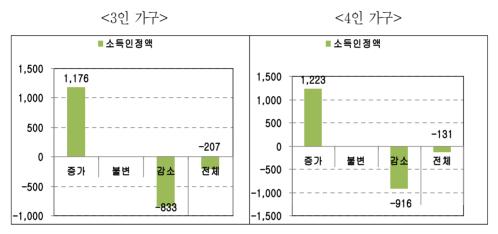
가장 높았으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변화 및 지동차 배기량 기준의 완화로 인해 감소한 기구 역시 28.2%와 32.6%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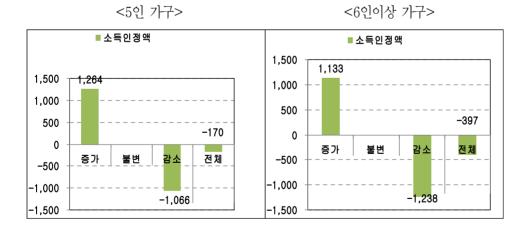
- 금융재산 항목별로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앞서 3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증가한 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금융재산 조회로 인해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보험상품'의 경우 40.9%로 가장 높았으며, '3년 미만 예·적금' 32.3%, '3년 이상 예·적금', '현금, 수표 등' 순서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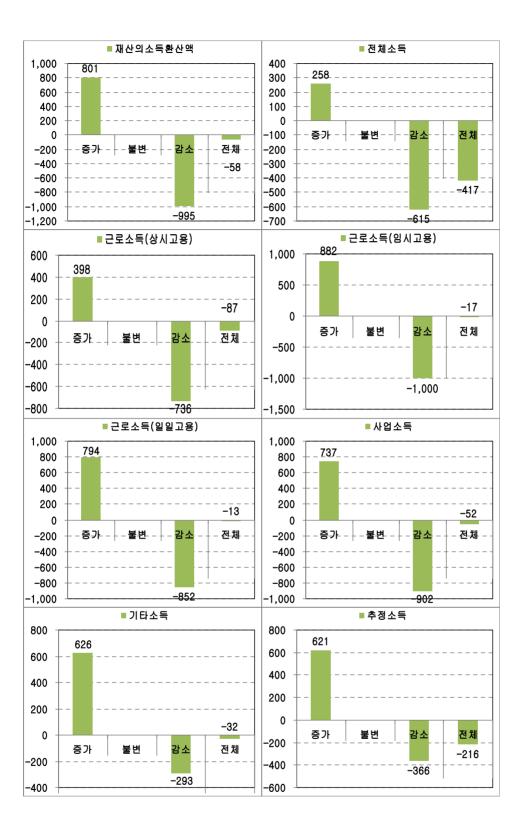
[그림 5-35]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6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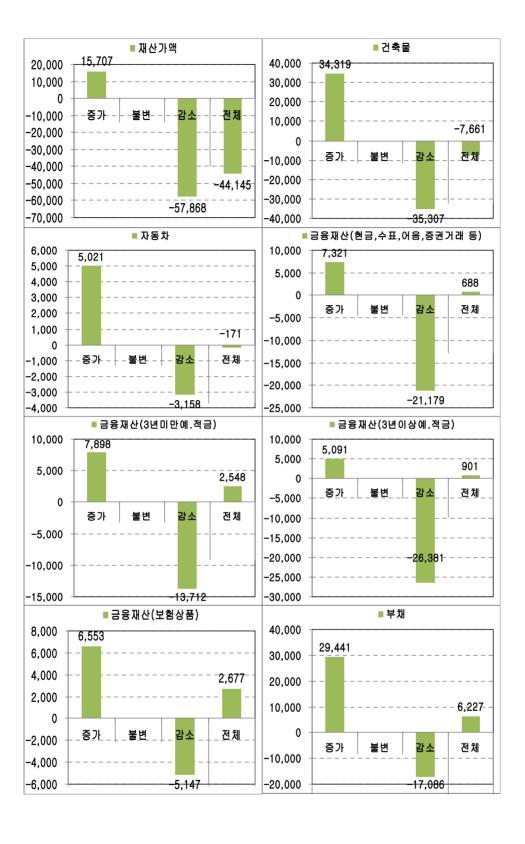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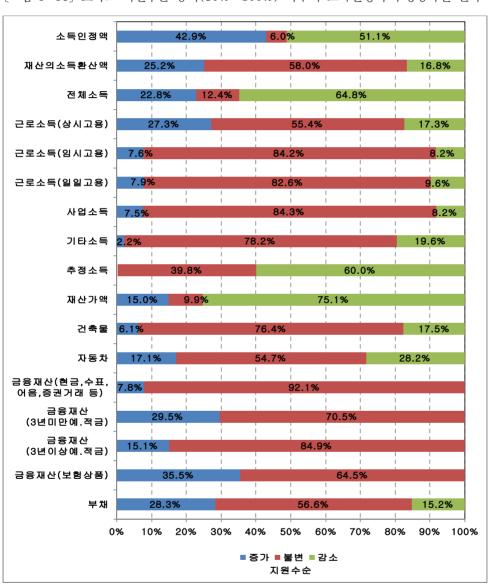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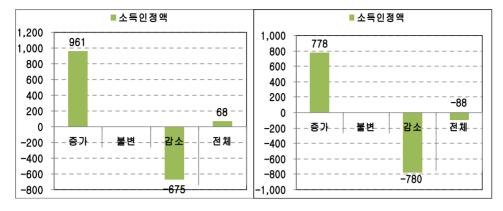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80% → 100%) 기구
  - 보육료 지원수준이 개편 전 3층(8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증가한 가구는 전체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약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육료 지원수준이 8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가구가 5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30% 또는 60%에서 100%로 증가한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증가한 가구 역시 42.9%로 높게 나타났음
    -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동 수준은 약 68천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것은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규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동을 살펴보면, 2인 기구와 6인 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 40~114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가 58.0%로 가장 높았으며 증가한 기구의 비율이 25.2%로 감소한 가구(16.8%)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에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평균 역시 약 67천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전체 소득의 경우는 여전히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64.8%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평균 역시 264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유사한 경향으로 보여 불변인 가구가 55.4%로 가장 높았지만, 증가한 기구의 비율이 27.3%로 감소한 가구(17.3%)에 비해 높아졌으며 나머지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제외에 따라 약 19.6%의 가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소득의 경우 80%에서 100%로 보육료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의 60%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개선(감소가구의 추정소득 평균 감소액 약 380천원, 전체 평균 227천원)이 있었음을 시사함
  - 일반재산가액의 경우 감소한 가구가 전체의 75.1%로 매우 높았으며 건축물과 자동차가액이 변동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재산가액 산정기준 변화 및 배기량 기준 완화로 인해 감소한 가구는 17.5%와 28.2%로 나타남

- 금융재산 항목별로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앞서 30%와 6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증가한 가구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실시한 금융재산 조회로 인해 금융재산 항목별로 증가한 가구가 '보험상품'의 경우 35.5%, '3년 미만 예·적금' 29.5%로 나타났으며, 증가액은 각각 '3년 미만 예·적금' 2,531천원, '보험상품' 2,331천원 순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5-36]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8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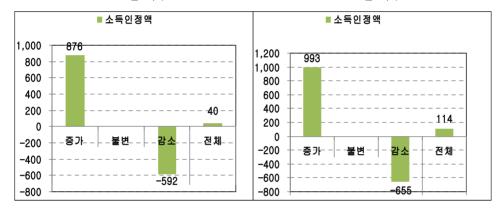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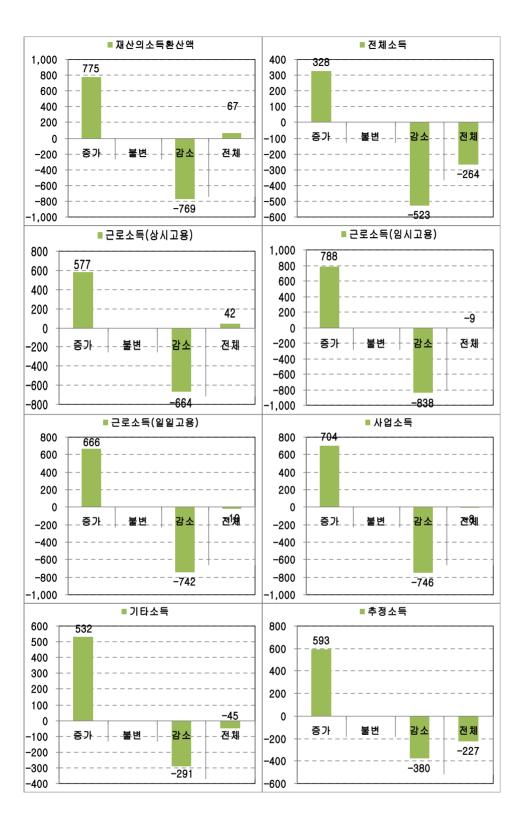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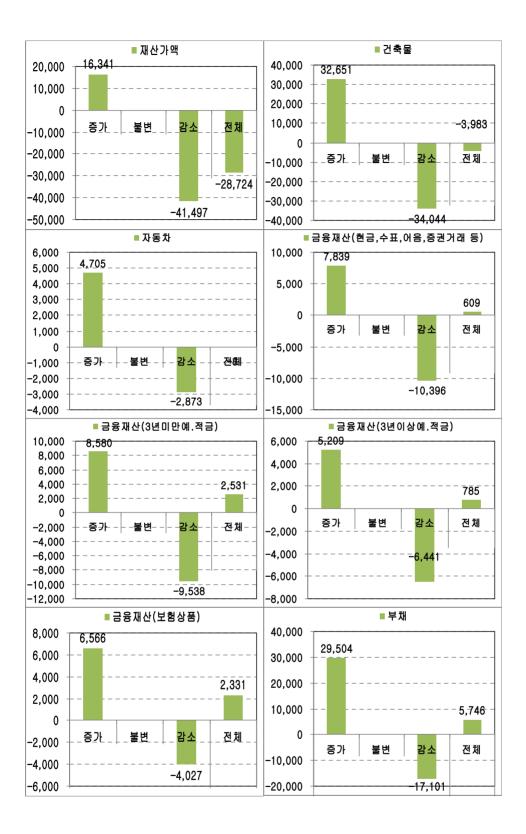
### <4인 가구>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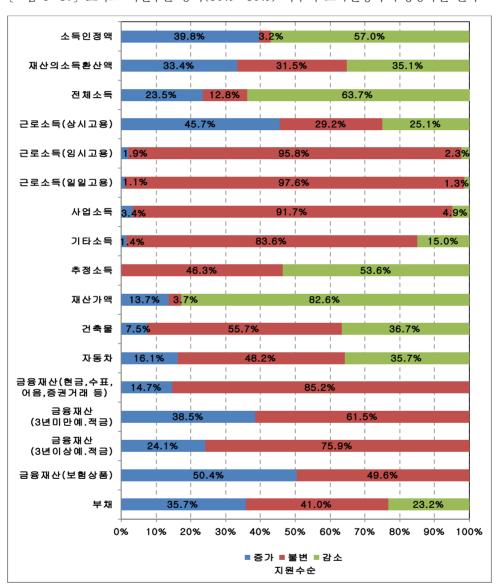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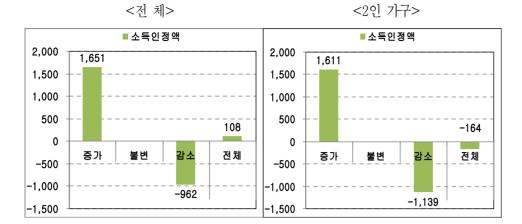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 → 60%) 가구
  - 보육료 지원수준이 부분지원 대상인 5층(30%)에서 개편 후 하위 50~60%에 해당하는 60%로 증가한 가구는 전체 지원수준 증가가구의 약 14.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소득인정액을 변동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가구가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한 가구 역시 40%에 이르며
     소득인정액 평균은 약 10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구원수별로는 2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2~279천원까지 증가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앞서 살펴본 전액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세 가지 유형과는 달리 변동되지 않은 기구가 31.5%로 오히려 가장 낮았으며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가구의 비율이 각각 33.4%와 35.1%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평균은 약 94천원 감소하는데 그쳤음
  - 전체 소득의 경우는 여전히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63.7%로 가장 높았으며,전체적인 평균 역시 199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앞서 지원수준 증가유형의 가구와 달리 증가한 가구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은 24천원 증가하였음
    - 반면, 임시일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소득과 추정소득의 경우, 앞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제외에 따라 기타소득의 경우 15.0%의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소득의 경우 53.6%가 이번 개편을 통해 추정소득이 감소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감소가구의 추정소득 평균 감소액은 337천원으로 앞서 분석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180천원으로 나타났음
  - 일반재산가액, 건축물, 자동차의 경우 앞서 분석한 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재산가액 산정기준 변화와 배기량 기준 완화로 건축물과 자동차의 재산가액이 감소한 기구의 비율이 각각 36.7%와 35.7%로 높아졌음
  - 금융재산 항목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금융 조회로 인한 금융재산 항목별

증가가구의 비율이 앞서 분석한 증가유형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는 부분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험상품'이 50.4%, '3년 미만 예·적금' 38.5%로 높아졌으며, 증가액 역시 각각 3.470천원과 3.188천원으로 높았음
- 부채 역시 증가 가구의 비율이 35.7%로, 평균 증가액은 9,291천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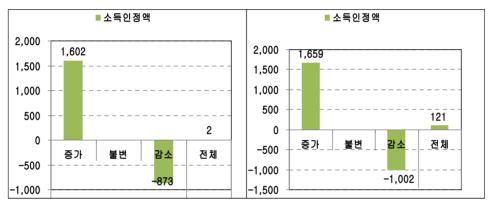
[그림 5-37]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3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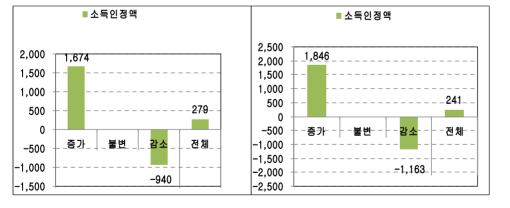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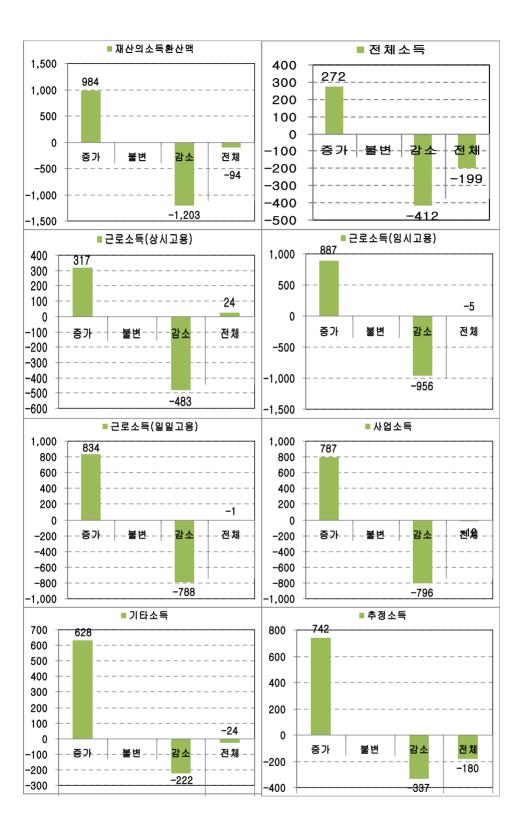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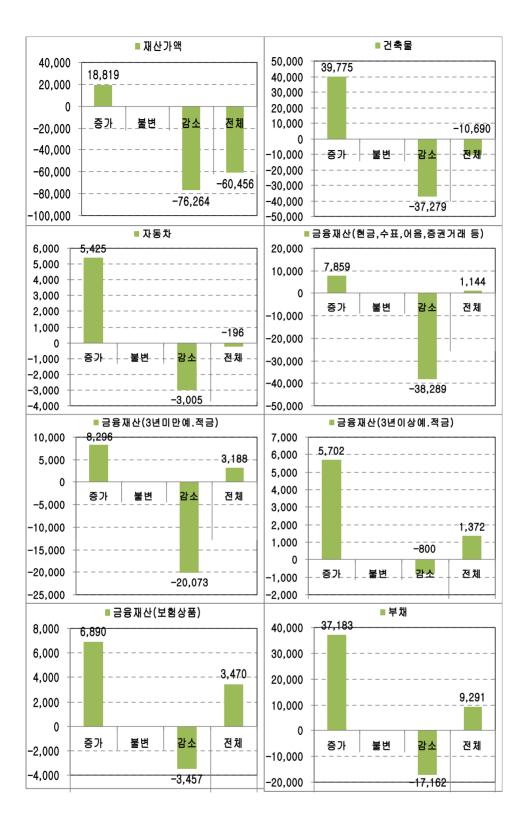
### <4인 가구>



<5인 가구>







### 2.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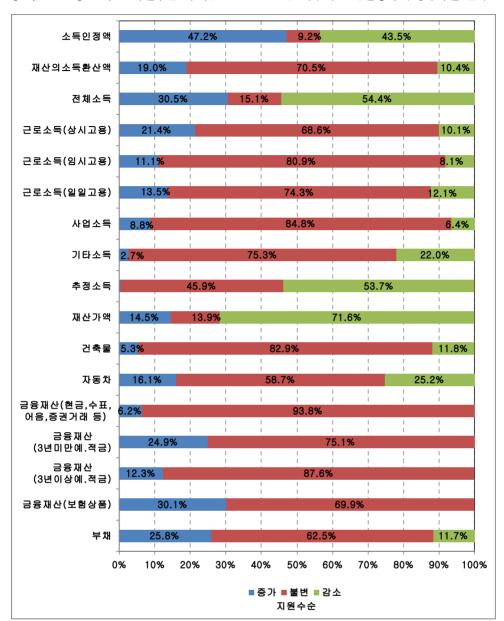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경우, 분석대상(34만 4천 가구) 중 44.5%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625천원에서 개편 후 2,035 천원으로 약 410천원(25.2%) 증가한 것으로 앞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유지된 것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과정에 적용된 선정방식 변화에 따른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증감의 영향과 함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는 2009년 7월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계층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자원수준을 유지한 가구를 3가지 유형('100% ➡ 100%', '60% ➡ 60%', '30% ➡ 30%')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 세부 구성항목별 변화 경향 및 정도에 대하여 분석함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을 유지했던 가구의 경우 '100% ➡ 100%'로 전액지원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30% ➡ 30%', '60% ➡ 60%' 순서로 나타남

#### □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100% → 100%)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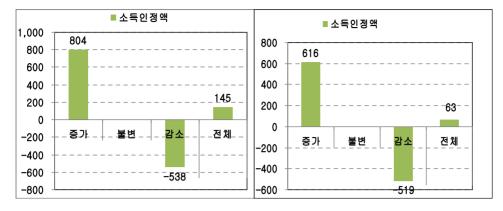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전액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보육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가구의 경우,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 가구의 70%로 가장 많은 가구가 이에 해당함
- 먼저, 소득인정액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앞서 지원수준이 증가한 가구 유형 처럼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가구가 43.5%인 반면, 이보다 약간 높은 4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소득인정액 수준이 증가한 기구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소득인정액 평균 또한 전체적으로 145천원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액지원 대상 확대 및 이로 인한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규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가구규모에서 소득 인정액이 48~171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전액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2009년 개편에 의해 107만원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70.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증가한 가구가 19%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소득의 경우 감소한 가구의 비중이 54.4%로 가장 높았음
  -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각각 증가한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기타 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 과정에서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감소한 가구가 22.0%와 53.7%로 나타났음
- 조사기준이 변경된 재산가액의 경우 71.6%의 가구에서 감소하였으며, 건축물 및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의 변화 및 자동차 배기량 기준 완화로 인해 감소한 가구 역시 11.8%와 25.2%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100%를 유지하고 있는 전액지원 가구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유형 중 소득 인정액 평균이 가장 소폭 상승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재산 조회로 인해 금융재산 보유수준이 증가한 가구가 일정 비율 존재하였음
  - 금융재산 유형 중 '보험상품'의 경우 30.1%로 증가한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미만 예·적금' 24.9%, '3년 이상 예·적금' 12.3%, '현금, 수표 등'이 6.2%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비율뿐만 아니라 평균 증가액은 12개 세부 변동유형 중에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부채의 경우, 증가한 가구는 25.8%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증가액은 4,821천원으로 나타났음

[그림 5-38]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100%→10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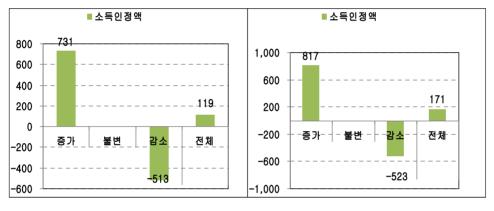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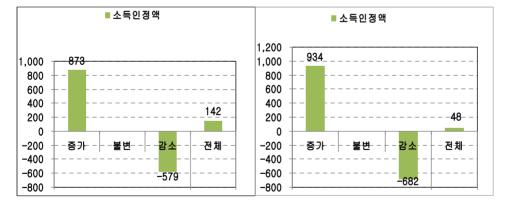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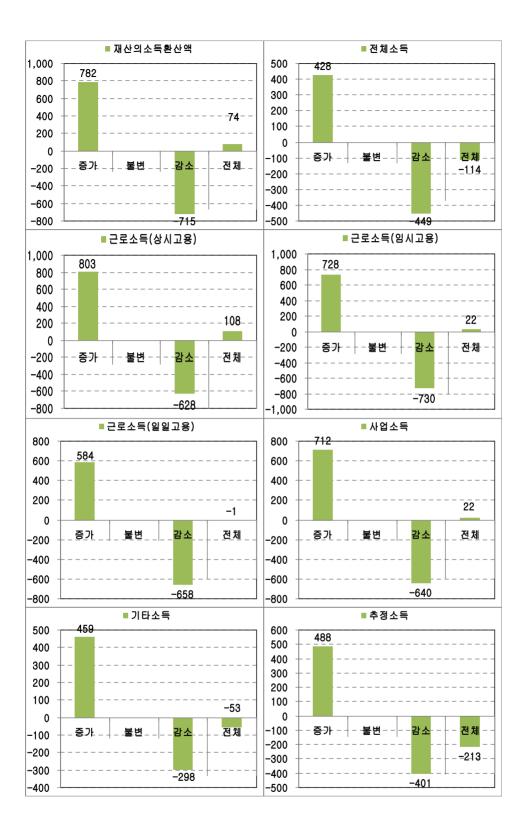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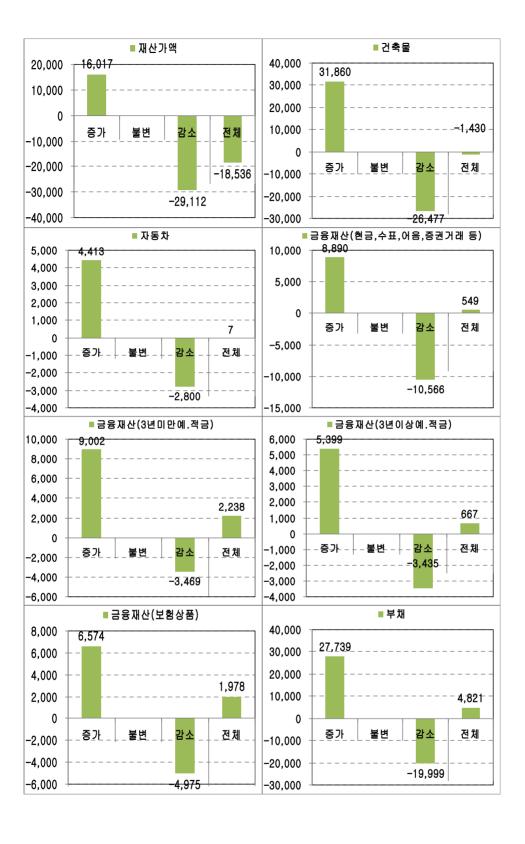
### <4인 가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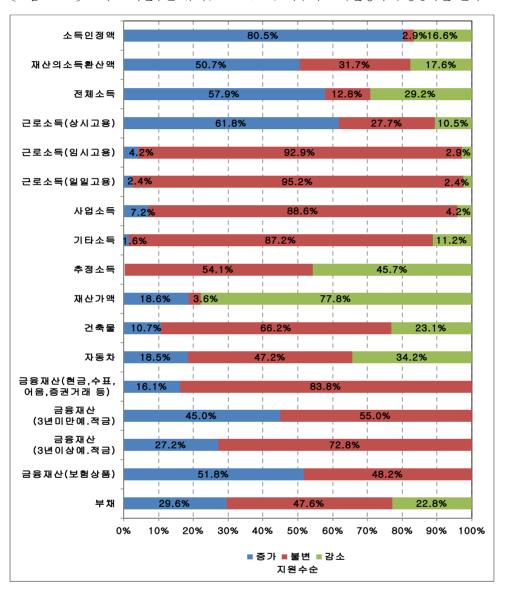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60% → 60%) 가구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60%의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구의 경우, 전체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 가구의 14.2%를 차지함
- 소득인정액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감소한 가구는 16.6%에 불과한 반면 증가한 가구는 80.5%로 매우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약 100만원(997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큰 폭의 소득인정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 전후 60%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규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2인부터 6인이상까지 모든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698~1,386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에도 이제까지 다른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와 달리,
   변동되지 않은 가구보다 오히려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50.7%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로 인한 평균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증가액은 461천원이었음
- 전체 소득의 경우에도 증가한 기구의 비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시 근로소득 역시 61.8%가 증가하여, 각각의 평균은 138천원, 286천원씩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기타 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 제외에 따라 감소한 가구의 비율이 11.2%와 45.7%로 나타났음
- 일반재산가액의 경우에는 여전히 7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및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감소한 가구가 23.1%와 34.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60%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의 금융재산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액지원 수준을 유지한 가구에 비하여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재산 유형 중에서 '보험상품'의 경우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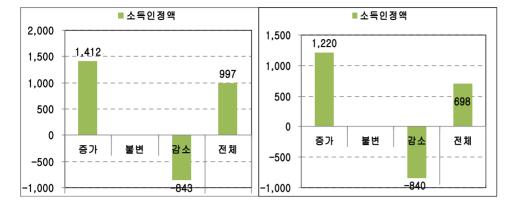
음으로 '3년 미만 예·적금' 역시 45%로 매우 높았음

• 한편, 부채 역시 29.6%가 증가했고 22.8%가 감소했으며, 금융재산 항목별 증가액은 '3년 미만 예·적금'과 '보험상품'이 5,007천원과 4,040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부채 증가액 역시 5,445천원으로 나타났음

[그림 5-39]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6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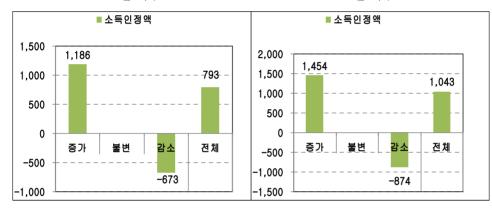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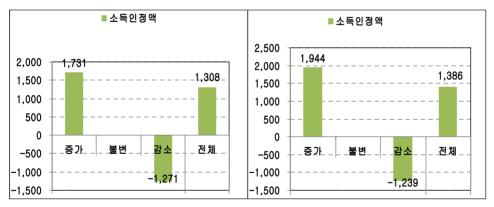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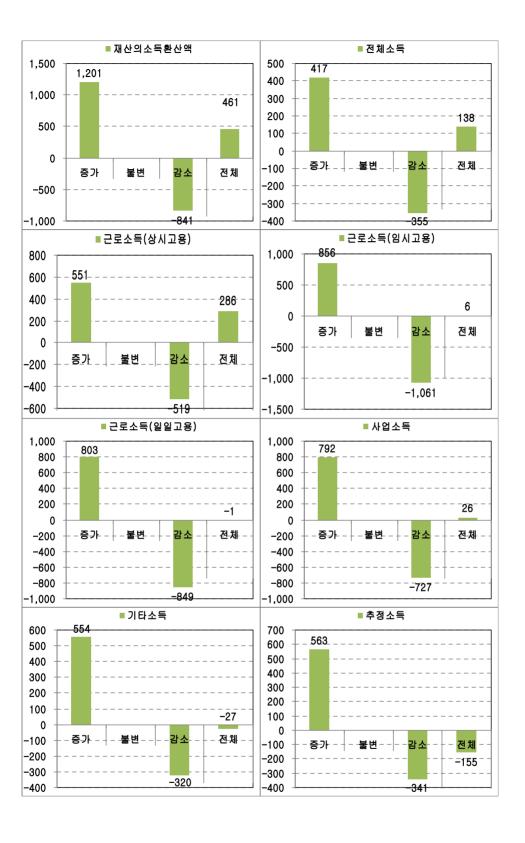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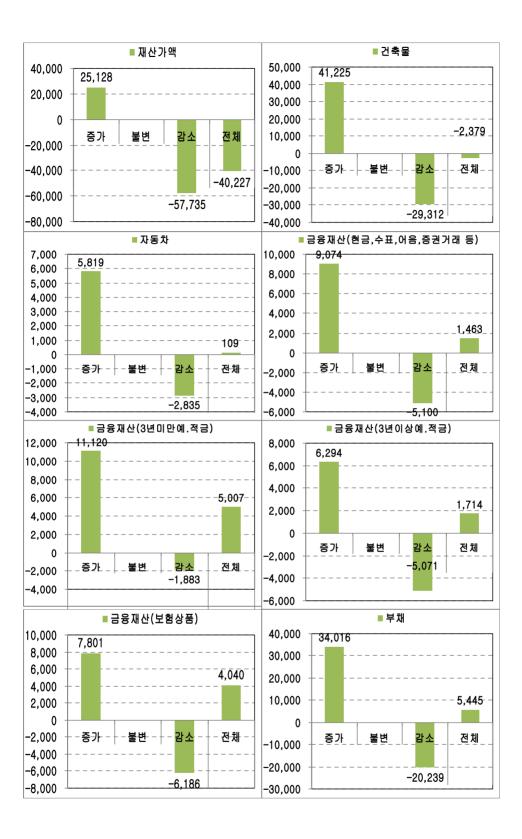
### <4인 가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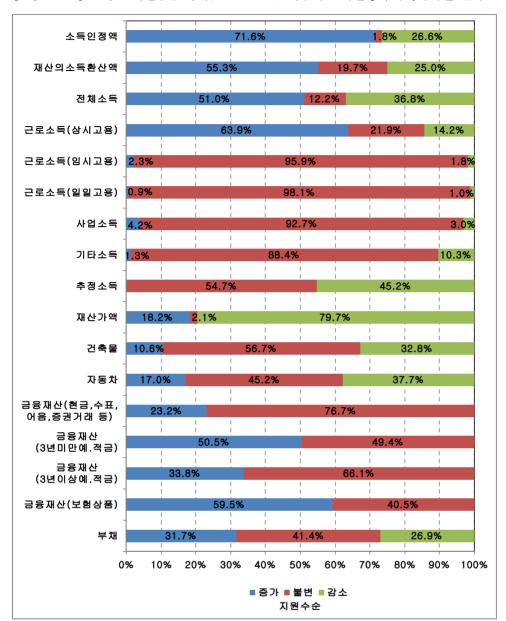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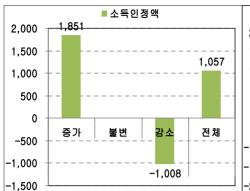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30% → 30%) 기구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30%의 지원수준을 유지한 기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 가구의 15.8로 앞서 60% 수준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먼저, 소득인정액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는데, 감소한 가구는 26.6%에 불과한 반면 증가한 가구는 71.6%로 매우 높았으며,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평균 역시 1,057천원 상승하였음
    - 이처럼 큰 폭의 소득인정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 전후 탈락하지 않고 30%의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계층구분 조정과 선정기준 상향 조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음
    - 가구규모별로 소득인정액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2인부터 6인이상까지 모든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783~1,513천원 증가하였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전체소득의 경우, 증가한 가구가 각각 55.3%와 51%로 절반을 넘었으며, 상시 근로소득 역시 6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변동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기타 소득 및 추정소득의 경우, 사적이전소득과 추정소득 제외에 따라 감소한 가구의 비율이 나타났으나 10.3%와 45.2%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음
  - 일반재산가액의 경우, 79.7%의 가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및 자동차의 경우 재산가액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감소한 가구 역시 32.8%와 37.7%로 1/3 수준이었음
  - 마지막으로, 보육료 지원수준 30%를 유지하고 있는 기구의 금융재산 항목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하여 금융재산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재산 유형 중에서 '보험상품'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 미만 예·적금'역시 50.5%로 절반 이상이었음
    - 금융재산 항목별 증가액은 '3년 미만 예·적금'과 '보험상품'이 5,481천원 과 4,822천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음
    - 한편, 부채 역시 31.7%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가액은 6,558천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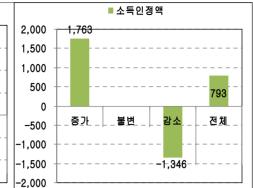
[그림 5-40]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3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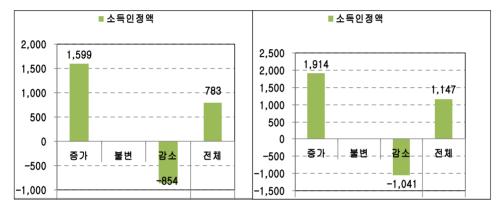
<전 체>

###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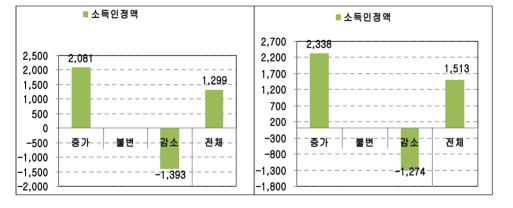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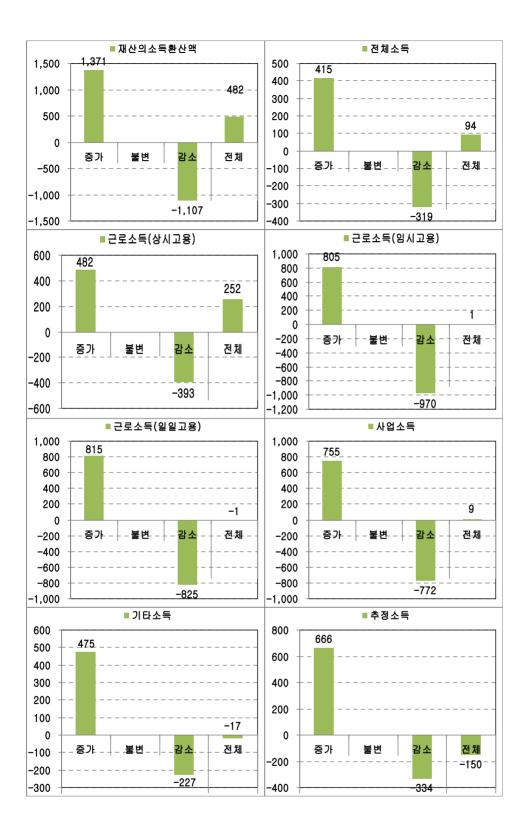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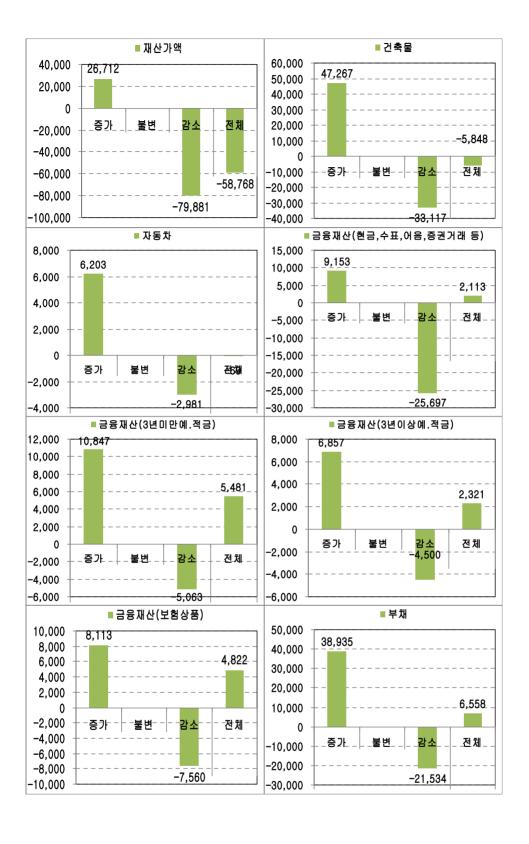




### <5인 가구>







- 3.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유형별 소득인정액 변화 분석
-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체계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는, 분석대상(계속 수급가구 34만 4천 가구) 중 5.3%에 불과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평균은 개편 전 1,817천원에서 개편 후에 4,263천원으로 2,446천원 (134.6%) 상승하여 약 2.35배 수준에 이르렀음
  -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수준의 변화는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과정에서 적용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 금융재산 및 부채 조회 실시 등의 선정방식
     개선에 따라 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정확성이 제고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소득인정액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은 감소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2009년 개편 시 대폭 확대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기인함
  - 여기서는 2009년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계층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육료 자원수준이 감소한 기구를 5가지 유형('100% ➡ 30%', '100% ➡ 60%', '80% ➡ 30%', '80% ➡ 60%', '60% ➡ 30%')으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세부 구성항목별 분포의 변화 경향 및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 전 가구의 5.3%에 불과한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경우, '60% ▷ 30%'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80% ⇨ 60%', '100% ⇨ 60%', '80% ⇨ 30%', '100% ⇨ 30%' 순서로 나타나 보육료 지원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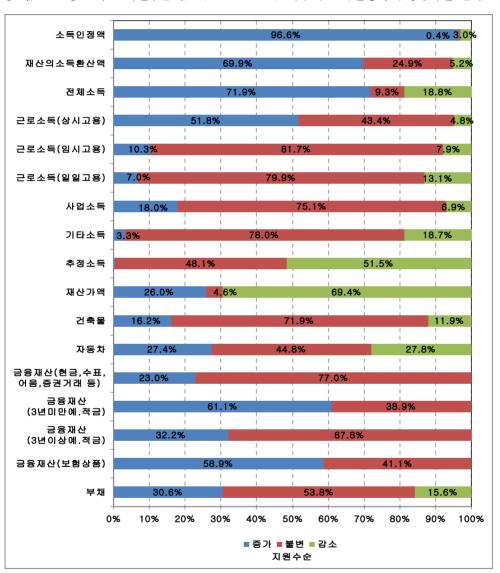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 → 30%) 기구

-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100%에서 30%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가구의 경우 전체 감소 유형 중에서 4.9%에 불과함
- 먼저, 소득인정액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지원수준이 증가하였거나 유지한 가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소득인정액이 감소한 가구는 3.0%에 불과한 반면, 거의 대부분인 96.6%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액은 4,233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분석에 포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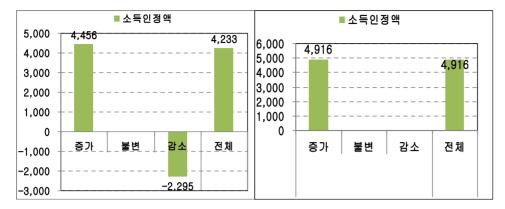
지원수준 감소기구에 수급 중단기구 관련 정보의 부재로 수급 탈락가구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전체 소득의 경우 앞서 분석한 변동유형과 다르게 감소 가구의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증가 가구의 비율은 69.9%와 71.9%로 나타남
- ─ 금융재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이 '보험상품' 58.9%, '3년□만 예・적금' 61.1% 등으로 다른 변동유형의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그림 5-41]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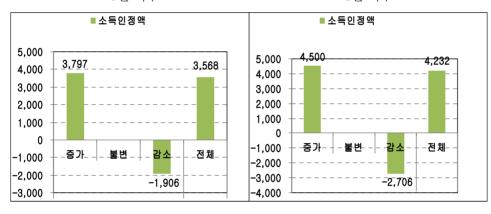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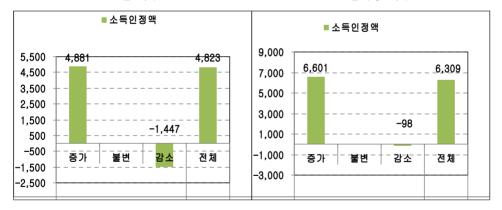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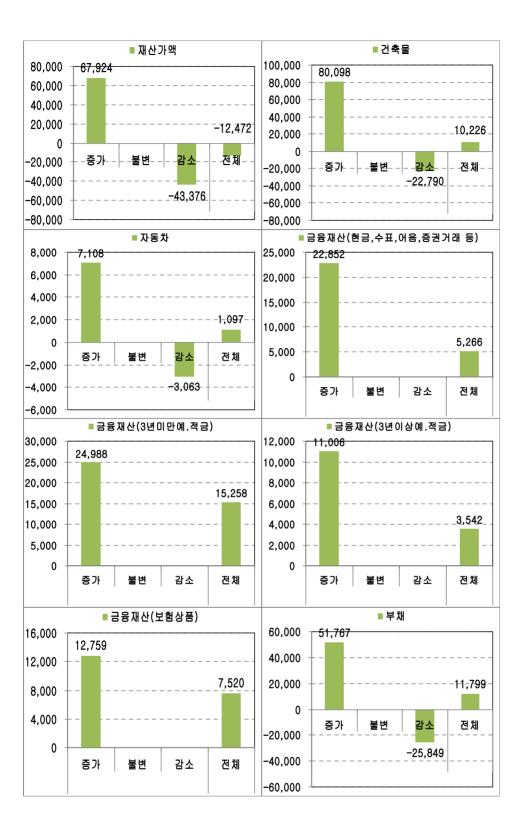
# <4인 가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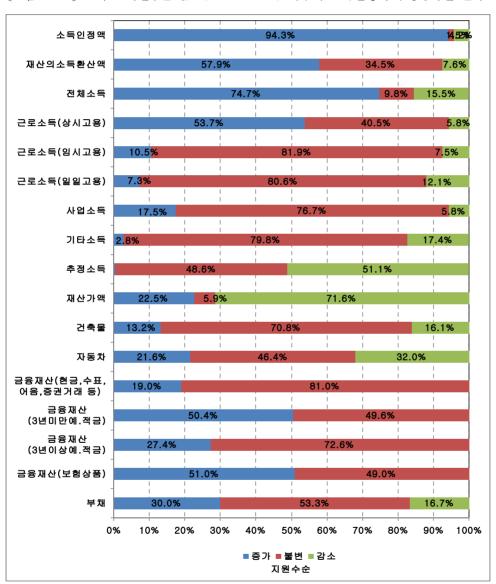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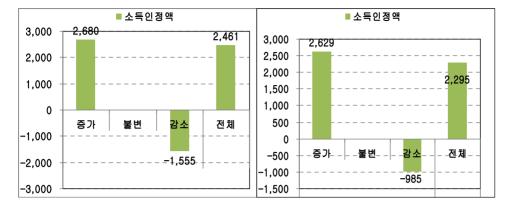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 → 60%) 가구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전액지원 대상인 10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전체 감소가구 중에서 15.7%를 차지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가구 비율은 94.3%로 앞서 분석한 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액은 2,461천원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5-42]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10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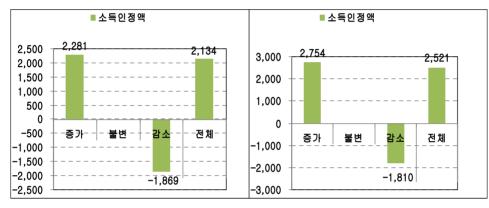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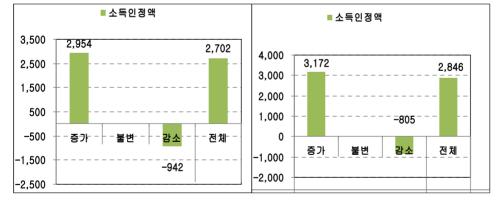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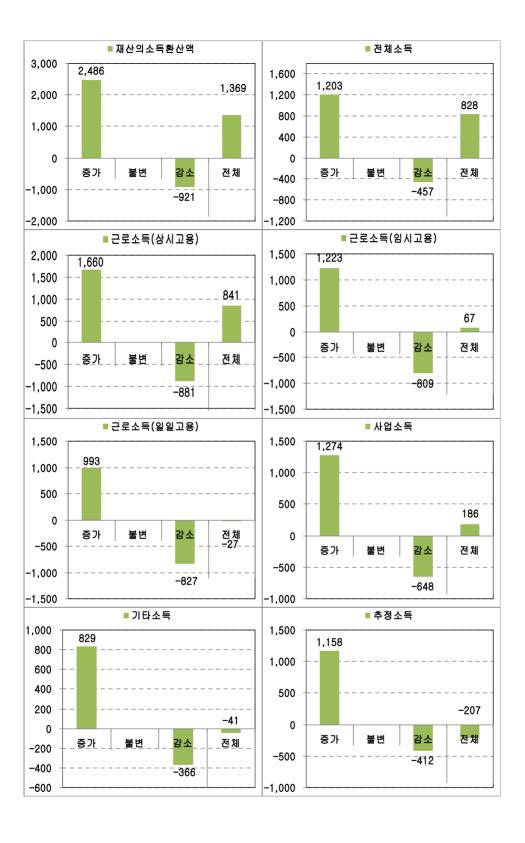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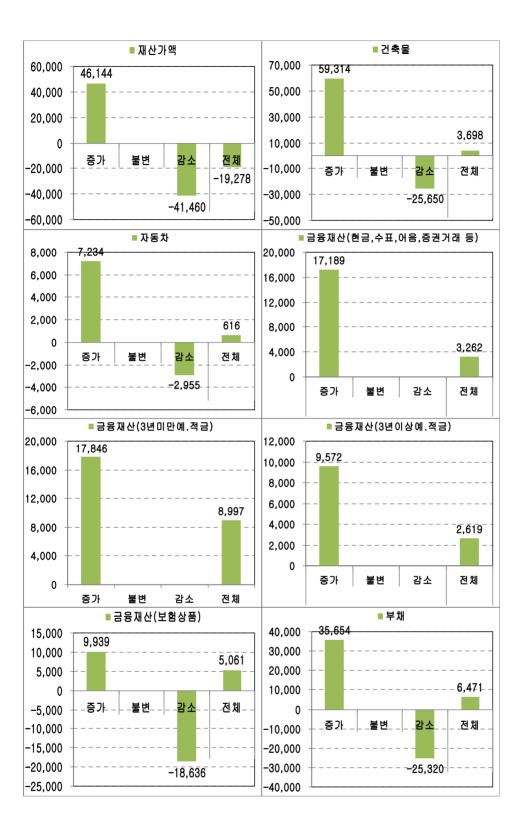
# <4인 가구>



## <5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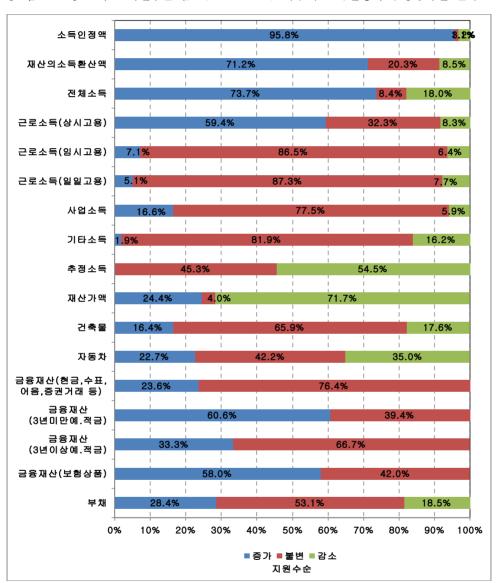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 → 30%)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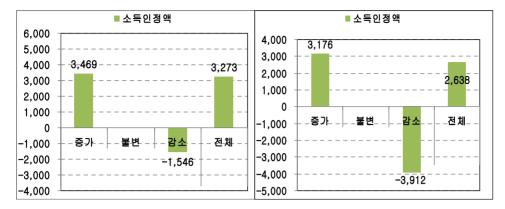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기존 3층(80%)에서 30%로 크게 감소한 가구의 경우 전체 지원수준 감소가구 중 9.9%를 차지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95.8%로 10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 보다 약간 높았으며,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액 역시 3,273천원으로 높았음

[그림 5-43]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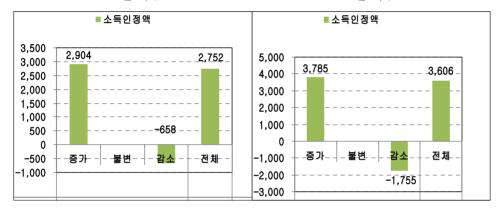


## <2인 가구>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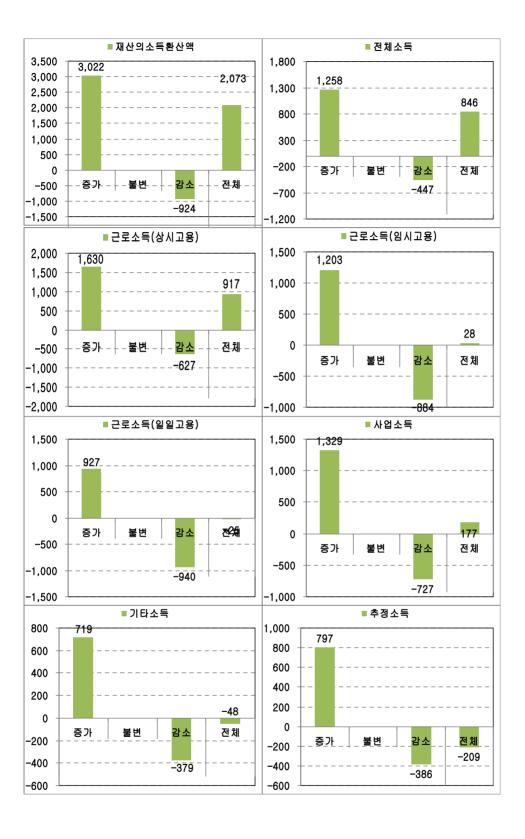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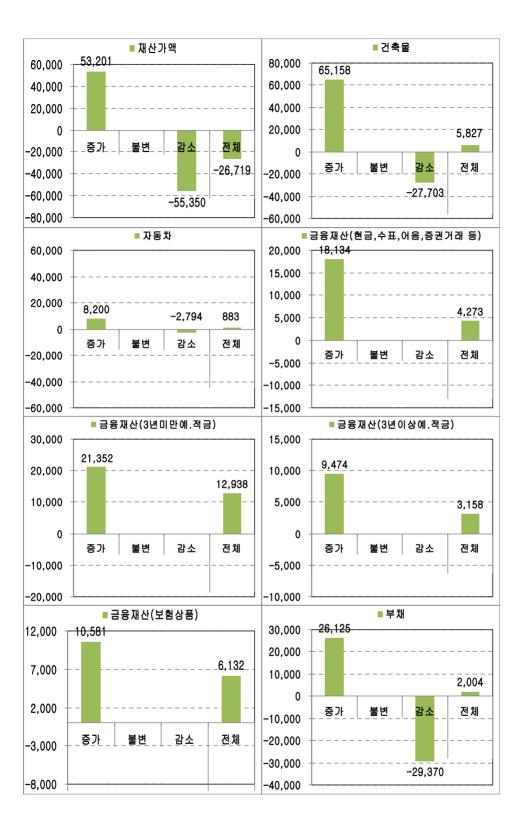


#### <5인 가구>

#### <6인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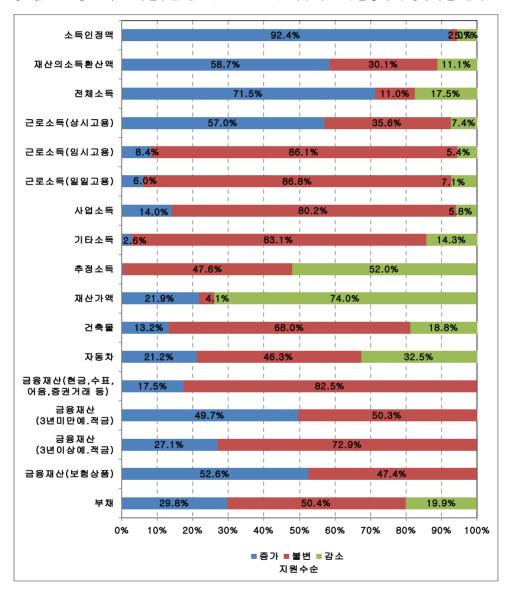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 → 60%)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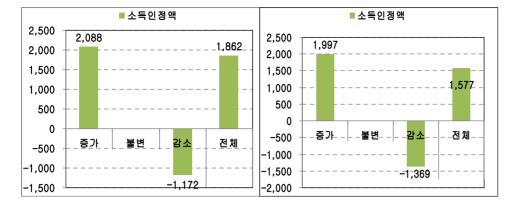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기존 3층(8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는 전체 지원수준 감소가구 중에서 3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92.4%로 80%에서 30%로 감소한 가구 보다 낮아졌으며,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액은 1,862천원으로 분석됨

[그림 5-44]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80%→6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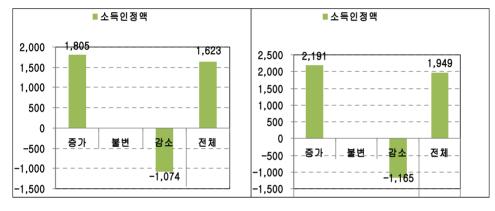


## <2인 가구>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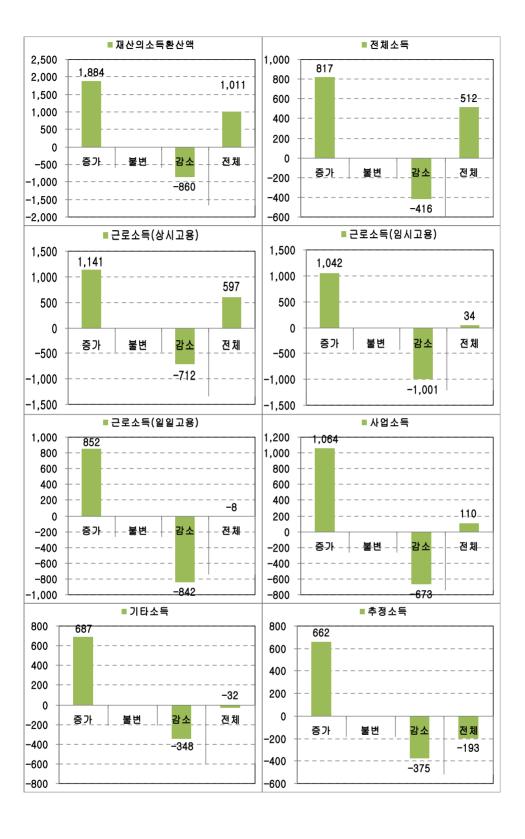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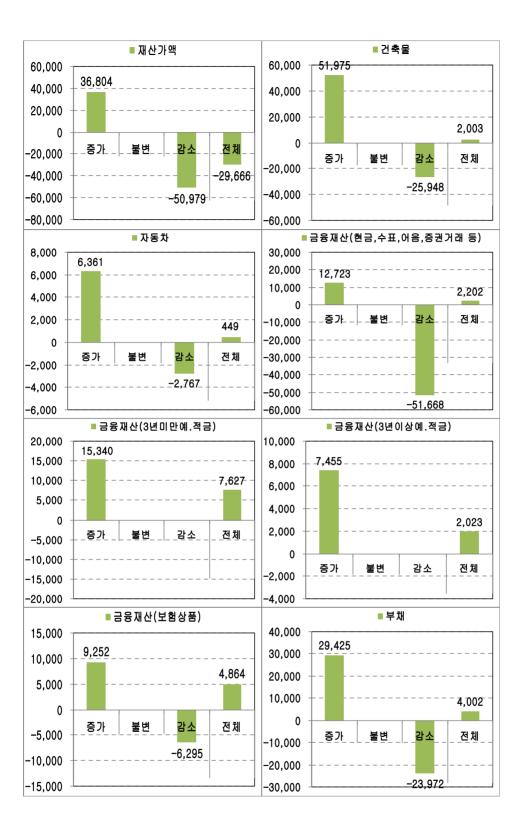


#### <5인 가구>

# <6인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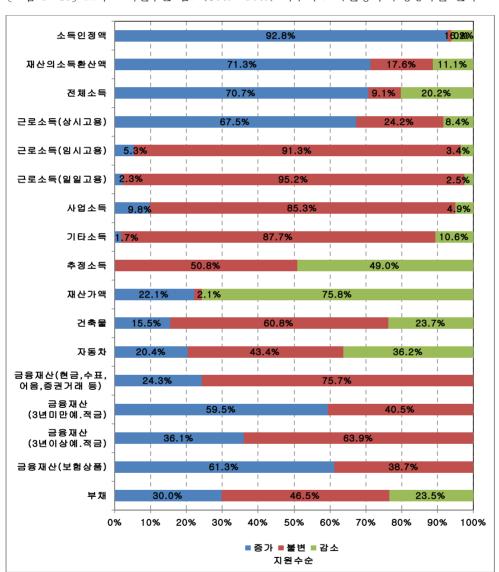




#### □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60% → 30%)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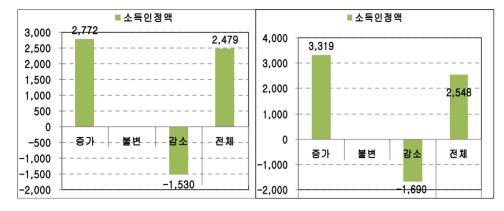
-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전후, 부분지원 대상인 60%에서 30%로 감소한 가구는 전체 지원수준 감소가구의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가구 비율은 92.8%로 80%에서 60%로 감소한 가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소득인정액 평균 증가액은 2,479천원으로 약 80만원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45] 보육료 지원수준 감소(60%→30%)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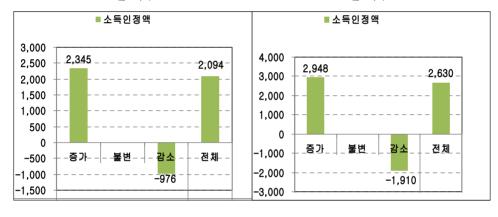


## <2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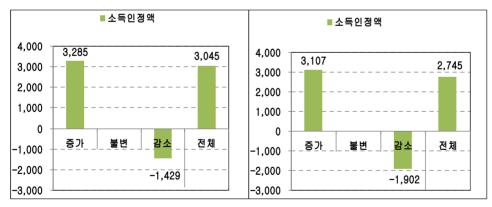
#### <3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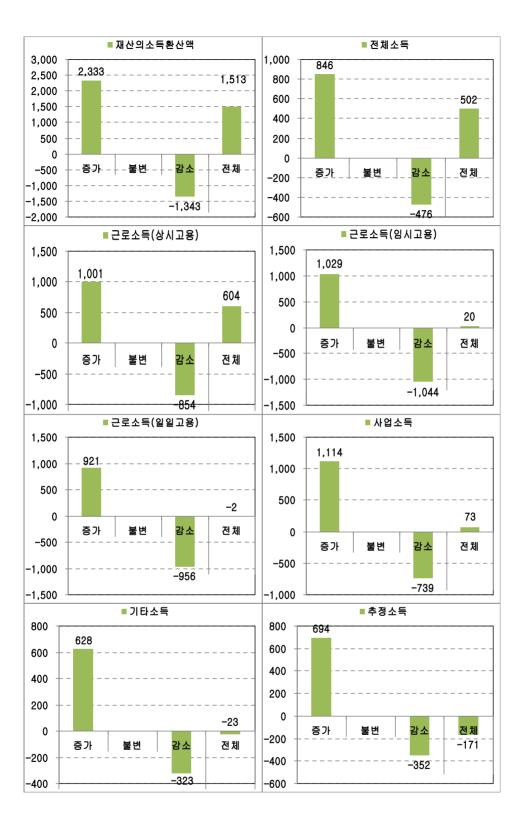
#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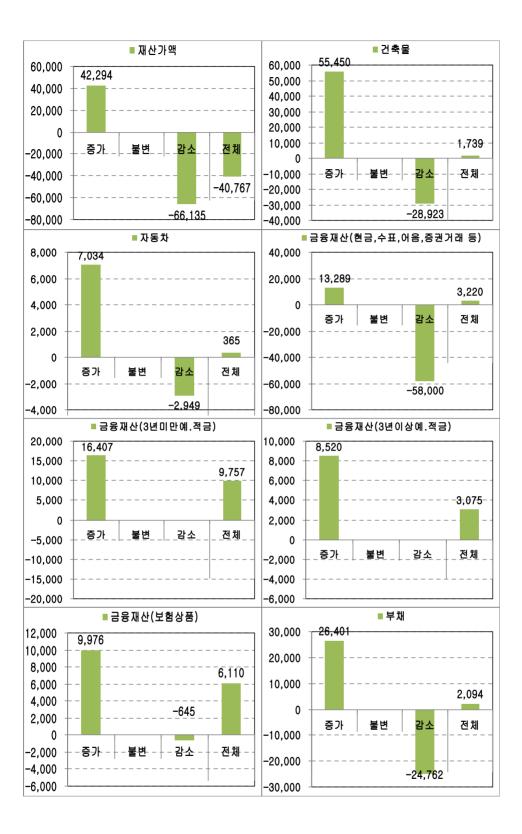


#### <5인 가구>

#### <6인이상 가구>







- 4.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 분석
- □ 보육료지원 수급여부 변동 유형 중 '계속 수급가구(34만4천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시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에 따라 구분한 12개 세부 유형별 지원수준 변동에 대한 모의 분석을 통해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이 가져온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2009년 보육료 지원계층 구조 및 선정기준을 확대 개편하지 않고 기존의 선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개별 가구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수준이 개편 후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모의 분석함으로써 선정기준 확대가 가져온 보육료 지원 확대의 효과성을 제시함

#### □ 분석방법

- 개별 영유아 가구의 2009년 8월 기준 소득인정액(선정방식 개편에 따른 소득 인정액 재산정 결과)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적용 시(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보육료 지원수준별 가구의 분포 및 현행 지원 수준과의 차이를 분석함
- □ 보육료 지원수준 확대 요인으로 선정기준 상향 조정의 효과성 모의분석 결과

구	지원수준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시 지원수준					합계
분	변동유형 (개편전 ⇒ 개편후)	100%	80%	60%	30%	0%	
증 가	30% ⇒ 100%	26.2%	19.5%	54.2%	0.0%	0.0%	100%
	60% ⇒ 100%	24.5%	25.6%	49.9%	0.0%	0.0%	100%
	80% ⇒ 100%	48.9%	30.5%	20.6%	0.0%	0.0%	100%
	30% ⇒ 60%	-	-	39.3%	60.7%	0.0%	100%
유 지	30% ⇒ 30%	-	-	-	89.1%	10.9%	100%
	60% ⇒ 60%	-	-	54.5%	45.5%	0.0%	100%
	100% ⇒ 100%	75.6%	14.5%	9.9%	0.0%	0.0%	100%
감 소	100% ⇒ 30%	-	-	-	91.3%	8.7%	100%
	100% ⇒ 60%	-	-	54.8%	45.2%	0.0%	100%
	80% ⇒ 30%	-	-	-	86.3%	13.7%	100%
	80% ⇒ 60%	-	-	54.8%	45.2%	0.0%	100%
	60% ⇒ 30%	-	-	-	89.5%	10.5%	100%

-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로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대 개편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가정을 통해 12개 세부 변동유형별 영유아 기구의
   보육료 지원수준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모의 분석한 결과를 살펴봄
- 요컨대, 2009년 선정기준 확대 미적용 시 세부 변동유형별로 최소 8.7%부터 최대 75.5%의 영유아 가구가 현재(209년 개편 이후) 지원수준보다 떨어졌을 것으로 나타나 보육료 부담이 지금보다 더욱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2009년 개편 전후 보육료지원 계속 수급가구(34만4천 가구)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앞서 4장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급 중단가구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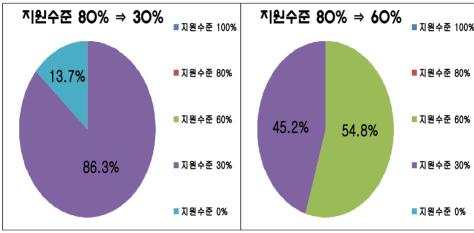
[그림 5-46]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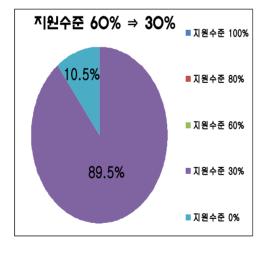


- 보육료 지원수준 증가유형의 가구에서 이러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각 유형별로 2009년 선정기준 확대를 적용하지 않은 상황은 다음과 같음
  - 30% ☞ 100% : 개편 전후 5층(3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지원수준이 확대된 가구의 26.2%만 그대로 전액지원을 받고 있으며, 19.5%는 80% 수준, 54.2%는 60% 수준으로 확대
  - 60% □ 100% : 개편 전후 4층(6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지원수준이 확대된 가구의 24.5%만 그대로 전액지원을 받고 있으며,
     25.6%는 80% 수준, 49.9%는 60% 수준을 유지
  - 80% □ 100% : 개편 전후 3층(80%)에서 전액지원 대상으로 지원수준이 확대된 가구의 48.9%만 그대로 전액지원을 받고 있으며,
     30.5%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20.6%는 60%로 감소
  - 30% ☞ 60% : 개편 전후 5층(30%)에서 60%로 지원수준이 확대된 가구의
     39.3%만 그대로 60%를 지원받고 있으며, 60.7%는 기존 수준인 30%를 유지
- 반면,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이 감소한 기구의 모의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100% ☞ 30% : 개편 전후 전액지원 대상에서 30%로 감소한 기구의 91.3%만 그대로 30% 지원, 8.7%는 수급 탈락
  - 100% 🖙 60% : 개편 전후 전액지원 대상으로 60%로 감소한 가구의 54.8%만 그대로 45.2%는 30% 수준으로 더욱 감소
  - 80% ☞ 60% : 개편 전후 3층(80%)에서 60% 수준으로 감소한 가구의 54.8%만 그대로, 45.2%는 30% 수준으로 더욱 감소
  - 80% ☞ 30% : 개편 전후 3층(80%)에서 30% 수준으로 감소한 기구의 86.3%만 그대로 30% 지원, 나머지 13.7%는 수급 탈락
  - 60% ☞ 30% : 개편 전후 4층(60%)에서 30%로 지원수준이 감소한 가구의 89.5%만 그대로 30% 지원, 나머지 10.5%는 수급 탈락

[그림 5-47]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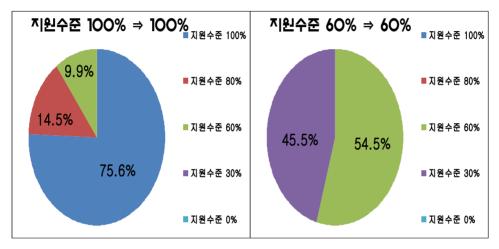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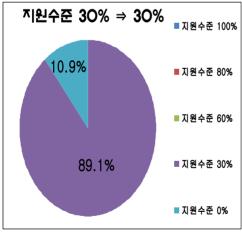




- 개편 전후 보육료 지원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가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 100% ☞ 100% : 개편 전후에 전액지원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75.6%는 그대로 전액지원 유지, 14.5%는 80% 수준, 9.9%는 60% 수준으로 감소
  - 60% ☞ 60% : 개편 전후 60%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54.5%는 그대로 60% 유지, 45.5%는 30% 수준으로 감소
  - 30% □ 30% : 개편 전후 30% 수준을 유지한 가구의 89.1%는 그대로 30% 수준 유지, 나머지 10.9%는 수급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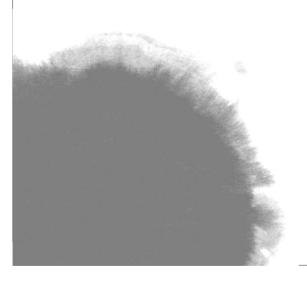
[그림 5-48] 보육료 지원수준 유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확대의 효과성 모의분석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과제





# 제6장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과제

- 1.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변동 분석결과 요약
- ☞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확대 개편에 따른
  - 영유아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변화 및 개선 필요사항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관련 계속 수급가구, 신규 수급가구, 수급 중단가구의 개편 전후 가구 분포 및 소득인정액 분석결과
  - 보육료 지원수준 변동유형별 기구 분포 및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변화 분석결과
  - 선정기준 확대 개편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의 효과성모의분석 결과

비교표 작성 및 요약 중

- 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관련 향후 정책과제
- 가.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조정 및 선정기준 재조정
-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료 지원체계를 단일 보육료 지원체계로 통합 필요
  - 더 나아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0세아 돌봄서비스 지원제도 등 보육서비스 관련 각종 영유아 가구 대상 지원
     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함
- □ 현재, 0~4세 영유아에 해당하는 차등 보육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한선이며, 전액지원 대상인 하위 5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게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을, 하위 50~6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는 60%, 하위 60~70% 가구의 영유아는 30% 지원
  - 또한, 0~2세이면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정부 지원시설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부분을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받고 있음
- □ 둘째 이상 영유이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체계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하나의 틀에서 통합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두 가지 체계로 운영 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 가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운영 상 불편함 존재
  - 차등 보육료에 의해 부분 지원을 받는 소득인정액 하위 50~70%에 해당하는 영유아 가구의 출생 순서에 따라 두 번째 이상 아동이 지원대상임
    - 그러나, 두 번째 이상 영유아가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 신청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함과 지원을 받을 수없는 사례가 존재

- 특히,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는 차등보육료를 고려하여 지원수준이 결정되므로 사실상 두 제도로부터 각각 지원받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지원수준을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소득인정액 하위 50~60% 이하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받는 기구의 영유 이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부터 40%를 추가지원 받음으로써 결과적 으로 전액 지원을 받게 되며,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하위 60~70% 의 영유이는 50%를 추가지원 받아 결과적으로 80%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
- □ 한편, 만 5세 영유아의 경우에는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제도에 의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모든 영유아가 전액 지원대상임
  - 만 5세인 경우 차등보육료 지원제도와 상관없이 하위 70% 선정기준 이하일경우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거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 이미 각 제도가 소득인정액 분위에 따라 가구규모별로 동일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만 명목과 유형을 구분함
  - 차등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수준에 있어 분리 구성되어 있어,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볼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은 하위 60~70% 계층에 대해 오히려 지원수준이 더 높은 역진적 구조(하위 50~60% 가구: 보육료 40% 지원 / 하위 60~70% 가구: 보육료 50% 지원)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 따라서, 수요자의 이해와 신청 등 편의성 제고, 제도 운영 및 예산구조 간소화 등을 위해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만 5세 무상보육료 등 개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하나의 통합 보육료 지원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 통합 보육료 지원체계로의 개선방향
  - 각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계층별 최종적인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단일 보육료
     지원체계로 통합 필요
    - 3가지 전혀 다른 보육료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여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의 이해를 제고하

고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라 정부 보육료 지원수준과 부모의 부담비율을 각각 구성하여 체계화해야 함

- 하나의 보육료 지원체계로부터 외국의 아동수당 등에서 활용되는 연령 및 출생순위 또는 장애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육시설의 유형(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에 따라 몇 %의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몇 %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재구조화하여 운영해야 함
- '차등보육료'란 용어 대신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로 통합 사용하고 매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령별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이용률 통계를 정교하게 생산해야 함
  - 특히, 현행 보육시설 이용아동 연령구분과 별도로 0~12개월, 12~24개월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률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필요함

#### - 운영방식

- 현행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한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액과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계층을 우선 구분
- 자녀의 연령 또는 출생 순위, 장애여부 등에 따라 전액 지원 및 이용시설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비율 등 지원수준 최종 결정
-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체계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 기조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 이러한 과정에서 두 자녀 보육료 지원제도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수준도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제도와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방향을 확대해야 함
  - 이를 통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 영유야'와 '연령에 상관없이 출생순위가 두 번째 이상인 모든 영유야'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 지원체계로 구조화가 가능함

- 한편, 출생순위가 첫 번째인 0~4세의 영유이만이 현행과 같이 소득인정액 하 위 50%, 50~60%, 60~70%의 구조로 지원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일정한 비율로 지원받는 구조가 됨
  - 향후, 보육료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시, 우선적으로 0~4세 영유아의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연령별, 출생순위별 무상보육료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이를 다시 하위 80% 또는 80% 이상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에는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영유이는 기존과 같이 매년 2월경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 및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함
  - 기 신청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새로운 선정기준과 업데이트 된 소득 및 재산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적용하여 보육료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까지 자동 판정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나. 2011년 이후 선정기준 조정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보정 필요성
- □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
  - 2009년 7월 개편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방식을 준용했던 보육
     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소득인정액 개념 및 선정방식을 공적 행정자료 중심
     으로 전환
  - 선정기준 도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개념 및 산정방식의 개편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DB로부터 공적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영유아 가구 DB를 구축하였음
  - 그러나, 사전에 DB에 구축 가능한 소득 및 재산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
     제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 및 소득인정액 산정 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및 재산항목 중 DB에서 고려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 개편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보육

료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 시 포함 예정인 소득 및 재산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산재보험급여, 보훈연금 등)과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기타 재산, 자동차가액,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모의분석 시 누락된 소득 및 재산 항목
   (각종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채, 전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보정여부 및
   방법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이후 적용하기 위한 최종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함
- 예를 들면, 주요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정여부 및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향후, 금융재산 및 부채, 공적이전소득, 전월세 보증금 등 각종 누락 항목에 대해서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 등을 활용하거나,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내에서 관리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급가구의 정보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금융재산 평균 또는 중위 수준을 반영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보정방법으로는 전체 영유아 가구의 평균(중위값), 전체 영유아 가구 중 소 득인정액 하위 50~70% 또는 70% 전후의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중위값) 등을 통해 보정하는 방을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선정기준을 재조 정 할 수 있음

## 다.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료) 대상 단계적 확대

- □ 2009년 7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선정방식 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보편적 제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위상을 제고함
  - 그러나, 현행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하위 50%는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80%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영유이를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해당하는 모든 영유이는 정부 지원시설 또는 정부 미지원시설 중 어떠한 유형의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 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보육료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 (2010년)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검토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70%까지 확대(영유아 두 명 이상 보육시설 이용 조건을 폐지 하고, 출생순위 두 번째 이상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50%)과 동일한 수준으로 0~2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2011년) 보육료 지원체계 통합 실시,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60%로 확대 및 부분 지원대상(하위 60~70%)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율 60%로 확대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60%)과 동일한 수준으로 0~3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2012년)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하위 70% 확대
    - 연령 및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 차이 없 이 모든 0~5세 영유아 대상 단일한 체계로 전환 완료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70%)과 동일한 수준으로 0~4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이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2013년) 0~5세 전액 지원대상 80% 확대
    -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하위 80%)과 동일한 수준으로 0~5세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이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출생순위 두 번째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
  - 2009년 7월 개편 기준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관련 소득인정액 하위 80% 선정기준
  - 선정기준 도출 시 RT 기구균등화 지수 적용 등 동일 방식으로 도출한 소득

5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소득인정액	2,236,078	2,582,000	2,886,764	3,162,291
6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소득인정액	2,937,558	3,392,000	3,792,371	4,154,335
7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소득인정액	3,777,603	4,362,000	4,876,864	5,342,337
8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5,736,000

6,413,043

7,025,137

인정액 하위 80%의 선정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약 574만원에 이름

#### 라.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및 확대

4,967,522

소득인정액

- □ 2009년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이후,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제도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보육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
  -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방안은, 대상 선정과정에서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은 부부의 근로소득 중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소득인정액 분위가 하향 이동하게 되어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게 됨
    - 이를 통해,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기구규모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확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됨
  -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보육료 지원이 더욱 필요한 맞벌이가구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 맞벌이가구를 보다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 방식에 의해서 아니라미국 EITC와 같이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선정기준 등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영유아 부모의 근로활동 형태(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 별도로 도출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각 발표하여야 함
- 이 때, 맞벌이가구 대상 각종 지원제도는 보육료 지원체계의 맞벌이가구 대상 선정기준액과 정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제대상의 근로소득의 범위
  - 맞벌이가구 해당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소득 범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맞벌이가 구 여부 및 근로소득공제 대상으로 설정함
  - 그러나, 사업소득 관련 소득파악 정도 및 공적 행정자료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사업소득을 배제하고 (임금)근로소득만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음
- □ 근로소득공제 적용을 통한 맞벌이기구 별도 선정기준 마련방안
  - (현행)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중 소득이 낮은 사람(2차 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
  - (개선안)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안
    -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방식 2차 소득자에 대한 현행 공제방식보다 맞벌이 가구 지원의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2차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부부 간의 소득구성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현황, 일시적 근로활동에 의한 맞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부합산 근로소득공제 방식 전환 시에 사업소득 자료의 신뢰성 및 수용성, 이로 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하여 시행 초기에 근로소득공제의 범위를 근로소득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가 이러한 단계적 확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 궁극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부합산 공제 적용에 따라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을 현행 선정기준(향후 홑벌이가구 선정기준)과 분리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함
- □ 한편, 2009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체계 개편 이후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영유아 가구로부터 지속적으로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별도 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